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A Study on the Methods of Consumer-based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2016. 12.

이정삼 · 엄선희 · 정수빈 · 황규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 정 삼: 연구총괄, 제2장 1~2, 4절, 제4장 5절 일부

<연구진>

엄 선 희: 제1장, 제5장

정 수 빈: 제2장 3절, 제3장

황 규 환: 제4장 5절, 부록2

외부 원고자문

서 영 일 (국립수산과학원 박사): 부록1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 수 용 (Control Union Korea 이사)

남 종 오 (부경대학교 부교수)

서 종 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 연 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안 종 관 (해양수산부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류 정 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간사

최근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제4세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산자원에 대한 생산자 관리의 유인 취약성과 정부 관리의 한계를 보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ICT 기술의 발전,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 등에 의해 수산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MSC 인증 등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 제도의 도입과 소비자운동 등을 통해서 수산자원 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제도는 대부분 어획능력의 투입 및 어획물의 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적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감시·규제하는 자율관리어업을 2001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 또한 자발적 참여 및 생산자 스스로의 감시·규제가 미약할 때 도덕적 해이 및 규제 불순응으로 이어져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제도와 자율관리어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패러다임 변화 및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도입 및 확대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국내 사례 및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모

색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 및 집필과정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정삼 부연구위원과 엄선희 부연구위원, 정수빈 연구원, 황규환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립수산물과학원 서영일 박사가 협력연구자로서 보고서 집필에 참여하였다. 또한 부경대학교 남종오 교수와 서종석 교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의 안종관 사무관,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김연화 원장, Control Union Korea의 이수용 이사가 본 보고서의 품질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심도 높은 자문을 해주셨다. 그 밖에 본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양 창 호

목 차

연구성과 요약	i
Executive Summary	v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4.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	13
1.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및 문제점	13
2.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범위	23
3. 국제동향 및 관련 이론	26
4.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필요성	37
제3장 국내외 사례 및 설문조사	43
1. 국내 사례	43
2. 해외 사례	60
3.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	93
4. 시사점	105

제4장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방안 109

1. 목표 및 기본방향 109
2.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 115
3.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123
4.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 134
5.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13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1

1. 요약 및 결론 141
2. 정책 제언 144

참고문헌 152

- 부록:**
1.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 162
 2. 설문지 167

표 목 차

〈표 1-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11
〈표 2-1〉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제도 변화	16
〈표 2-2〉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19
〈표 2-3〉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24
〈표 2-4〉 소비자의 개념	25
〈표 2-5〉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범위	26
〈표 2-6〉 레이카비크 선언의 권고 내용	30
〈표 2-7〉 규제방식의 유형과 규제집행자	33
〈표 2-8〉 공동규제의 범위: Black(1996)의 자율규제 유형을 중심으로 ·	34
〈표 3-1〉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인증표지	44
〈표 3-2〉 친환경 수산물 인증 및 유기식품 등의 표시 기준	45
〈표 3-3〉 유기수산물 등 인증 대상	46
〈표 3-4〉 이력추적관리와 지리적표시의 표시 기준	48
〈표 3-5〉 공공기관별 환경마크제품 구매실적	52
〈표 3-6〉 소비 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 행동 분류	55
〈표 3-7〉 MCS 등급 표시 및 의미	64
〈표 3-8〉 환경 및 어업 관련 인증제도	72
〈표 3-9〉 BAP 인증 통합 정도 별점 시스템	82
〈표 3-10〉 해외 환경 관련 인증제도 현황	92
〈표 3-1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94
〈표 4-1〉 법·제도적 기반 조성 관련 정책방안	119
〈표 4-2〉 교육 및 홍보 관련 정책방안	123
〈표 4-3〉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관련 역할 분담	129

그림 목 차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체계	5
〈그림 2-1〉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흐름	15
〈그림 2-2〉 수산자원관리의 수단	18
〈그림 2-3〉 연근해 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21
〈그림 2-4〉 공동규제의 참여자 모형	35
〈그림 2-5〉 시민의 규제 참여 모형	36
〈그림 2-6〉 명태 어획량 추이	41
〈그림 3-1〉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체계	50
〈그림 3-2〉 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	51
〈그림 3-3〉 MCS의 ‘Good Fish’ 와 ‘Fish to Avoid’	65
〈그림 3-4〉 Good Fish Guide 홈페이지 어종별 정보(예시)	66
〈그림 3-5〉 자율점검 템플릿	68
〈그림 3-6〉 착한 참치캔 순위 예시	70
〈그림 3-7〉 소비자의 유통업체에 의견제시 및 압력 행사	71
〈그림 3-8〉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 원칙과 평가기준	75
〈그림 3-9〉 일본의 MSC 에코라벨 부착 제품 사례	77
〈그림 3-10〉 수산물 어획 이후의 공급체인에 대한 CoC인증	78
〈그림 3-11〉 FOS-GGN 통합인증 라벨 및 상품	80
〈그림 3-12〉 IPNLF 참여 멤버	86
〈그림 3-13〉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지수(FSSI) 추이	88
〈그림 3-14〉 미국의 수산자원상태: 자원남획 지도	88
〈그림 3-15〉 Fish Watch 홈페이지	89
〈그림 3-16〉 친환경 수산물 인지 여부	95
〈그림 3-17〉 친환경 수산물 정보의 인지 경로	95
〈그림 3-18〉 친환경 수산물 구매 경험	96
〈그림 3-19〉 친환경 수산물 구매 장소	96

〈그림 3-20〉 친환경 수산물 구매 이유	97
〈그림 3-21〉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 인지도	97
〈그림 3-22〉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98
〈그림 3-23〉 친환경 인증제도 구매 관련 필요 정보	98
〈그림 3-24〉 인증제도 제도 정착을 위한 중요 요인	99
〈그림 3-25〉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인책	99
〈그림 3-26〉 인증제도 도입 시 신뢰하는 인증기관	100
〈그림 3-27〉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 수산물 지불의사가격	100
〈그림 3-28〉 금지체장 규정 인지 여부 및 구매의향	101
〈그림 3-29〉 어린물고기 구매 이유	101
〈그림 3-30〉 금지체장 규정 확대에 대한 의견	102
〈그림 3-31〉 알배기 물고기 유통·판매 금지 관련 의견	102
〈그림 3-32〉 어린물고기 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103
〈그림 3-33〉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보 제공 방식	103
〈그림 4-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여건변화	109
〈그림 4-2〉 MSC 인증 후원 기업	110
〈그림 4-3〉 수산자원관리 관련 스마트폰 앱 및 인터넷 제공 자료	111
〈그림 4-4〉 어린물고기 어획 및 불매 관련 캠페인	112
〈그림 4-5〉 MSC 인증 획득 어업 관련 어장	114
〈그림 4-6〉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추진 목표	115
〈그림 4-7〉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의 추진 전략	115
〈그림 4-8〉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관련 추진 전략	123
〈그림 4-9〉 MSC 인증의 어업 평가 절차	126
〈그림 4-10〉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사례	132
〈그림 4-11〉 자원관리 관련 어업소득 보상대책	132
〈그림 4-12〉 Seafood Watch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134
〈그림 4-13〉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 관련 추진 전략	135
〈그림 4-14〉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	136
〈그림 4-15〉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의 설치	137
〈그림 4-16〉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	138
〈그림 5-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144
〈그림 5-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50

연구성과 요약

1.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분석 및 문제점 진단,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검토, 국제동향 및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모색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기초분석	- 국내·외 선행연구, 관련보고서 및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소비자 참여형 관리 및 수산자원관리 사례 분석	- 관련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기초 분석 필요
설문조사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정책 수단 인식도 조사	- 소비자 대상설문 조사	-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제시를 위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필요
국내·외 출장조사	- 국내 관련기관, 어업인 등 면담조사 및 해외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운영 사례 조사	- 관련기관 면담 조사 및 사례조사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의향,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외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활용
전문가 자문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 필요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사례 및 도입여건을 분석하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세계의 수산자원관리가 소비자의 참여에 의한 제4세대 수산자원관리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해야 함
- 소비자 참여형 관리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도입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제4세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존의 관리제도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제도의 도입 및 개발이 필요함
-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관리기반의 성숙에 따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기반이 마련됨
- 수산자원관리에서 정부 관리의 한계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 변화 방향에 부응하고 정부 주도적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친환경 관련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소비자 정보 공유 기반 강화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음
-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제도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소비자 운동 등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소비자의 참여가 확대

- 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세계적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점차 확산될 것임
- 소비자의 정보 공유 기반 및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수산자원 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규범이 강화되고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가 규범화 되는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선진사례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제도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함
 - 환경 분야의 환경마크제도의 운영, 최근 윤리적 소비의 확산 및 중간소비자의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제도 도입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해외의 소비자 운동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관련 인증제도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시 소비자의 참여의사가 매우 높고 수산자원관리 강화 필요성에 소비자가 크게 공감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소비자 참여기반 조성,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함
 - 소비자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사회적 기반조성, 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함
 -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을 위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도입 및 소비자 리포팅 활성화, 소비자·생산자 참여 촉진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개발을 제안함

-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 설치 및 전담기관의 운영을 제안함

2) 정책적 기여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도입을 위한 목표 및 기본 방향 도출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및 참여 촉진 수단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방안을 제언

3) 기대효과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의 제시를 통해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
-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소모되는 방대한 감시·감독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인원, 물적 인프라 등의 감축 및 절약이 기대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소비자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에 기여
-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생산 증대 및 어업소득의 증대에 기여
-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Methods of Consumer-based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1. Purpose

-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basic structure and problems of Korea's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nd review the concept of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y resource management as well as the necessity for its introduction. Also, it seeks to find the methods of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ppropriate to Korea's conditions based on international trend and case analysis.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Table>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ologies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Basic analysis	- Preceding studies in Korea and overseas,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reports and policy materials - Case analysis on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management an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and overseas	- Related literature review -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 Need to conduct basic analysis due to the lack of related domestic studies
Survey	- Awareness survey on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programs and policy measures	- Survey to consumers	- Need to conduct awareness survey on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to general consumers for suggesting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effective policy measures
Domestic and overseas site investigation	- Interview with related domestic institutions, fishermen etc. and case analysis on overseas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 Interview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	- Establish effective policy by reflecting field opinion on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such as its awareness, participation intent, potenti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s well as investigating operation cases in overseas
Expert consultation	- Expert consultation to draw policy measures of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 Expert consult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 Essential to consult with experts to produce policy measures for effective introduction of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2) Features

-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fishery resource management focusing on consumer participation and suggests the necessity for introduction. It also analyz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Hence, it aims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introducing the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 The global fishery resource management is shifting into the 4th generation fishery resource management in which consumers participate. In order to keep up with this global trend, Korea should actively introduc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focusing on consumer participation.
- The study seeks to find policy measures of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For this purpose, it analyses conditions for its adoption by studying Korean and foreign cases of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management as well as conducting consumer awareness survey.

3. Results

1) Summary

- Th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of the world is shifting into the 4th generation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n this trend, Korea is required to introduce and develop th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focusing on consumer participation as an alternative and replacement for existing ineffective management system.
- The foundation for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s established as the base for social management has fully matured following the expansion of consumers' influence.
- The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s emerging as a way to supplement · alternate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fishery resource management
- Korea should respond to the global changes of direction and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led management. Thereb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befitting to Korean conditions.
- Relevant conditions for consumer participation oriented fishery resource management are steadily prepared, such as increasing consumer awareness on eco-friendliness, expanding their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sharing consumer information.
- Consumer awareness and participation are enhancing as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s expanding and consumer movement for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s underway. Therefore, this global trend is expected to steadily spread out in Korea.
- The importance of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s increasingly highlighted. Because the foundation in which consumers participate in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has strengthened as the base for sharing consumer information and institutional base have improved. Also,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strengthened and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has become a standard.
- South Korea has yet to introduce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and survey, however, the conditions for introducing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have fully prepared. The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system based on advanced cases in Korea and overseas.

- The study looks into the following cas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the operation of eco-labelling system in environment sector, recent spread of ethical consumption and intermediate consumers' increasing interest to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 Also, the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cases such as consumer movement and certification system related to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n overseas.
-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to consumers, consumer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s significantly high when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s introduced. Moreover, Consumers largely agree with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 The study set up a target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consumer participation'. To achieve this target, basic directions are suggested, such a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customer participation, developing measures for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nd building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operation system.
- It proposes measures to build a legal, institutional and social foundation as well as methods to strengthen education and PR activities in order to establish a base for customer participation.
- For developing measures for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it presents to introduce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nd activate consumer reporting. It is also suggests to develop programs and incentive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onsumers and producers and alert notification system for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s.
- Suggestions are made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on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set up a committee for consumer participation orient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lso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dedicated institute for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n operation system focusing on consumer participation.

2) Policy contribution

- Derive basic directions and goals for introducing measures of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focusing on customer participation
- Make policy suggestions for consumer participation oriented operation system: improving and establishing relevant systems, developing measures to promote education, PR and consumer participation, building the governance and supporting finance.

3) Expected benefits

- Lay the foundation for introducing the system to Korean consumers by extracting goals and basic directions for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domestic consumers
- Use it as a basic material for the research on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system which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 Contribute to the use of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s through raising interest to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operation system and the spread of culture focusing on consumer participation.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지금 제4세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서 뒤처질 경우 수산물의 수출은 물론 국내 소비자에게도 외면 받는 시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규범력 강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어획 인증을 받은 수산물만 거래하는 유통, 가공, 판매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관리 기반의 성숙에 기인하고 있다. 즉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생산을 규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자에 의한 관리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쟁 논리 속에서 자율적 관리 유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 자원, 안전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감시 등 사회적 모니터링 및 영향력의 조직화 및 확산은 수산자원관리에서 정부 관리의 한계를 보완 및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수산자원관리는 생산단계에서 어획노력량 및 어획량 등을 관리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수산자원관리 수단은 정부 관리의 한계를 보이거나 규제 불순응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하고, 또한 사회적 모니터링 및 영향력 행사와 같은 규제순응에 대한 사회적 동기가 미약하였다. 하지만 근래 들어 수산자원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확대와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대에 따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확산되면서 미약한 사회적 동기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즉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ICT 발전 및 정보 공유와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

에 따라 다원적 수산자원관리의 여건이 성숙되면서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수산물 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 해양관리협의회) 인증 등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 제도의 점목, 윤리적 소비의 확대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불매하여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 미흡에 따라 기존 관리제도에 대한 보완·대체적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산자원관리제도는 대부분 어획능력의 투입 및 어획물의 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적 수산자원관리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국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력 및 비용의 비대화 및 비효율성과 낮은 실효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주도적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 및 생산자가 스스로 감시·규제하는 시스템은 도덕적 해이 및 규제 불순응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제도 및 자율관리어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 이후의 단계에서 소비자를 비롯하여 사회적 감시 및 영향력을 생산단계에 역으로 발휘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의 개발 및 도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개발하여 수산자원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분석 및 문제점 진단,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검토, 국제동향 및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사례 및 도입여건 분석,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방안을 포함한다. 그리고 연구내용의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내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을 정립한 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도입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여 생산 및 수산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도입여건을 분석한 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정책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제3장까지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행내용과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제4장에서 제시된 여러 대응방안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방안을 요약·제언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방안을 우리나라에 실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거버넌스 구축방안,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공동연구,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연구품질의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내외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수산물 인증의 도입 가능성 제고를 위해 MSC(해양관리협의회)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자문을 실시하고, 인증 관련 컨퍼런스 및 교육에 참여하였다.

우선 문헌자료 조사와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 관련 보고서 및 정책자료, 웹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소비자 참여형 관리 및 수산자원관리 등에 집중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문헌조사 및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변천과 수산자원 및 어획량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자원관리 관련 법·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해외동향 및 사례 관련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프로그램 혹은 정책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소비자 참여형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산자원관리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어업인, 소비자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상기 프로그램 또는 정책수단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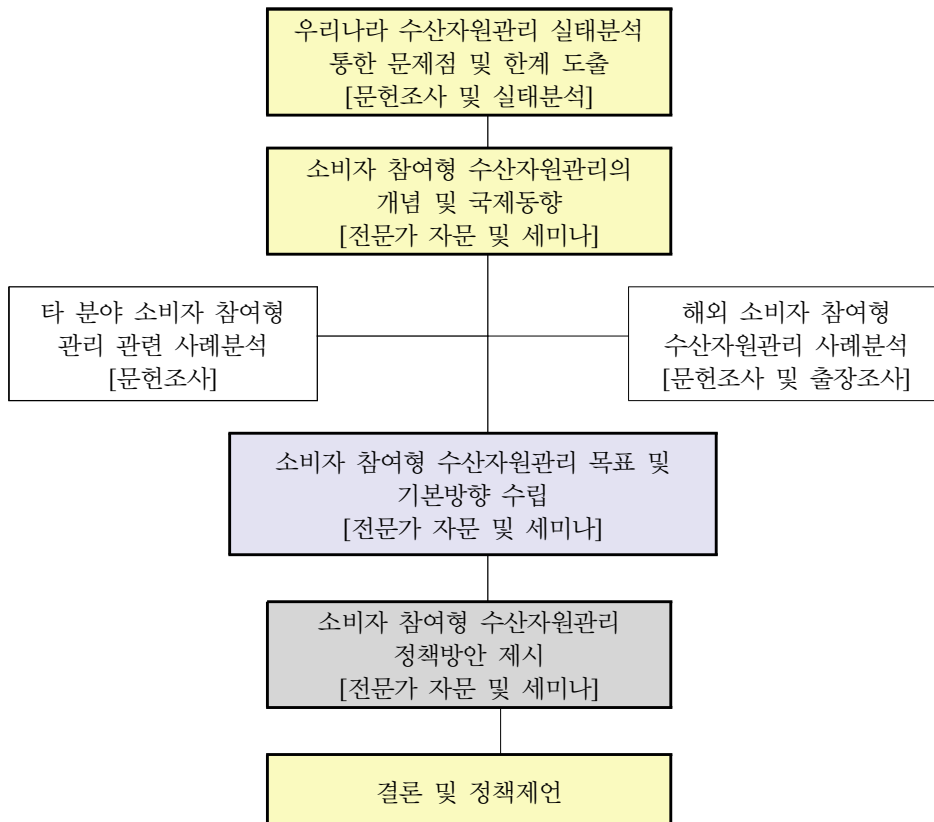
국내외 출장조사 중 국내 출장은 지자체, 어업인,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의향,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국외 출장은 영국에 소재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MSC 인증 등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을 통한 수산자원관리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책방안 수립에 활용하였다.

한편, 전문가 자문과 관련해서는 수산자원관리 전문가 및 지속가능 인증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특히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관련 등 자연과학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전문가의 외부집필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을 포함한 연구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체계



4.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1)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¹⁾

곽윤영(2015)은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심층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의 미래 발전적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윤리적 소비의 개념 및 유형,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및 이슈,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장환경의 조성, 민간 인증제도의 확대, 정부에 의한 객관적 정보의 생산,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두 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첫째, 정부·민간기관·국제적 인증기관·관련 전문가에 의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로는 산발적으로 분산된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정보망을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친환경어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²⁾

이상고 외(2014)는 우리나라 어업의 지속적 발전 및 해양환경 문제의 해소, 국제 환경어업질서예의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친환경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어업 및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친환경어업이 전개되는 과정 및 관련 정책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

1) 곽윤영,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5.

2) 이상고 외, 「친환경어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2014.

히 친환경어업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생산 현황 및 관련 정책, 친환경어업의 경영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소비 실태에서는 수산물 관련 소비패턴의 변화 및 소비 실태, 세계의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친환경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과제에는 친환경어업 생산기반의 조성, 친환경어업을 위한 환경관리방안, 기술 개발·보급 및 교육·지도 방안, 친환경어업 관련 허용물질의 관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어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하위법령 개정, 어장휴식년제의 실효적 실시를 위한 「어장관리법」의 개정, 친환경어업 관련 직접지불제를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포함된다.

(3)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³⁾

김진영·장창익(2010)은 수산자원관리의 효과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소비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업자원의 회복 및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소비활동의 가능성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어업생산과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 참여에 의한 효율적 어업생산 증진 및 자원관리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산자원관리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의 참여에 의한 수산자원관리 관련 사례를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업생산과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연근해역의 어업생산 증진 및 자원관리 제고를 위한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검토에서는 에코라벨링의 기본개념, 발전과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였고, MSC(해양관리협의회) 및 여러 비정부기구의 활동상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 관련 국가별 소비자의 참여 형태를 선행

³⁾ 김진영·장창익,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Fisheries Technology, 2010.

연구 및 일본의 에코라벨링 체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참여에 기반한 수산자원관리의 향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 시스템상 소비자 참여에 대한 효용가치 부여, 기존 인증제도의 확대, 에코라벨링 제도 도입, MSC 취득 관련 인증제도의 이해, MSC 기준 관련 수행지표 및 평가방법 구축, 수산자원관리 관련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탐색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4)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 연구⁴⁾

이정삼 외(2007)는 수산경제학자 또는 수산정책학자들이 어업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업관리 규제에 대한 어업자들의 순응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업관리에서 있어서 규제순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규제순응 영향요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규제집행 및 순응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어업관리의 규제순응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순응에 대해 다양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규제순응의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유형화 실시, 둘째, 유형화된 영향요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어업관리규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 셋째, 미국의 어업관리 규제순응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어업관리 규제순응 프로그램의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어업관리규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규제순응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관련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한·미 간의 규제순응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규제 불순응에 대한 주된 요인을 도출하여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순응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순응 친화적 어업관리 규제전략 마

4) 이정삼 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련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⁵⁾ 아울러 우리나라 어업관리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기본요건 등을 제안하였다.

(5)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⁶⁾

2005년 FAO의 제26차 총회를 중심으로 수산부문 에코라벨링 제도의 국제 규범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에코라벨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FAO 회원국 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해서는 동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문배 외(2006)는 본 연구를 통해 수산부문 에코라벨링 제도의 국제규범화와 관련하여 국제 협상 방향과 국내 도입을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⁷⁾

본 연구에서 FAO는 에코라벨링 주체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역 수산기구와의 협력을 권고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구체적인 인증 범위와 최소실질요건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수산부문에서의 에코라벨링 제도 도입이 개별국 소비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 적절한 대응과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국제규범화에 대한 협상방향, 국내 도입방안, 에코라벨링의 법제화 방안, 도입범위 설정방안, 인증방안, 인증기관 설립방안, 인증비용을 비롯하여 수산물 에코라벨링 도입을 위한 실천계획이 포함된다. 하지만 인증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실천계획 또한 선언적 수준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인증과 관련된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보다는 인증기관 및 인증 발급 자체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6)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계 구축 및 옵서버 제도⁸⁾

5) 이정삼 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3.

6) 주문배 외,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6.

7) 주문배 외,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6, p. i.

8) 이상고 외,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계 구축 및 옵서버 제도 운영방안에

이상고 외(2002)는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의 실현을 위해 TAC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옵서버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TAC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기존의 어업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어업기반 구축을 위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TAC 제도 감시·감독체계 및 주요국 사례분석, 우리나라 TAC 제도 감시·감독 실태 및 문제점, 외국 옵서버 제도의 사례분석, 우리나라 TAC 옵서버 제도의 실태·문제점 및 효과적 운영방안, 연근해 어획실적 보고실태 및 문제점, 일본의 자원관리 제도, 어획실적 관리체제 확보 방안 검토, 수산자원관리법(가칭) 제정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TAC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이론 및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기 도입단계에서 필요한 체계구축 관련 모형을 제시하고 현실과 이론을 결합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TAC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현행 옵서버 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실현 가능한 효과적 옵서버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일본, 미국, 중국 등의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가칭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과제명: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곽윤영(2015) -연구목적: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인증제도의 사례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윤리적 소비의 개념 및 범위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 및 소비자 이슈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 유형·사례 -인증제 관련 이해관계자 조사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과제명: 친환경어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자(연도): 이상고 외(2014) -연구목적: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친환경어업·수산물의 개념 정립 -친환경어업 실태조사 실시 -친환경수산물 소비 실태조사 실시 -친환경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투융자계획 및 발전 로드맵 제시
	-과제명: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연구자(연도): 김진영·장창익(2010) -연구목적: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사례분석 및 소비자 참여 확대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조사	-소비자 참여에 의한 수산자원관리 사례 분석 -수산자원관리 개선방안 -수산자원관리의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 참여 추진방안
	-과제명: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 연구 -연구자(연도): 이정삼 외(2007) -연구목적: 한·미간 어업관리 규제 및 순응실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업관리규제 순응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문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규제순응의 이론분석 및 영향요인의 유형화 -우리나라의 어업관리규제 및 순응실태 -미국의 어업관리규제 및 순응실태 -우리나라의 어업관리규제 순응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과제명: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연구자(연도): 주문배 외(2006) -연구목적: Ecolabelling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제시방향 도출	-문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Ecolabelling 국제사회 논의동향 -Ecolabelling 관련 법적 검토 -Ecolabelling 관련 국내외 적용사례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과제명: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계 구축 및 읍서버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이상고 외(2002) -연구목적: 과학적 자원관리와 어업관리를 위한 읍서버 제도의 합리적 운영 관리 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TAC 감시·감독 체계 구축 -읍서버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방안 -어업실적관리체계 확보 방안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방안

자료: 상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개념 정의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제도의 일부분인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제의 대표사례인 MSC 인증의 획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특히 MSC 인증의 획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자원관리 현황 및 여건,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이 빈약한 상태에서 MSC 인증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참여에 의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탐색적 수준에서 그치거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수단 및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반조성 방안 등을 제시하여 보다 현실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상기 선행연구 이외의 보고서 및 기사 등에서는 MSC 인증의 도입을 마치 식품인증의 도입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 인증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위한 관리의 수단이 아니라 마치 수산물 자체의 품질제고를 위한 수단처럼 타 식품인증과 묶여서 기술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 인증을 수산자원관리의 수단 중 하나인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하나로서 기술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자원관리 현황 및 도입 가능성과 연계하여 보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1.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및 문제점

1) 수산자원관리의 변천과정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흐름은 크게 자유어업과 정부규제, 협동적 관리, 소비자 참여형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유어업(open access fisheries)은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 하에서의 어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어업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어획기술이 고도화 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수산자원이 거의 무한에 가깝게 여겨지고 어업인의 포획·채취 활동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에는 규제가 형성되지 않고 자유롭게 어업이 이루어졌다.⁹⁾

특히 수산자원은 이동성과 무주물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획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주물적 성격에 따른 선취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무한할 것 같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⁰⁾ 이에 따라 유한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 규제는 “공유(共有)재산적 성격(common property) 또는 자유어업의 문제”에서¹¹⁾ 그 개념논리가 형성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은 ‘공유의 비

9) 장창익·이상고, 「어업관리학」, 세종출판사, 2002, p.13.; 이상고 외,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농림수산식품부, 2012, p.18.

10) 이상고 외,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농림수산식품부, 2012, p.18.

11) 이상고 외,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농림수산식품부, 2012, p.18.

극'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적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 둘 경우 자원의 남획 및 고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및 관리의 논리가 일반화되었다.¹²⁾

하지만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정부 규제만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광범위한 바다에서 수많은 어선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는 어업에서는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넓은 해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을 국가가 단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정력 및 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비대화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여 단속능력을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광범위한 바다에 비하면 규제 불순응에 대한 적발 확률이 여전히 낮으며 사전 억지력이 미약하여 비용 효율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부는 각종 규제수단을 쏟아내게 되었고, 어업인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등 어획 기술의 진보에 의해 과도한 어획 및 자원고갈의 위험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비대한 국가 행정력 및 지나친 관리비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어업인 간의 규제에 대한 대립과 마찰, 규제 불순응 등과 같은 관계의 형성 속에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어업인 공동체가 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어업협동관리(fishery co-management)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세계 수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는 「공유의 비극을 넘어(2010)」에서 공유자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¹³⁾ 이에 따라 정부와 어업인 간의 협력체제 구축 속에서 국가 행정력 및 관리비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어업인의 자율적 관리를 확대할 수 있는 어업협동관리가 수산업에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생산자에 의한 관리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쟁 논리 속에서 관리 유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 자원, 안전 등의 분야에

¹²⁾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162, Issue 3859, 1968, p.1243.

¹³⁾ 윤홍근·안도경 번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pp.327-384 (원제: Governing the commons).

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행동에 의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감시 등 사회적 모니터링과 영향력의 조직화 및 확산은 여러 분야에서 정부 및 생산자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에 있어서는 수산물 소비자단체들이 조직화되면서 불법 어획물에 대한 통제는 물론 남획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는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불매운동 및 선택적 구매를 통해서 자원관리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더욱이 MSC 인증 등의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의 구분 및 소비가 촉진되고, 그렇지 않은 수산물의 유통 및 거래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즉, 수산자원의 관리가 기존의 ‘정부 + 어업인’에 의한 관리에서 벗어나 ‘정부 + 어업인 + 소비자’로 확대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2-1〉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흐름



2)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변천과정 및 기본체계

(1) 수산자원관리의 변천과정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 또한 이러한 큰 흐름에서 빚겨나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어업인의 어획능력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여기던 시대에는 수산업에 대한 진입제한이 미약하였다. 하지만 증가 일로의 어획량이 주춤하기 시

작하면서 수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1953년에는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전체 수산업을 관장하는 법률인 「수산업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어선 톤수 및 마력수 제한이 197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근해안강망어업 및 중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허가정수가 1976년에 그리고 대형선망에 대한 허가정수는 1978년에 시작되면서 어업별 진입제한이 차츰 강화되기 시작하였다.¹⁴⁾

특히 198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73만 톤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차츰 홍보 내지 감소 추세로 전환하면서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이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어획노력량 감소를 위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감척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6년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6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어획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1999년에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행하여 대상어종의 어획량에 상한선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¹⁵⁾

〈표 2-1〉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제도 변화

연도	주요 제도 변화
1953	「수산업법」 제정
1976	근해안강망, 중형기선저인망 허가정수 실시(대형기저는 일제 강점기부터 존재)
1978	대형선망 허가정수 실시
1994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감척사업)-일반감척사업, 국제감척사업
1998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제정
1999	TAC제도 시행
2002	자율관리어업 본격 시행, 연안어업 허가정수 시행
2006	수산자원회복계획 실시

자료: 이상고 외,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농림수산식품부, 2012, pp.189-192.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어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어업관리체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자율관리어업 시범

¹⁴⁾ 이상고 외,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농림수산식품부, 2012, p.190.

¹⁵⁾ 이상고 외,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농림수산식품부, 2012, pp.189-192.

사업 계획이 2001년에 수립되었고, 2002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¹⁶⁾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은 “기존 어업자원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정부 주도의 다양한 관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자원 남획, 경쟁조업 심화 및 어업질서 문란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정부 주도적 수산자원관리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자율관리어업은 어업협동관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명칭 자체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어업협동관리의 이상형”으로 볼 수 있다.¹⁸⁾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은 2002년 시작 당시 참여 공동체가 66개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 말에는 1,129개 공동체로 급속히 확산되었다.¹⁹⁾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공적인 확산 속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율관리공동체가 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어장청소 등 비교적 단순한 활동에 대해서는 활발히 실시하고 있지만,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조절 등 자원관리의 핵심과 관련된 활동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²⁰⁾ 이것은 앞서 제기한 생산자에 의한 관리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쟁논리 속에서 고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관리에는 그 유인이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수산자원관리의 취약한 유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원양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인 MSC 인증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점차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 류정곤 외,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2012, p.3.

17) 류정곤 외,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2012, p.178.

18) 이정삼 외,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및 국가통계 추진방안 연구」, 2015, p.14.

19)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http://www.jayul.go.kr/Self.run>) 공동체 참여 현황. 검색일: 2016.10.04.

20) 류정곤 외,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2012, pp.178-179.

(2)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제

일반적으로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제는 수산자원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수단(management tools)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수단, 노력량 관리 수단, 어획량 관리 수단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 기본체제 또한 이러한 관리수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2〉 수산자원관리의 수단



자료: 장창익, 「수산자원의 평가와 관리」, 2014, p.207.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관 법률인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서는 수산자원관리의 정의를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로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다.²¹⁾ 여기서 수산자원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정의되어 있다.²²⁾ 또한 이러한 수산자원관리의 목적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²³⁾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제는 수산자원관리의 정의에 따라 보호, 회복 및 조성으로 <표 2-2>와 같이 구분할 수 있

21)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22)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23)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

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서 수산자원조성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²⁴⁾ 또한 동법 제41조에서는 수산조성을 위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바다숲의 설치사업,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²⁵⁾

〈표 2-2〉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구분	관련 내용
수산자원 보호	-제14조(포획·채취금지) -제15조(조업금지구역)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제19조(휴어기의 설정)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28조(협약의 체결)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수산자원 회복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제38조(배분량의 관리) -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수산자원 조성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42조(수산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제42조의2(방류종묘의 인증)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자료: 「수산자원관리법」

²⁴⁾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²⁵⁾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그 밖에도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수산자원의 산란·서식 공간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법 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가 포함된다.

한편 어획노력량과 관련하여 진입제한 및 상한선 설정과 같은 수단은 「수산업법」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에서의 진입제한을 면허 및 허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3조에서는 “허가정수 등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함으로써 수산자원과 어업을 동시에 고려토록 하고 있다.²⁶⁾ 또한 동법 제63조의 2에서는 어선 선복량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의 2에서는 어구 규모 등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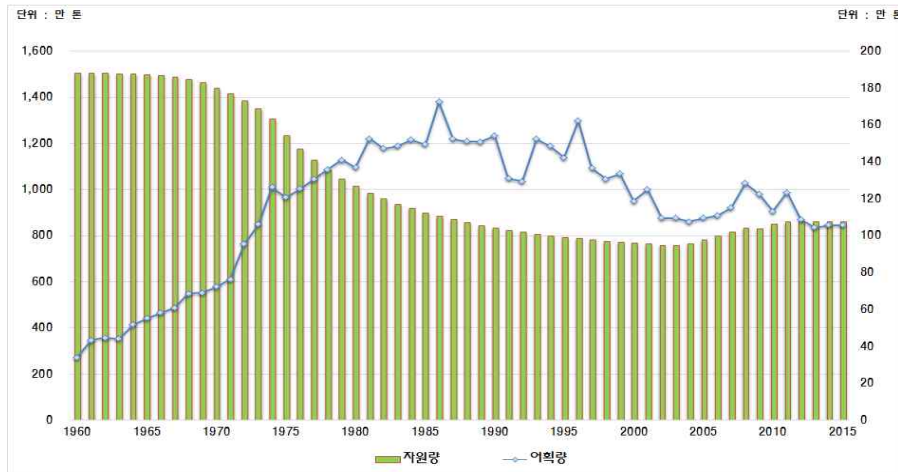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가장 큰 현상적 문제점은 정부의 수많은 규제와 조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어업인 소득의 원천인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업인은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획노력량을 투입하면서 경쟁적 조업을 벌이게 되면 어업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어획노력량의 투입으로 어획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남획 및 불법조업 등의 유인이 높아지게 되어 재차 수산자원이 감소하게 되고, 어업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 관리체제에 더해 어획량 관리제도인 TAC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26) 「수산업법」 제63조.

정부 주도적인 자원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다음과 같이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 어획량 및 어획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3〉 연근해 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및 수단을 통해 상기 문제에 대해 대응해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의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세계의 수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부 및 생산자만의 수산자원관리에서 비롯되는 생산체계의 복잡성 및 취약한 어획량 모니터링에서 찾고 있다. 또한 정부 독단적 관리의 한계 및 비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를 이루려는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어업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첫째, 생산체계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종을 다양한 어업(업종)에 의해 생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해역에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어서 목표어종을 구분하여 어획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어구 및 업종이 어장환경에 맞

취 발전하게 되었고, 어업허가제도 또한 목표어종을 특정하지 않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어종의 혼획은 물론 미성어와 성어에 대한 선별적 어획이 매우 어려운 형태로 생산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M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 중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어획된 참조기의 약 98%가 미성어인 점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²⁷⁾

둘째, 취약한 어획량 모니터링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선진국에서는 강력한 어획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은 기본적으로 대상어종별 어획이 이뤄지고 있는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체계 자체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생산자 협회를 통한 어획량 모니터링 및 양륙 후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할당량 초과나 미성어 양륙이 강력하게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상당한 비용 수반과 함께 어업인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은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긴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양륙어항이 존재하고, 사매매 비율이 높아서 아직까지 강력한 생산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합의에 의한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자율관리어업이 양적인 성장에서는 성공하였지만 실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제3세대 수산자원관리라 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자율관리는 이미 크게 감소되어 회복까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유인이 불완전하여 어업인 공동체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손쉬운 어장청소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도 필요하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수산자원의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

27) 해양수산부, 「2015년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의 자원상태 및 권고안」, 2016, p.11.

세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범위

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를 의미한다. 즉, 소비자가 수산자원의 보호 및 회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산자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정의되어 있다.²⁸⁾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가 수중의 수산동식물을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Michael Sutton은 ‘시장의 힘(market forces)’과 ‘소비자의 영향력(consumer power)’ 행사를 통해서 소비에서 역으로 생산을 통제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⁹⁾ 그리고 이후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소비자 인식제고 및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리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소비자의 영향력’, 더 나아가서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역으로 생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광의의 ‘시장 기반 수산자원관리(market based fisheries management)’의 범주에 포함된다.³⁰⁾ 하지만 시장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경우,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제도와 같이 시장에서의 할당량 거래에 기반한 자원관리를 곧바로 연상시킬 정도로 ITQ 제도가 대표적인 시장 기반 수산자원관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Q 등 할당량 거래제도와와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주체인 소비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 명명하였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의 사회적 압력은 시장에서의 소비 선택권 및 구매력

28)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29) Michael Sutton, 「Harnessing Market Forces and Consumer Power in Favour of Sustainable Fisheries」, Fish & Fisheries Series, 1998, pp.125-135.

30) 김진영·장창익,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Fisheries Technology, 2010, pp.416-429.

행사 이외에도 정부의 관리 행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보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용어	내용	주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간접적 자원관리의 주체인 소비자에 중점 -소비자 영향력을 바탕으로 역으로 생산을 통제	소비자
시장 기반 수산자원관리(협의)	-할당량 거래제도인 ITQ 제도가 대표적 -할당량이 거래되는 ‘시장’에 중점	어업인

2)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범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범위는 ‘소비자’의 개념적 범위와 활동적 범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우선 소비자의 사전적 정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다.³¹⁾ 하지만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광의의 개념으로서 생산재를 구입하는 기업도 소비자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라고³²⁾ 하여 소비자의 개념적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한편, 「소비자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³³⁾ 또한 동법 제2조에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를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³⁴⁾ 하지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31) 두산백과 홈페이지(<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totalSearch.jsp?WT.ac=search>), 검색일: 2016.02.03.

32)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865&cid=42131&categoryId=42131>), 검색일: 2016.02.03.

33) 「소비자 기본법」 제2조.

34) 「소비자 기본법」 제2조.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령에서는 연근해 어업인을 소비자로 보고 있다.³⁵⁾

따라서 현행 법률상의 근거를 어업에 적용시킬 경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업인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개념을 생산자의 반대 개념으로서 어업인에 의한 수산물의 최초 생산단계 이후부터 가공·유통 및 최종소비에 참여하는 주체를 포함하였다. 엄밀하게는 가공·유통의 주체는 어업인과 같은 수산물 생산자는 아니지만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최종소비자의 영향력 행사에 동참하여 불법조업 혹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의 불매(不買)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가공업체나 대형마트와 같은 중간소비자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표 2-4〉 소비자의 개념

구분	개념 및 범위	관련 근거
협의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³⁶⁾	「소비자 기본법」 제2조
광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service)를 소비생활(消費生活)을 위하여 구입(購入) · 사용(使用) · 이용(利用)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事業者)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 다만, 광의의 개념으로서 생산재를 구입하는 기업도 소비자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³⁷⁾	Naver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한편,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서 소비자의 범위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에 비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이다.³⁸⁾ 따라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35) 백병성 외, 2011, 「소비자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p.1.

36) 「소비자 기본법」 제2조.

37)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865&cid=42131&categoryId=42131>), 검색일: 2016.02.03.; 이병태, 2013,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p.1351.

38) 「소비자기본법」 제3조.

바 혹은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단체는 정부와 생산자인 어업인(혹은 단체)에게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개별 소비자보다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표 2-5〉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범위

소비자 범위		참여 주체	참여 방식 및 활동 범위
개인	최종 소비자	-일반 소비자	-개별 소규모 구매력 행사
	중간 소비자	-유통기업(대형마트, 백화점 등), 가공기업 등	-개별 대규모 구매력 행사
단체		-소비자 NGO 등	-개별 소규모 구매력 조직화 -집단적·사회적 영향력 행사

자료: 서정희·전향란, 2016, 「소비자보이콧」, 시그마프레스, p.7.

3. 국제동향 및 관련 이론

1) 국제동향

(1) 지속가능한 어업 관련 국제 협정 및 규범

1982년에는 자원의 보존과 관련하여 최대지속가능생산량(MSY)의 개념을 채택하고 자원 간의 상호 의존성 및 연관어종과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회원국의 고갈된 자원의 회복과 환경보존 의무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체결되었다.³⁹⁾ 이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책임 어업, 지속가능한 어업 등의 내용이 국제 어업규범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과 같은 강제규범(hard law)이 채택되었다.⁴⁰⁾ 동 협정은 해양생물자

³⁹⁾ 조정희·이정삼,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업자원관리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p.21.; U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pp.46-48.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uncl_os_e.pdf)

원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예방적 접근법, 어업자원의 친환경적 이용, 생물다양성의 보호,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의 이용을 위한 조치 채택, 자원의 최적 이용 도모, 연관어종 및 종속어종의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⁴¹⁾

한편 1995년에는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과 같은 비강제 규범(soft law)이 채택되었으며, 1997년에는 동 규범에 대한 기술지침이 채택되었다.⁴²⁾ 이후 2001년에는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 및 관련 국제계획의 이행을 강조한 “2001년 해양생태계 내의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레이카비크 선언(The 2001 Reykjavik Declaration on 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이 채택되었다.⁴³⁾

가. FAO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1995)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은 1991년 3월에 개최된 제19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 책임 있는 어업의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행동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비롯되었다.⁴⁴⁾ 이후 1992년 멕시코 칸쿤에서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책임 있는 어업의 개념을 지지하고 행동규범 작성을 촉구하는 칸쿤선언(The declaration of Cancun)이 채택되었다.⁴⁵⁾ 책임 있는 어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계 및 자원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어획과 양식, 필요한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가공,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상업행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⁴⁶⁾ 칸쿤

40) FAO, 「Review of ecolabelling schemes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capture fisheries」, 2010, p.5.

41) 조정희·이정삼,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업자원관리 도입방안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5, p.22.

42) FAO, 「Review of ecolabelling schemes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capture fisheries」, 2010, p.5.

43) 조정희·이정삼,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업자원관리 도입방안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5, p.28.

44)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p.35.

45)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p.35.

선언 이후 UNCED의 리우정상회담(Rio Summit)에서도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준비를 지지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회의와 유엔기관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서 동 규범이 구체화되었다.⁴⁷⁾ 이후 1995년 제28차 FAO 총회에서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으로 12개 조항이 채택되었으며, 1997년 제22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는 동 규범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을 발간해서 배포하였다.⁴⁸⁾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전문은 제1조 규범의 성격 및 적용범위, 제2조 규범의 목적, 제3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4조 이행, 감시 및 개정, 제5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 제6조 일반원칙, 제7조 수산자원관리, 제8조 조업활동, 제9조 양식업 개발, 제10조 연안지역관리에 수산업 통합, 제11조 어획후 처리 및 교역, 제12조 수산연구로 구성되어 있다.⁴⁹⁾

동 규범에서 지속가능한 어업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원칙, 수산자원관리, 조업활동, 양식업 등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먼저, 일반원칙에서 수산업 관리의 식품안전, 빈곤완화, 지속적 개발의 관점에서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충분한 양의 어업자원의 품질 및 다양성과 이용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원관리 시에 목표어종 외에도 생태계 내에서 목표어종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어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⁵⁰⁾ 또한 국가에 과도한 어획 및 과도한 어획능력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어획노력량이 수산자원의 생산능력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⁵¹⁾

어업자원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몇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 및 어업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

46)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p.35.

47)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p.36.

48) 이동호,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기술 지침의 의의, 구성 및 변화에 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7(6), 2015.12, p.1719.

49) FAO 홈페이지(<http://www.fao.org/3/l-v9878o.pdf>), 검색일: 2016.10.05.

50)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pp.4-5.

51)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p.5.

업자원이 장기적으로 보존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 및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장기적으로 어업자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과도한 어획능력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획노력량을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의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⁵²⁾ 그 밖에도 양식업 개발, 연안지역관리, 국제교역과 관련해서도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⁵³⁾

나. 레이카비크 선언(2001)

2001년 채택된 레이카비크 선언(Reykjavik Declaration on 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은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이행을 촉구하고, 효과적인 어업관리 조치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어업 외 활동이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며, 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기초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⁵⁴⁾ 레이카비크 선언에서는 생태계 자원의 효과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자원관리에 해양생태계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인류의 식량안보 및 개도국의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책임 있고 지속적인 어업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고려사항을 어업관리에 통합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⁵⁵⁾

주요 선언 내용 중에 지속가능한 어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도한 어획능력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 및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효과적인 관리계획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관리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어업 관련 기술과 규제수단을 타국에 이전하도록

52)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pp.8-9.

53)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pp.1-49.

54) 조정희·이정삼,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업자원관리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p.29; FAO 홈페이지(<http://www.fao.org/docrep/meeting/004/Y2211e.htm>), 검색일: 2016.10.05.

55) FAO 홈페이지(<http://www.fao.org/docrep/meeting/004/Y2211e.htm>), 검색일: 2016.10.05.

하고 있다.⁵⁶⁾

〈표 2-6〉 레이카비크 선언의 권고 내용

	권고 내용
1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 및 국제행동계획 이행, 교토선언과 어업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행동계획 이행
2	책임어업과 해양생태계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제 및 관리계획 도입
3	기존 지역기구 및 국제 어업관리기구의 역할 강화 및 기구 간 협력 강화
4	어업 외의 활동이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
5	생태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초 증진
6	양식 개발과 어획의 상호 연관성을 모니터링
7	개발도상국 지원 및 생태계 관리 도입, 전문 인력 양성 위한 국제 협력 강화
8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술 이전 촉진 및 규제제도 소개
9	기술, 재정 국제기구와 FAO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관리제도에 대한 기술적 조언 및 정보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제공
10	어업관리를 생태계 관점에서 모범 관행에 대한 기술지침서 작성

자료: 조정희·이정삼,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업자원관리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p.29; FAO 홈페이지(<http://www.fao.org/docrep/meeting/004/Y2211e.htm>). 검색일: 2016.10.05.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함

(2) FAO Ecolabelling Guideline

FAO 수산위원회(COFI)는 1997년 제22차 회의에서 에코라벨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어업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핵심내용으로 자원관리체계와 생태계를 고려한 어업자원 관리방법을 논의하였다.⁵⁷⁾ 그리고 2005년 3월 제26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해수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적용되는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을 채택하였고, 2009년에 한차례 개정하였다.⁵⁸⁾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잘 관리된 해수면 어획물에 에코라벨을 부착할

⁵⁶⁾ FAO 홈페이지(<http://www.fao.org/docrep/meeting/004/Y2211e.htm>), 검색일: 2016.10.05.

⁵⁷⁾ 김진영·장창익,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Fisheries Technology, 2010, p.418.

⁵⁸⁾ FAO,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evision1, 2009, p.iii.

수 있도록 하여 라벨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⁵⁹⁾ 동 가이드라인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어업 행동규범, 2001년 레이카비크 선언, WTO의 규범 및 기타 관계 국제기구의 규범과 일관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⁶⁰⁾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일반 고려사항, 용어, 에코라벨을 위한 최소한의 실질적 요건 및 기준, 절차 및 제도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최소한의 실질적 요건 및 기준은 어업에 대해서 에코라벨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관리시스템, 생태계 고려, 방법론적 측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절차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정기관 및 인증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⁶¹⁾

또한 2011년 제29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는 내수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⁶²⁾ 동 가이드라인은 해수면 어획 수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목적 및 전체적인 구성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

2) 관련 이론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대표적인 관련 이론으로는 순응이론 및 규제 다원주의가 있다. 먼저 규제순응이론과 관련하여 순응과 규제순응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응(compliance)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정해진 정책 또는 지시사항 및 제도에 대해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은 규제정책에 있어서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정해진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⁶³⁾ 정책을 수립하거나 규제를

⁵⁹⁾ FAO,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evision1, 2009, p.1.

⁶⁰⁾ FAO,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evision1, 2009, p.1.

⁶¹⁾ FAO,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evision1, 2009. pp.1-97.

⁶²⁾ FAO,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inland capture fisheries」, 2011, p. iii.

개혁할 때 규제순응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 및 규제 개혁의 효과가 규제 대상집단이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순응 확보방안은 정책도입 및 규제 개혁단계에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⁶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는 강제적·통제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정부가 일정한 규칙 및 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벌칙, 벌금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통적인 규제방법을 활용하였다.⁶⁵⁾ 그러나 전통적인 규제방법은 피규제자들의 저항으로 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규제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는 규제 순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통적 규제는 과잉규제의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저해하여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에 장애가 되며,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한다.⁶⁶⁾

전통적인 규제방법의 한계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규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pluralism)의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대안(regulatory alternatives)이 개발되고 제시되었다.⁶⁷⁾ 규제다원주의는 국가만이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시장, 시민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에 의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⁶⁸⁾ OECD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기반 규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⁶⁹⁾

63) 이정삼 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3.

64) 박경효·정윤수,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 10(2), 2001, p.174.

65) 김신,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4, p.2.

66) 최유성 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pp.25-27.

67) 박경효·정윤수,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 10(2), 2001, p.178.

68) 최유성 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p.31.

69) OECD, 「Alternatives to traditional regulation」, (<http://www.oecd.org/gov/regulatory-policy/42245468.pdf>) pp.10-34.

한편, 최유성 외(2008)는 규제대안을 대안적 형태의 정부 규제(alternative forms of regulation)와 비규제적 대안(non-regulatory alternatives)으로 구분하였다. 대안적 형태의 정부규제는 정부의 규제이지만 명령·지시적 방식이 아닌 형태의 규제를 의미하며, 비규제적 대안이란 정부의 규제가 아니지만 규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규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의미한다.⁷⁰⁾ 대안적 형태의 정부규제에는 성과기준규제, 과정규제, 새로운 강제방식이 있으며, 비규제적 대안에는 자발적 방식, 경제적 인센티브제, 재산권거래제, 정보(공개)와 교육이 포함된다고 하였다.⁷¹⁾

이상의 규제대안의 분류방식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규제의 유형을 명령·지시적 규제(전통적 규제), 대안적 형태의 정부규제, 시장·유인기반 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 정보제공 및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의 유형을 규제집행자를⁷²⁾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2-7〉 규제방식의 유형과 규제집행자

유형	규제방식 및 세부종류	규제집행자
명령·지시적 규제(전통적 규제)	직접규제(공적 강제와 감시, 제재 조치와 벌칙)	정부
대안적 형태의 규제	성과기준 규제, 과정규제, 새로운 강제방식	정부
시장·유인기반 규제	경제적 인센티브제, 재산권 거래제도 (탄소배출권제도, 어업할당량 거래제도 등)	정부 + 피규제자
공동규제	명령적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제	정부 + 자율규제기관 + 소비자 + 피규제자
(자발적)자율규제	자발적 조치, 자발적 행동강령, 자발적 협약	피규제자(기업)
정보공개 및 교육	인증제도, 이름 알리기와 망신주기	정부 + 소비자(단체)

자료: 최유성 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pp. 30-40.;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한국행정연구원, 2009, pp.26-29.; Garcia-Martinez, et al, “Co-regulation as a possible model for food safety governance: Opportuniti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od Policy 32(3), 2007, p.301.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함 ; <표2-7>의 규제집행자는 상기 문헌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70) 최유성 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p.29.

71) 최유성 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p.30.

72) 규제를 집행하거나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의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임.

소비가 규제의 간접적인 집행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제유형은 공동규제, 정보공개 및 교육 등이다. 공동규제에서 소비자가 감시자 및 수요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규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및 교육과 관련해서 “이름 알리기와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방법⁷³⁾ 통해 소비자의 영향력을 기업에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인증제 등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력을 바탕으로 간접적 규제집행자로 활동할 수 있다.

최유성·이민호(2009)는 공동규제를 “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규제기관이 실제로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규제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⁷⁴⁾ 최유성·이민호(2009)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를 4단계(명령적, 제재적, 강제적, 자발적)로 구분한 Black(1996)의 분류방식⁷⁵⁾ 차용하되, 제재적 자율규제와 강제적 자율규제의 실질적 구분이 어렵다고 보았으며, 공동규제를 명령적 자율규제와 강제적(제재적) 자율규제에 한정하였다. 또한 자발적 자율규제는 공동규제가 아닌 ‘순수한 자율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⁷⁶⁾

〈표 2-8〉 공동규제의 범위: Black(1996)의 자율규제 유형을 중심으로

구분	유형	국가개입 정도	특징
공동 규제	명령적 자율규제	강 ↑ ↓ 약	-정부주도의 자율규제기관(SRO) 결성 -회원의 가입강제 및 각종 행위규제의 법규 존재 -SRO 인사과정에 정부승인 절차
	제재적 자율규제		-정부의 SRO 설립의 허가 및 승인 -공동/자율규제 구조 및 방식 결정 권한을 SRO에게 유보
	강제적 자율규제		-회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존재
(순수한) 자율규제	자발적 자율규제	약	-SRO 설립에 대한 정부의 제한 없음 -회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부재

자료: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한국행정연구원, 2009, p.25.; Black, Julia, “Constitutionalising self-regulation”, The Modern Law Review, 59(1), 1996, pp.24-55.

73) Garcia-Martinez, et al, “Co-regulation as a possible model for food safety governance: Opportuniti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od Policy 32(3), 2007, p.301.

74)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2009,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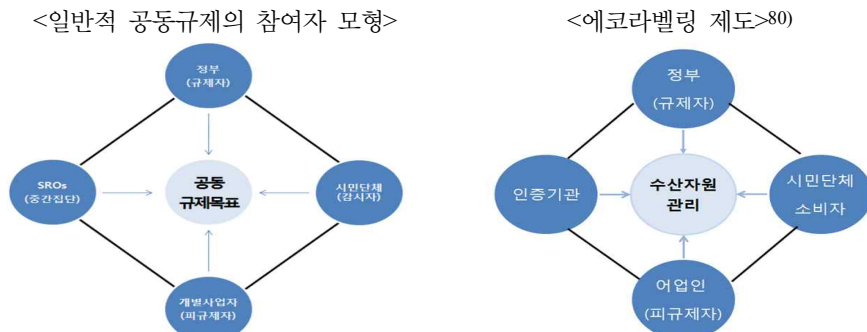
75) Black-Julia, “Constitutionalising self-regulation”, The Modern Law Review, 59(1), 1996, pp.24-55.

76)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한국행정연구원, 2009, p.25.

최유성·이민호(2009)는 공동규제의 참여자간 관계와 유형을 분류하면서 공동규제의 참여자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공동규제의 참여 당사자를 법적기반을 제공하는 정부, 피규제자인 개발사업자(개인), 정부와 피규제자를 중개하는 자율규제기관(SRO), 공동규제로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민(시민단체)으로 보았다.⁷⁷⁾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은 정부와 개인 사업체를 잇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이거나, 사업체와는 규제자의 입장을 지녀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사용자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⁷⁸⁾

한편, 공동규제의 참여모형을 에코라벨링 제도에 대입시켜 보면 참여모형의 당사자를 정부(규제자), 인증기관, 피규제자(어업인),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할 수 있다. 에코라벨링 인증제도는 공동의 규제목표를 바탕으로 정부, 어업인, 시민단체(소비자) 및 중간집단이 협조 하에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동규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⁷⁹⁾

〈그림 2-4〉 공동규제의 참여자 모형



자료: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한국행정연구원, 2009, p.33.

77)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한국행정연구원, 2009, pp.3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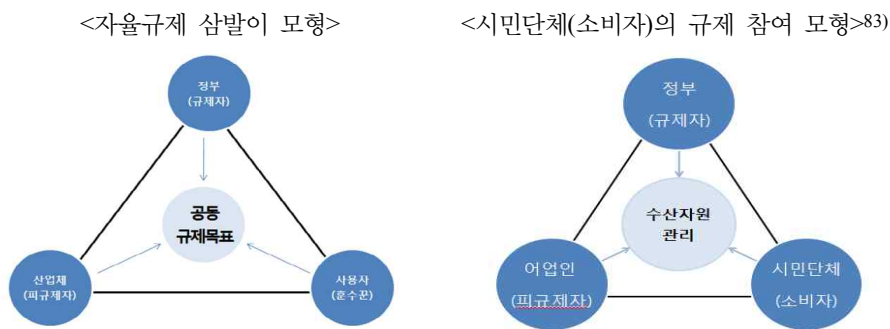
78)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한국행정연구원, 2009, pp.32-33.

79) 다만, 자율규제기관이 사업체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된 인증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에코라벨링 제도가 공동규제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든 한계가 있다.

80)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2009, p.33.)의 그림을

심영희(2002)는 자율규제에는 협의의 자율규제와 광의의 자율규제가 있다고 하면서, 전자는 개별업체 또는 업체 연합회에 의한 자율규제를 말하며, 후자는 업체에 의한 자율규제 및 사용자에게 의한 자율규제 노력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의 네티켓 운동을 광의의 자율규제의 하나로 예시하였다.⁸¹⁾ 즉, 광의적 자율규제의 개념에는 시민운동 및 소비자단체의 참여활동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광의의 자율규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규제 이해당사자를 업체, 정부, 사용자의 세 집단에 초점을 둔 자율규제의 삼발이 모델을 제시하였다.⁸²⁾

〈그림 2-5〉 시민의 규제 참여 모형



자료: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한국행정연구원, 2009, p.32.; 심영희, “사이버 성폭력의 자율규제, 누가 주체가 되어야하나?: ISP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9(2), 2002, pp.54-74.

상기 연구에서 업체는 경제적 시장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며, 사용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 훈수꾼으로서의 이해당사자(사용자, 시민단체 구성), 정부는 규제역할을 가진 당사자이며, 이들 간의 세력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바탕으로 재구성함.

⁸¹⁾ 심영희, “사이버 성폭력의 자율규제, 누가 주체가 되어야하나?: ISP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9(2), 2002, p.57.

⁸²⁾ 심영희, “사이버 성폭력의 자율규제, 누가 주체가 되어야하나?: ISP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9(2), 2002, p.59.

⁸³⁾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한국행정연구원, 2009, p.32.)의 그림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지적하였다.⁸⁴⁾ 자율규제의 삼발이 모형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수산자원관리 참여를 대입해 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즉,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가 정부(규제자) 및 어업인(피규제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규제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소비자의 영향력 행사는 정보(공개) 및 교육 등을 통해 강화 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하는 기업’의 이름 알리기(naming) 및 자원을 남획하는 기업에 대한 망신주기(shaming) 등의 효과 또한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얼마나 인지를 하고 또 그 가치에 동조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4.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필요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은 크게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 생산단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제도에 대한 보완, 자율관리어업의 한계 극복, 소비자 인식의 변화 필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응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흐름은 지금 제4세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수산물의 수출 감소는 물론 국내 소비자에게도 외면 받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FAO는 2005년 제26차 총회에서 수산물의 친환경인증을 통해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1999년에는 MSC가 독립단체로 발족되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인증을 세계 수산물에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제3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2015년 10월에는 동 인증을 부착한 제품이 약 2만 개까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Walmart, 맥도날드를 비롯한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동 인증을 취득한 어업에 한정하여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공약하고 있다.⁸⁵⁾

⁸⁴⁾ 심영희, “사이버 성폭력의 자율규제, 누가 주체가 되어야하나?: ISP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9(2), 2002, p.59.

⁸⁵⁾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따라서 이러한 인증은 현실에서 이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의 이러한 인증 관련 규범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수출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내 판매에도 전이되고 있다. 맥도날드, 하얏트호텔 등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이미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 기업에서 MSC 인증 수산물의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동 인증이 부착되지 않은 국산 수산물의 판로는 급격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부와 대형유통업체인 L사가 협력하여 친환경 배합사료로 양식한 광어의 판매 촉진 행사를 벌였다.⁸⁶⁾ 현재 생사료의 대부분은 미성어에 의해 제조되고 있는데, 향후 친환경 배합사료 의무화 이외에도 소비자의 선택에 의거하여 생사료에 의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유통기업에서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환경인증이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강화는 점차 간헐적인 선택이 아닌 상시적인 필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강력한 환경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TPP협정(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단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생산단계가 중심이 되는 수산자원관리제도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생산단계에 투입될 어획노력량 및 어획량 등을 관리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해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의 관리는 엄청난 감시·감독비용을 수반하지 않고는 실효적인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어업인의

2015.11.30.

⁸⁶⁾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친환경 배합사료로 키운 광어 드세요”, 2015.12.15.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어업인의 이익 극대화에 기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순응이론에서는 불순응의 비용·편익에 입각하여 규제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순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근대적 순응이론에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비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⁸⁷⁾ 즉 많이 잡아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도덕적 의무감 및 사회적 영향이 어업인의 자원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요인은 생산단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제도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서 어업인은 각종 규제수단으로 구성된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제도에서 회피하여 자신의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잘 지켜질 것 같은 규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비경제적 영향력이 어업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생산단계로 전달되기 위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셋째, 자율관리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자율관리어업은 기본적으로 정부 관리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이 도입될 당시, 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주도의 다양한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기존의 자원 남획, 경쟁조업 심화, 어업질서 문란 등 수산자원 이용에 자리 잡은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졌다.⁸⁸⁾

하지만 2002년에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이 시행 15년을 경과하고 있지만 양적인 확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가파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관리어업은 기본적으로 어업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관리에

87) 이정삼 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p.6-7.

88) 류정곤 외,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2012, p.178.

적극 동참하게 되면 정부 관리의 비효율성이나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는 자원의 속성 상 관리 및 투자와 이로 인한 효과 발생 간에 ‘디커플링(decoupling)’ 문제가 존재한다. 즉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투입된 노력과 비용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성장 및 산란을 통한 확대 재생산 메커니즘을 거쳐서 수산자원 및 어획량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디커플링이 존재한다. 또한 투입비용과 수익 회수 간의 디커플링 문제가 존재한다. 즉 특정 어업인 공동체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 투입한 비용은 편익으로 돌아올 때 특정 공동체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 공동체에서 치어를 방류하더라도, 상어의 어획은 여러 공동체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투입 비용과 회수에는 디커플링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율관리공동체들은 정부 의존적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조절 등 자원관리의 핵심적인 활동에는 다소 소홀한 반면, 어장청소 등 비교적 손쉬운 활동에 치중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 관리에서 취약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 및 자기 감시 강화를 위한 유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3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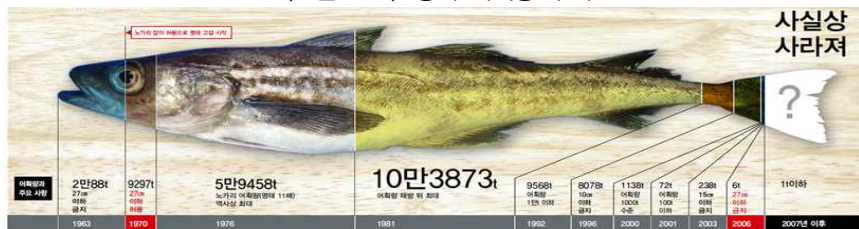
넷째,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따라서 수요의 통제가 가능하면 공급은 자연히 통제된 수요를 따르게 된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소비자 수요의 변화를 통해서 수산물의 공급을 담당하는 어업인의 생산 활동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역행하는 소비문화를 갖고 있다면 제대로 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상어 몸통보다는 지느러미만 선호함으로써 상어는 어획과 동시에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바로 바다에서 버려진다. 특히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상어 지느러미 요리인 샹스핀을 선호하는 문화는 많은 상어류를 멸종위기로 내몰았다.

이에 중국의 세계적인 농구스타이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저명인사인 야오밍은 본인부터 삭스핀 소비를 끊으면서 중국의 삭스핀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⁸⁹⁾ 그리고 중국 19개 방송국에서 2013년에만 “(삭스핀을) 거래하지 않으면, (상어) 살해를 막을 수 있다”는 공익광고를 약 3,000여 회 내보냈다.⁹⁰⁾ 아울러 2013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공식 만찬에서 삭스핀이 퇴출되자 삭스핀 유통이 주로 이뤄지는 광둥성에서의 삭스핀 거래가 무려 82%나 감소하게 되었다.⁹¹⁾

이상과 같이 건전한 소비문화 운동은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또한 수산자원관리에 치명적인 소비문화를 갖고 있다. 현재에는 어린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세꼬시’와 ‘알배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명태새끼인 ‘노가리’의 소비문화로 인해서 한때 연간 10만 톤씩 어획되던 명태가, 2008년부터는 공식 통계상 ‘0’을 기록하였다.⁹²⁾ 이와 같이 소비문화는 수산자원관리와 직결된다. 따라서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문화 육성을 위해서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실시가 필요하다.

〈그림 2-6〉 명태 어획량 추이



자료: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9013.html), “‘국민 생선’ 명태는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검색일: 2016.05.03.

89)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408851>), “야오밍 “삭스핀 이제 안 먹을래””; iMBC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4/3399226_17957.html), “NBA 만리장성 야오밍 “중국음식 삭스핀 이제 안 먹겠다”...왜?”, 검색일: 2016.05.03.

90)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9/2014080900159.html), “중의 '反부패' 덕에... 지느러미 걱정 줄어든 상어들”, 검색일: 2016.05.03.

91)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9/2014080900159.html), “중의 '反부패' 덕에... 지느러미 걱정 줄어든 상어들”, 검색일: 2016.05.03.

92)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9013.html), “‘국민 생선’ 명태는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검색일: 2016.05.03.

그 밖에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생산 및 양륙 단계에서의 취약한 모니터링을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어린물고기에 대한 선택적 소비를 통해서 이의 불법적 유통 및 소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양적 생산에서 향후의 질적 생산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제3장 국내외 사례 및 설문조사

1. 국내 사례

1) 국내 인증제 사례

(1) 수산물 인증제

한국의 수산물 인증제도는 크게 품질인증제도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⁹³⁾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산물의 품질인증제도에는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⁹⁴⁾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가 있다.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⁹⁵⁾ 운영되는 제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전통식품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⁹⁶⁾이다. 전통식품인증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현재 수산물 관련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품질인증(78종), 수산특산물 품질인증(11종),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47종)으로 분류된다. 수산물 품질인증의 인증대상은 건제품(15품목), 염장품(3품목), 해조류(9품목), 횡감용 수산물(23품목), 냉동 수산물 (28품목)이다. 그리고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에는 조미가공품, 해조가공품이 있으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젓갈류, 죽류, 계장류 등이 있다.⁹⁷⁾

⁹³⁾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⁹⁴⁾ 수산물 등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 품질인증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로 나뉜다.

⁹⁵⁾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⁹⁶⁾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⁹⁷⁾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2013/contents.asp?m=4&s=1&s_2=1), 검색일: 2015.03.28.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비포장 판매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⁹⁸⁾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인증표지의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1〉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인증표지

구분	품목		인증표지
수산물 품질인증 (78종)	건제품 (15품목)	마른오징어, 털마른 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 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등	 
	염장품(3품목)	간다시마, 간미역, 간고등어	
	해조류 (9품목)	마른 김, 마른 돌김, 마른 가닥미역, 마른 썰은 미역, 마른 실미역, 마른다시마, 마른 썰은 다시마, 찢툰, 마른 김(자반용)	
	횟감용 수산물 (23품목)	-신선·냉장품(13): 넙치, 조피볼락, 참돔, 방어, 삼치, 농어, 오징어, 붕장어, 우렁쉥이 등 -냉동품(10): 새조개, 피조개, 새우 등	
	냉동 수산물 (28품목)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콩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병어 등	
수산물 품질인증 (11종)	조미 가공품 (9품목)	조미취치포, 조미개량조개, 조미오징어, 조미쫄면 오징어, 조미늘인 오징어 등	
	해조가공품 (2품목)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수산물 전통식품 품질인증 (47종)	젓갈류 (30품목)	-젓갈(24):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등 -액젓(4):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식해(2): 가자미, 명태	
	죽류(6품목)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게장류(3품목)	꽃게, 민꽃게, 참게	
	건제품(2품목)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타(6품목)	조미김, 재첩국, 고추장굴비,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2013/contents.asp?m=4&s=1&s2=1>)에서 표 인용, 검색일: 2016.03.28.; 인증표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수산물 및 수산물특산물 품질인증표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9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다음으로 친환경 수산물 관련 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농어업법」)에 근거하여 유기식품 등의 인증⁹⁹⁾과 무항약농수산물 등¹⁰⁰⁾의 인증이 운영되고 있다. 동법에서 수산물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 및 인증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¹⁰¹⁾에 위임하고 있다. 과거에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 제도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나, 「친환경농어업법」이 제정되면서 유기식품 인증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친환경수산물의 인증 신청, 재심사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에 의해 인정된다. 또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존의 친환경수산물 표시와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¹⁰²⁾

〈표 3-2〉 친환경 수산물 인증 및 유기식품 등의 표시 기준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 수산물(유기식품 등의 인증)		
	유기식품 인증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자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농림수산부령 제296호) [별표11]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 동 시행규칙 [별표12]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표시기준

9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유기식품 등의 인증은 유기식품 인증과 유기가공품의 인증으로 구성됨

10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10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호 제2,3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인증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¹⁰³⁾ 또한 상기 유기식품 등을 매입하여 포장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하는 취급자 인증이 있다.¹⁰⁴⁾

〈표 3-3〉 유기수산물 등 인증 대상

종류		인증대상
유기식품 인증	유기수산물	김, 굴, 미역, 다시마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등 인증	무항생제수산물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전복, 흰다리 새우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취급자 인증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등의 인증품을 매입하여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인증품 (단,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2013/contents.asp?m=4&s=3&s2=1>) 내용
표로 정리, 검색일: 2016.03.2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20호 제14조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은 “유기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또는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이며 유기수산물의 경우 양식수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¹⁰⁵⁾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대상은 무항생제수산물 제품 자체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생산자·취급자이다. 이중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의 경우 양식 수산물 중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을 생산·취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은 양식수산물 중 해조류를 생산하는

¹⁰³⁾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운영되며,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¹⁰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2013/contents.asp?m=4&s=3&s2=1>), 검색일: 2016.03.28.

¹⁰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유기식품의 인증대상)

경우에만 해당된다.¹⁰⁶⁾ 유기식품 등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인증품에 직접표시하거나, 인증품의 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다.¹⁰⁷⁾ 다만, 소비자에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천연”, “무공해”, 또는 “저공해” 등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¹⁰⁸⁾

그 밖에 수산물과 관련하여 유사 인증제도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력제)와 지리적 표지제도가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¹⁰⁹⁾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국산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에서 생산·가공·유통자의 정보와 약품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수산물 포장 겉면에 부착된 이력제 라벨의 QR코드 및 이력번호를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⁰⁾ 수산물이력제는 생산·가공·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30개 품목에 대해 8,30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¹¹¹⁾ 전체 업체 대비로는 12.9%의 업체만이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다.¹¹²⁾

10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8조(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대상)

10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108)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 동 시행규칙 [별표12]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표시 기준

109)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fishtrace.go.kr/home/mpTrace/actionMpTraceInfo.do>), 검색일: 2016. 03.28.

110)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fishtrace.go.kr/home/mpTrace/actionTraceFlow.do>), 검색일: 2016. 03.28.

11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유통업체,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위해 손잡다”, 2016.07.07, p.4.

11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유통업체,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위해 손잡다”, 2016.07.07, p.4.

〈표 3-4〉 이력추적관리와 지리적표시의 표시 기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자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¹¹³⁾로서 지리적 표시품의 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수산물 인증제도는 전통식품인증제도와 같이 수산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와, 유기수산물인증, 활성처리제비사용 인증,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와 같이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의 수산물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이나 인체 유해성 또는 소비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서 환경적 측면이 주가 되는 인증제도는 아니다. 과거에 운영되었던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도 명칭은 ‘친환경’이었으나 환경 친화적으로 수산물이 생산되었는가 보다는 인체의 무해성,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 또한 환경적 측면보다는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는 품질 및 건강성이 1차적인 목적이고 ‘친환경’은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목적이다.

11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2012.7.22.] [법률 제10885호, 2011.7.21, 전부개정]
 제2조 5호: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물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의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제2조 6호: “친환경수산물 등”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반면, 국내에는 ‘지속가능한 수산물’과 관련된 인증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수산물의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증제도로 자원의 남획 정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 타 분야의 인증제도(환경마크제도)

환경마크제도(Korea Eco-Label)는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와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¹¹⁴⁾ ‘지속가능한 소비’란 제품 구매 시 기존의 선택요소인 제품의 가격, 기능, 디자인 등 이외에 친환경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소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은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을 평가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¹¹⁵⁾

환경마크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1992년 4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환경마크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인증제도이며 환경마크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환경 친화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녹색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하고 있다.¹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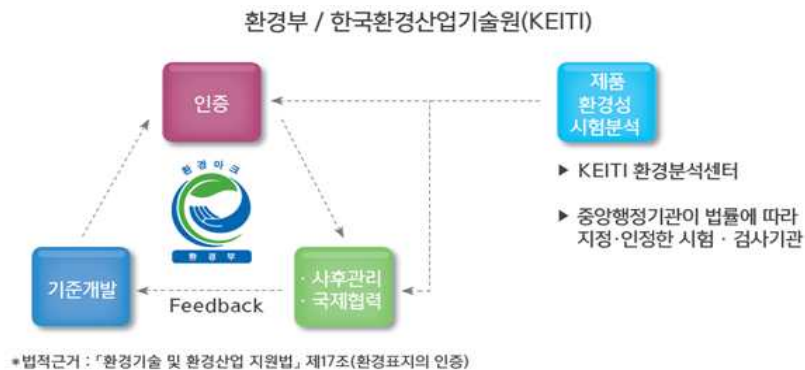
¹¹⁴⁾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5.

¹¹⁵⁾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5.

¹¹⁶⁾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1&ccfNo=1&cciNo=1&cnpClsNo=1>), 검색일: 2016.04.28.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환경부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업무를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다.¹¹⁷⁾ 구체적으로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 업무 및 환경마크제도를 총괄 관리하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고시¹¹⁸⁾하고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¹¹⁹⁾ KEITI는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의 인증기준의 제·개정 업무, 환경마크 인증업무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¹²⁰⁾

〈그림 3-1〉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체계



자료: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6.

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사무용 기기, 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가정용 기기, 가구 등 156개 품목, 17,098개 제품이 존재하며 2,839개 업체가 인증을 취득하였다.¹²¹⁾

117)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6.

118)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7-176호

11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9>), 검색일: 2016.04.28.

1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9>), 검색일: 2016.04.28.

1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http://www.greenproduct.go.kr/>), 검색일: 2016.04.28.

〈그림 3-2〉 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

분야	합계	사무용 기기	건설용 자재	개인·가정 용품	가정용 기기, 가구	교통, 여가제품	산업용 제품	복합용도, 기타	서비스
이미지									
품목수	156	21	43	22	13	12	16	25	4
인증 제품수	17,098	3,143	8,569	813	419	29	415	3,707	3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 “환경마크 대상제품별 인증제품 현황”, 2016.03.31., 엑셀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검색일: 2016.04.28.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녹색제품구매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환경마크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환경마크제품의 시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법」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부여하여 공공기관이 환경마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¹²²⁾,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¹²³⁾.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해당된다.¹²⁴⁾ 또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환경 관련 보조금을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⁵⁾ 공공기관별 환경마크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에 총 1조 6,296억 원, 2013년에 총 2조 431억 원을 구매하여 4년 만에 4,000억 원 이상이 증가하였다.

1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12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12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2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표 3-5〉 공공기관별 환경마크제품 구매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9년도(A)	2013년도(B)	증감액(B-A)
계		16,296	20,431	4,135
중앙행정기관		2,887	3,308	421
지방자치단체		5,428	6,498	1,070
교육자치단체		5,481	5,795	314
공기업	시장형	134	891	757
	준시장형	601	1,616	1,01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37	369	232
	위탁집행형	513	959	446
지방공기업		480	446	△34
지자체출연연구원		8	10	2
기타 공공기관		120	539	419

자료: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16.의 표 인용

민간부분의 환경마크 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제품구매법」 제18조에서 녹색매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매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와 생활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⁶⁾ 녹색매장은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매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소비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¹²⁷⁾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264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¹²⁸⁾ 현재 대형 유통업체 3곳과 백화점 2곳 등에서도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녹색장터와 그린카드 쇼핑몰¹²⁹⁾을 통해서도 환경마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환경마크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에코머니 포인트 제

126)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Info/B55251800033>), “녹색매장 지정제도”, 검색일: 2016.04.28.

127) 친환경적 운영은 오염저감 및 에너지 절약 등을 포함함.

128)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18.

129) 녹색장터 홈페이지(<http://shop.greenproduct.go.kr>); 그린카드 쇼핑몰 홈페이지(www.ecomoney.co.kr), 검색일: 2016.04.28.

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코머니 제휴 친환경매장을 방문하여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¹³⁰⁾, 적립된 포인트는 제품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휴대폰 요금이나 관리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¹³¹⁾

또한 환경부는 민간부문의 환경마크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과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은 친환경 제품을 전시하여 홍보하고, 교육·체험활동 등을 통해 친환경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고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개최된다.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74개사가 참여하였고 누적 관람객수가 30만 명에 달하여 국내 최대 환경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¹³²⁾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은 친환경 소비 증진 및 생산 확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캠페인이다.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전후로 ‘친환경소비주간’을 제정하여 유통회사의 친환경제품 모음전, 그린카드 특별적립행사, 친환경소비 체험교육 등을 진행한다.¹³³⁾

환경마크제도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자발적 인증제도로써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수산자원관리 인증제의 도입 및 시스템 운영 방안 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 환경마크와 취지가 유사하며, 녹색매장, 에코머니 포인트 제도와 공공기관 구매의무 부여 등의 제도는 인증제 도입 시 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

130) 최저 1%에서 최대 24%까지 적립 가능함.

131)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8.

132)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p.19-20.

133)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p.19-20.

2) 윤리적 소비 사례

(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윤리적 소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최종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측면에서 살펴보면 ‘윤리적 소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 개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효용 이외에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 환경, 동물 등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피하고,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구매력을 이용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과거에는 친환경 농수산물, 친환경 제품 등 환경 친화적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권, 노동, 빈곤 등 사회의 다방면의 문제에 대하여 윤리적 소비가 확대되어 공정무역, 공정여행, 나눔 및 기부 행동이나 소비 절제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⁵⁾ 홍연금·송인숙(2010)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과정에 따라 자원배분행동,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으로 분류하였는데,¹³⁶⁾ 이 분류에 따르면 환경마크제도 및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구매행동을 통한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¹³⁴⁾ 네이버 시사상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80445&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6.04.28.

¹³⁵⁾ 홍연금·송인숙,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개념 논의와 실천영역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6권 제4호, 2010, pp.91-92.

¹³⁶⁾ 홍연금·송인숙, “우리나라 윤리적 소비자에 대한 사례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10, p.4.

〈표 3-6〉 소비 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 행동 분류

소비과정	윤리적 소비
자원배분행동	윤리적 나눔 및 기부
구매행동	환경 친화적 제품구매, 공정무역제품구매, 공정여행, 로컬구매, 불매운동
사용행동	에너지, 물 등 자원 절약
처분행동	재활용과 재사용 행동(분리수거 중고제품 이용), 쓰레기 줄이기

자료: 홍연금·송인숙, “우리나라 윤리적 소비자에 대한 사례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10, p.4.

(2) 공정무역 제품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구매행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공정무역제품의 구매행위이다. 공정무역은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대안 무역이다.”¹³⁷⁾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상품이 생산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중간과정을 최소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윤리적 소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¹³⁸⁾

류미현·이승신(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무역제품의 구매태도, 구매의도 및 이에 미치는 영향 변수와 공정무역제품 구매에 대한 정보요구 및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연구하였다.¹³⁹⁾ 연구결과 공정무역 제품판매 기업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구매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¹⁴⁰⁾ 공정무역 제품

¹³⁷⁾ 류미현·이승신, “공정무역제품 구매태도 및 의도에 따른 정보요구”, 소비자문제연구 44(1), 2013, p.4.

¹³⁸⁾ 류미현·이승신, “공정무역제품 구매태도 및 의도에 따른 정보요구”, 소비자문제연구 44(1), 2013, p.4.; 김시월, 「착한소비란 무엇인가?」, 소비자시대, 2008.09, pp.38-39.; 박미혜·강이주 “윤리적 소비의 개념 및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2009, pp.1047-1062.

¹³⁹⁾ 류미현·이승신, “공정무역제품 구매태도 및 의도에 따른 정보요구”, 소비자문제연구 44(1), 2013, pp.14-26.

¹⁴⁰⁾ 류미현·이승신, “공정무역제품 구매태도 및 의도에 따른 정보요구”, 소비자문제연구 44(1),

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 품질(기능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 및 품질 정보가 공정무역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였다.¹⁴¹⁾

또한 유소이·박재홍(2012)은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지식 수준이 관련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와 지불비용 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¹⁴²⁾ 연구결과 공정무역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닌 주관적 지식과 윤리적 판단이 공정무역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³⁾ 즉, 소비자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공정무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공정무역제품에 더 높은 프리미엄 지불의사를 나타냈다.¹⁴⁴⁾ 따라서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윤리적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⁴⁵⁾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수산자원관리 인증제품의 구매태도가 긍정적이며, 지불의사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시,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3, p.16.

¹⁴¹⁾ 류미현·이승진 “공정무역제품 구매태도 및 의도에 따른 정보요구”, 소비자문제연구 44(1), 2013, pp.17-18.

¹⁴²⁾ 유소이·박재홍 “소비자지식효과를 고려한 윤리적 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 및 지불비용 분석-공정무역커피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3), 2012, p.297.

¹⁴³⁾ 유소이·박재홍 “소비자지식효과를 고려한 윤리적 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 및 지불비용 분석-공정무역커피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3), 2012, pp.299-300.

¹⁴⁴⁾ 유소이·박재홍 “소비자지식효과를 고려한 윤리적 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 및 지불비용 분석-공정무역커피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3), 2012, pp.300.

¹⁴⁵⁾ 유소이·박재홍 “소비자지식효과를 고려한 윤리적 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 및 지불비용 분석-공정무역커피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3), 2012, pp.303-304.

3) 중간소비자 참여 사례

(1) 유통업체의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 수산물 취급 사례

중간소비자에 해당하는 국내 L마트는 친환경 배합사료로만 양식한 광어만 취급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는 생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생사료의 원료가 되는 미성어는 어종 및 어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남획하게 되어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한다.¹⁴⁶⁾ 또한 생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영양염류의 배출이 많아 해양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¹⁴⁷⁾ 따라서 친환경 배합사료의 사용은 미성어의 남획을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으며 어장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⁴⁸⁾

L마트 사례는 생산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소비자에 해당하는 유통업체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양식한 어류를 유통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선도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배합사료의 친환경적 효과 및 수산자원 보호의 효과를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친환경 배합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가공유통업자의 MSC CoC 인증사례

MSC CoC(Chain of Custody) 인증은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경로관리 프로그램으로 공급망 전반을 보증하는 인증제도이다. 국내 최초로 MSC CoC 인증을 받는 H기업은 어묵, 크래미, 창란젓 등 5가지 상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¹⁴⁹⁾ 국내 기업인 D수산이 투자해서 설립한 중국 D유한공사는 MSC CoC 인증을 취득하였다.¹⁵⁰⁾ 또한 MSC 인증을 받은 오메가 캡슐이 수입되어

¹⁴⁶⁾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친환경 배합사료로 키운 광어 드세요”, 2015.12.15, p.1.

¹⁴⁷⁾ 그린포스트 코리아 홈페이지(<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6760>), 검색일: 2016.10.07.

¹⁴⁸⁾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친환경 배합사료로 키운 광어 드세요”, 2015.12.15, p.2.

¹⁴⁹⁾ MSC 홈페이지(https://msc.org/where-to-buy/product-finder/product_search?country=KR&start:int=0), 검색일: 2016.09.09.

¹⁵⁰⁾ 동원수산 홈페이지(<http://www.dongwonfish.co.kr/business/business0202.php>), 검색일: 2016.09.09.

판매되고 있으며, IKEA에서는 MSC Co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다.¹⁵¹⁾ 비록 국내 기업이 MSC CoC 인증을 받은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으나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가공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주시의 Global G.A.P. 인증사례

최근 제주시의 광어 양식업체 2곳이 국내 수산물 최초로 Global G.A.P. 인증을 획득하였다.¹⁵²⁾ Global G.A.P.는 세계의 주요 유통업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인증제도로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이다. Global G.A.P.은 주로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 관리기준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양식어류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¹⁵³⁾ Global G.A.P. 인증은 친어·종묘·사료·양성·출하·출하 후 과정 등 양식 생산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물 복지, 안전성 등을 평가해서 인증을 부여한다.¹⁵⁴⁾ 제주시의 광어 양식업체는 Global G.A.P. 인증을 취득하면서 해외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차별화된 소득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⁵⁵⁾ 비록 Global G.A.P.의 취득목적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어류의 복지 등을 고려한 Global G.A.P. 인증을 통해서 유통업체 및 중간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51) MSC 홈페이지(https://msc.org/where-to-buy/product-finder/product_search?country=KR&b_start=int=0), 검색일: 2016.09.09.

152) 연합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962933>), “제주 광어양식업체 2곳 우수수산물 국제인증 획득” 검색일: 2016.09.09.

153) 헤드라인 제주(<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06>), ““지속가능한 수산양식문화 이이해브사업단 국제심포지엄” 검색일 2016.09.09.

154) 연합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962933>), “제주 광어양식업체 2곳 우수수산물 국제인증 획득”; Global G.A.P 홈페이지(http://www.globalgap.org/uk_en/what-we-do/globalg.a.p.-certification/globalg.a.p.), 검색일: 2016.09.09.

155) 연합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962933>), “제주 광어양식업체 2곳 우수수산물 국제인증 획득”, 검색일: 2016.09.09.

4) 최종 소비자 참여 사례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채낚기로 참치를 어획하여 생산되는 ‘착한 참치캔’은 2004년에 시작된 그린피스의 채낚기 참치 어획 캠페인을 계기로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제조·판매되어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대표 통조림 제조사가 채낚기로 어획한 참치캔을 만들지 않아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착한 참치캔을 소비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4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행복중심생협연합회¹⁵⁶⁾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가공·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인증하는 프로그램인 MSC 인증을 획득한 ‘행복중심 참치캔’을 출시하였다.¹⁵⁷⁾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2013년에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향한다’는 기준을 생활재 취급 및 생산기준에 포함시켰고,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FAD-Free) ‘낚시로 잡은 참치’에 주목하여 2014년에 국내 최초로 낚시로 잡은 참치를 원료로 하는 착한 참치캔을 출시하였다.¹⁵⁸⁾

그러나 집어장치 어획에 비해 어획량이 일정하지 않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채낚기로 어획된 참치(가다랑어) 가격이 40% 이상 상승하여 더 이상 착한 참치캔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¹⁵⁹⁾ 이에 따라 원가상승으로 인한 생산 중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착한참치를 알리고 소비자와 함께 생산하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착한 참치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였다.¹⁶⁰⁾ 클라우드 펀딩은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¹⁶¹⁾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1개월 동안 행복중심 착한참치에 대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투

¹⁵⁶⁾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여성민우회생협으로 1989년에 창립된 협동조합이며, 2013년에 행복중심생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행복중심생협 티스토리(<http://happycoop.tistory.com/826>), 검색일: 2016.09.09.

¹⁵⁷⁾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64129.html>), “‘한마리씩 낚았어’ 이것이 진짜 ‘착한 참치캔’”, 검색일: 2016.09.09.

¹⁵⁸⁾ 한겨레21(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8316.html), “‘착한 참치캔’ 여기 있습니다.”, 검색일: 2016.09.09.

¹⁵⁹⁾ 행복중심생협 티스토리(<http://happycoop.tistory.com/826>), 검색일: 2016.09.09.

¹⁶⁰⁾ 행복중심생협 티스토리(<http://happycoop.tistory.com/826>), 검색일: 2016.09.09.

¹⁶¹⁾ 네이버 시사상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300&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6.09.09.

자금을 모금하는 “바다를 지키는 착한참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목표액의 3배를 펀딩 받아 생산에 성공하였다.¹⁶²⁾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지급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은 프로젝트의 후원자투자자이자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의 소비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투자자와 소비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진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의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는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에 기반한 수산물 생산에 직접 동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도입과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 해외 사례

1) 수산물 소비운동

(1) Seafood Choices Alliance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와 미디어의 수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수산물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¹⁶³⁾ Seafood Choices Alliance는 2001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적인 수산물 프로그램으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어업인 및 양식업자부터 가공업자, 소매업자, 음식점, 식품서비스 공급자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¹⁶⁴⁾ Seafood Choices Alliance는 책임 있는 수산물 관련 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산물 관련 산업 이해당사자들을 소집, 연결하고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을 줄임으로써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해결책을 함께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⁶⁵⁾

¹⁶²⁾ WADIZ 홈페이지(<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436>), 검색일: 2016.09.09.

¹⁶³⁾ Seafood Choices Alliance, 「Alliance Brochure」, 2015, p.2.

¹⁶⁴⁾ Seafoodchoices 홈페이지(<http://www.seafoodchoices.org/whoweare.php>), 검색일: 2016.03.04.

Seafood Choices Alliance는 해양 보전을 지지하는 긍정적 조치를 촉진시킴으로써 국제 수산물 분야에서 시장파워를 행사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Seafood Choices Alliance의 비전은 국제 수산물시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책임을 나누고 협력하여, 해양과 생태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수산물의 건전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¹⁶⁶⁾

Seafood Choices Alliance는 수산물 정상회담(Seafood Summit), 수산물 챔피언 시상식(Seafood Champion Awards),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수산물 워크숍 등과 출판 및 시장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개입한다.¹⁶⁷⁾ 먼저 수산물 정상회담은 수산업과 보존단체의 세계 대표들을 소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된다. 이를 통해 수산물 시장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산물 챔피언 시상식은 매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수산물 촉진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개인과 기업에 표창을 하는 행사이다. 과거나 현재 수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발휘하여 변화를 이끄는 데 공헌한 이들을 시상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¹⁶⁸⁾

또한 Seafood Choices Alliance는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수산업 관계자(요리사, 도소매업자, 어업인 등)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과 수산업 관련 예비경영인들에게 현재 수산자원의 상태를 알리고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Seafood Choices Alliance는 업체와 이해당사자들이 수산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GRI 수산물워크숍을 개최한다.¹⁶⁹⁾

¹⁶⁵⁾ Seafoodchoices 홈페이지(<http://www.seafoodchoices.org/whoweare.php>), 검색일: 2016.03.04.

¹⁶⁶⁾ Seafoodchoices 홈페이지(<http://www.seafoodchoices.org/whoweare.php>), 검색일: 2016.03.04.

¹⁶⁷⁾ Seafoodchoices 홈페이지(<http://www.seafoodchoices.org/whatwedo/initiatives.php>), 검색일: 2016.03.04.

¹⁶⁸⁾ Seafoodchoices 홈페이지(<http://www.seafoodchoices.org/whatwedo/initiatives.php>), 검색일: 2016.03.04.

¹⁶⁹⁾ Seafoodchoices 홈페이지(<http://www.seafoodchoices.org/whatwedo/initiatives.php>), 검색일: 2016.03.04.

마지막으로 Seafood Choices Alliance는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출판 및 시장조사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구매자를 위해서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북미, 영국,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발간하였다. 또한 시장 상태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와 수산물 가치사슬 부문에 대한 시장 벤치마크 연구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 시리즈를 발간하였다.¹⁷⁰⁾

(2) SeaWeb

SeaWeb은 해양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실현 가능하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이며,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임무를 담당한다. 해양이 직면하는 문제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과 해양생물의 고갈을 포함하며 SeaWeb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양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 정치, 사회, 환경적 관심사를 하나로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SeaWeb은 건강하고 번영하는 바다라는 목표를 위해 시장에서의 해결책과 정책 및 행동을 장려하여 해당 부문들의 협업을 지원한다.¹⁷¹⁾

SeaWeb은 지속가능한 수산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SeaWeb 수산물 정상회담, 수산물 챔피언 시상식, SeaWeb 장학생,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Asia Pacific Program), 생태계기반관리 소통 프로젝트(Ecosystem-Based Management Communications Project)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요리사, 레스토랑 운영자 등이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Good Catch 프로젝트와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KidSafe Seafood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¹⁷²⁾ 이를 통해 해양생물 고갈,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와 오염 등 오늘날 해양에 가장 해로운 영향에 대하여 다루는 한편 해양건강과 인류건강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⁷³⁾

¹⁷⁰⁾ Seafoodchoices 홈페이지(<http://www.seafoodchoices.org/whatwedo/initiatives.php>), 검색일: 2016.03.04.

¹⁷¹⁾ SeaWeb 홈페이지(<http://seaweb.org/about.php>), 검색일: 2016.03.04.

¹⁷²⁾ SeaWeb 홈페이지(<http://seaweb.org/initiatives.php>), 검색일: 2016.03.04.

¹⁷³⁾ SeaWeb 홈페이지(<http://seaweb.org/initiatives.php>), 검색일: 2016.03.04.

(3) Seafood Watch

Seafood Watch는 Monterey Bay Aquarium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비자와 수산물 유통업체들이 후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획 및 양식 수산물의 선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를 위해서 수산물을 최선의 선택(Best Choices), 좋은 대안(Good Alternatives), 소비 지양(Avoid)의 3가지로 구분해서 추천해준다.¹⁷⁴⁾ 또한 레스토랑, 수산물 유통업체들이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구입 및 유통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북미지역에서 400개가 넘는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다.¹⁷⁵⁾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가이드,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5,600만 명에게 소비자 가이드를 배포하고 150만 회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제공하였다.¹⁷⁶⁾ 그리고 Seafood Watch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 최신의 수산물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에서 상용되는 명칭으로 빠르고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가까운 음식점과 점포를 검색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깊이 있는 정보 및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다.¹⁷⁷⁾

(4) MCS 등급 및 Good Fish Guide

영국의 선도적인 해양 관련 공익단체인 MCS(Marine Conservation Society)는 어종별로 자원량과 어획방식 및 양식방식에 따라 MCS 등급을 책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MCS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각 등급은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색깔과 함께 표시된다.

1등급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현되며 가장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

¹⁷⁴⁾ Monterey Bay Aquarium 홈페이지(<http://www.montereybayaquarium.org/conservation-and-science/our-programs/seafood-watch>), 검색일: 2016.04.28.

¹⁷⁵⁾ Monterey Bay Aquarium 홈페이지(<http://www.montereybayaquarium.org/conservation-and-science/our-programs/seafood-watch>), 검색일: 2016.04.28.

¹⁷⁶⁾ Monterey Bay Aquarium 홈페이지(<http://www.montereybayaquarium.org/conservation-and-science/our-programs/seafood-watch>), 검색일: 2016.04.28.

¹⁷⁷⁾ Seafood Watch 홈페이지(<http://www.seafoodwatch.org/seafood-recommendations/our-app>), 검색일: 2016.04.28.

산물에 부여되며 ‘좋은 선택(Good Choice)’을 의미한다.¹⁷⁸⁾ 2등급은 연두색이며 아직까지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산방식이나 관리 방식에서 개선 필요성이 존재하는 수산물에 부착된다.¹⁷⁹⁾ 3등급은 노란색이며 현재시점에서 완전하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어종 및 어업에 부착되며, 3등급의 어종이나 어업방식은 자원량이나 관리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등급의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가끔씩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MC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체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⁸⁰⁾ 4등급은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며 4등급의 어업이나 양식은 생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심각한 환경적 이슈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등급 수산물의 경우 이상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의 경우에는 아주 가끔씩만 하도록 권고한다.¹⁸¹⁾

〈표 3-7〉 MCS 등급 표시 및 의미

등급	표시(색깔)	수산물 소비
1		소비 가능 수산물 (Fish to Eat) 좋은 선택 (Good Choice)
2		
3		가끔씩 소비 권장
4		
5		소비 지양 수산물(Fish to Avoid)

자료: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information/Fish+ratings>), 검색일: 2016.04.28. 이미지 차용 및 내용 정리

마지막으로 5등급의 경우 수산물의 소비를 기본적으로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5등급의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주요 항목에 모두 다 해당되거나 대부분이 해

¹⁷⁸⁾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information/Fish+ratings>), 검색일: 2016.04.28.

¹⁷⁹⁾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information/Fish+ratings>), 검색일: 2016.04.28.

¹⁸⁰⁾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information/Fish+ratings>), 검색일: 2016.04.28.

¹⁸¹⁾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information/Fish+ratings>), 검색일: 2016.04.28.

당할 경우에 부여된다. 첫째 항목은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에 의해 남획에 취약하거나 위협이 있다고 평가되는 어종이며, 둘째 항목은 자원이 남획되거나 또는 수산 자원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셋째 항목은 관리가 열악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어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다른 해양생물 및 생물 서식지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획된 경우이다.¹⁸²⁾ 등급의 숫자가 높은 경우에 지속가능성의 등급이 열악한 것을 나타내며, 숫자가 낮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이 잘 관리되어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환경적으로 영향이 적은 방식으로 어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양식시스템으로 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⁸³⁾

〈그림 3-3〉 MCS의 ‘Good Fish’ 와 ‘Fish to Avoid’

Fish to Eat	Only from these areas - fished or farmed like this	Fish to Avoid
Anchor Bream, Gilthead (farmed) Clam, Manila (farmed) Cockles Cod, Atlantic Coley or Saithe Crab, Brown Dab Haddock Hake, European Halibut, Atlantic (farmed) Herring or Silh Lobster, European Mackerel Mussels (farmed) Oyster, Native or Pacific (farmed) Pangasius (farmed) Pollock, Alaska Pouting or Bib Prawn, Coldwater or Northern Prawn, King or Tiger (farmed) Salmon, Atlantic (farmed) Salmon, Pacific Sardine or Pilchard Scallops Scampi or Langoustine Seabass (farmed) Sole, Dover or Common Sprat Swordfish Tilapia (farmed) Trout, Rainbow (farmed) Tuna, Albacore Tuna, Skipjack Tuna, Yellowfin Turbot (farmed) Whiting	Bay of Biscay Onshore production; Organic certified All methods Hand-gathered - MSC certified North East Arctic or Iceland - MSC certified Iceland Western Channel, Celtic Sea, Cornwall, Orkney, Pembrokeshire - Pot caught; Shetland - MSC certified North Sea - Other trawled; Seiner-netted North Sea, Skagerrak and West of Scotland, Iceland, North East Arctic - MSC certified Cornwall - MSC certified Onshore production Cornwall; Irish Sea, MSC certified Jersey - MSC certified South West England - Handline; EU & Norway (MNSA) Rope grown Bottom & Suspension culture ASC certified Bering Sea/Westian Islands, Gulf of Alaska - MSC certified All sources North Sea; MSC certified Organic certified Organic certified MSC certified or FAO based Responsible Fisheries Management (RFM) certified Cornwall - MSC certified Live-caught; Shetland - MSC certified Irish Sea East; North Sea (Fladen Ground); West Scotland (Minches) - Pot caught Onshore production Western Channel; MSC certified North Sea Central & North West Atlantic - longline MSC certified; South East Pacific - Harpoon Zimbabwe - ASC certified; Onshore production Organic certified; Freshwater ponds South Pacific - Longline MSC certified; Troll North Pacific - Troll, Pole & line West Central Pacific & Indian Ocean - Pole & line, Non-FAD purse seine East Pacific, East & West Atlantic - Troll, Pole & line West Central Pacific - Pole & line, Handline, Non-FAD purse seine Onshore production Southern Celtic Sea & English Channel	All deep sea species (e.g. Alfonsino, Blue Ling, Orange Roughy, Rabbitfish) Eel, European Halibut, Atlantic - wild Marlin, Blue - Atlantic Mullet, Grey or Thicklip Prawn, King or Tiger - trawled or non-certified farmed Ray, Sandy, Shagreen, Starry, Undulate Salmon, Atlantic - wild Seabass - wild Shark, Angel Tope Spurdog or Rock Salmon Skate, Common Norwegian, White Sturgeon (Caviar) - wild Swordfish - Mediterranean Tuna, Bigeye - Atlantic & West Central Pacific - Gill net, Longline, Purse seine Tuna, Bluefin Tuna, Yellowfin - Indian Ocean - Gill net, Longline, Purse seine Whitebait Wolffish
Rated 1 or 2		Rated 5

자료: MCS, 「Pocket Good Fish Guide」, 2016, p.1.

182)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information/Fish+ratings>), 검색일: 2016.04.28.

183)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information/Fish+ratings>), 검색일: 2016.04.28.

MCS는 Pocket Good Fish Guide를 제작하여 자원관리가 잘되고 있는 “먹을 수 있는 어종(Fish to Eat)”¹⁸⁴⁾과 어업이나 양식과정에서 위해가 있는 어종이 또는 멸종위기에 있어 “소비를 지양해야 할 어종(Fish to Avoid)”¹⁸⁵⁾을 홍보하고 있다.¹⁸⁶⁾ MCS 3등급과 4등급의 어종은 가끔씩만 소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Good Fish Guide 홈페이지와 Good Fish Guid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0 종이 넘는 어종에 대한 지속가능성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어종별로 생산방법(양식, 어로어업)과 생산 국가, 조업방식(원양트롤, 선망, 크릴, 맨손채취 등), 양성방법(순환여과시스템, 지수식 등), 자원분포해역 (Stock Area)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생태정보, 자원정보, 관리정보, 조업 상세 정보, 대체 가능 어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⁸⁷⁾

〈그림 3-4〉 Good Fish Guide 홈페이지 어종별 정보(예시)



자료: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fishfinder.php?fish=&min=1&max=2&method=&type=&capture=&results=&page=0>), 검색일: 2016.04.28.

184) MCS 1-2등급의 수산물을 의미함.

185) MCS 5등급의 수산물을 의미함.

186) MCS, 「Pocket Good Fish Guide」, 2016, p.1.

187)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fishfinder>), 검색일: 2016.04.28.

(5) Good Catch 프로젝트

Good Catch는 수산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영국전역의 식품서비스업종 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기획은 Sustain이라는 민간 NGO 단체에서 시작하였으며 MCS(Marine Conservation Society),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Seafood Choices Alliance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식품서비스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소비자 친화적 재료와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소개하여 레스토랑과 외식업체들이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¹⁸⁸⁾

Good Catch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단체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소비자운동이나, Good Catch에 참여하는 대상이 식품서비스업 종사자와 음식점 등의 민간업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중간소비자의 참여 사례로도 볼 수 있다. Good Catch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더 쉽게 제공하고 공급하기 위해 요리사, 음식 공급업자, 레스토랑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동 프로젝트는 정보수집, 지속가능한 공급, 공헌 명시, 명확한 의사소통, 영향 확대 과정의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¹⁸⁹⁾

1단계인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수산물이 어획되거나 양식되었는지 등과 같이 현재 제공하는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¹⁹⁰⁾ 2단계인 지속가능한 공급은 외식사업체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세 가지의 원칙을 지침으로써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세 가지 원칙은 최악을 피하고(Avoid the worst), 최고를 권장하고(Promote the Best), 나머지를 개선하는 것(Improve the Rest)이다. 첫 번째 원칙인 최악을 피하는 것(Avoid the Worst)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수산물(MCS 5등급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원이 부족한 어종을 메뉴에서 줄이거나, 아

¹⁸⁸⁾ Good 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the_essentials), 검색일: 2016.04.28.

¹⁸⁹⁾ Good Catch 홈페이지(http://www.sustainweb.org/goodcatch/start_improving), 검색일: 2016.04.28.

¹⁹⁰⁾ Good 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1_gather_information), 검색일: 2016.04.28.

에 없애는 계획을 설정하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칙인 최고를 권장하는 것(Promote the Best)은 지역이나 세계적 환경 측면에서 명백하게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메뉴를 선택할 때 가장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고, 재료를 선택할 때 최고의 선택을 늘려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⁹¹⁾ 여기서 최고의 선택(the best seafood choices) 여부를 판단할 때, 지속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¹⁹²⁾

3단계는 공헌명시로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공헌한 바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수산물 정책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다.¹⁹³⁾ 4단계는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고객 및 공급업체, 기타 사업관계자에게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점원, 동료, 공급업체, 고객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¹⁹⁴⁾

〈그림 3-5〉 자율점검 템플릿

Product description	Supplier or brand	Species name (common)	Species name (scientific)	Storage category (e.g. fresh/frozen/canned)	Product form (e.g. whole/fillets/boneless)	Is it wild caught or farmed?	Where is it caught or farmed?	How is the fish caught (or farmed)?	MCS rating (1 Green-5 Red)	Is it eco-labelled? (e.g. MSC, organic, line-caught, label)	Country of origin	Name of supplier	Traceability from supplier? (e.g. evidence of site visits, audit certificates)	Notes and justification
Fish fingers	Green Value	Alaska pollock	<i>Theragra chalcogramma</i>	Frozen	Breaded	Wild	off of Alaska	Commercial	2	MSC	USA	Green	MSC certification	
Canned tuna	Green Value	Yellowfin tuna	<i>Thunnus albacares</i>	Canned	Chunks	Wild	offshore	Commercial	3	MSC	Thailand	Green	MSC	
Whole mackerel	John's New Fish	Mackerel	<i>Scomber scombrus</i>	Fresh	Whole	Wild	Commercial	Line-caught	3	No	UK	John's	Verifiably told supplier has record of direct boat visit and direct sourcing relationship	
Whole gurnard	John's New Fish	Red gurnard	<i>Lepidion cycloides</i>	Fresh	Whole	Wild	Commercial	Other trawl	2	No	UK	Corrish	Verifiably told supplier has record of direct boat visit and direct sourcing relationship	
Crab tail	London Seafood	Crab tail	<i>Libinia emarginata</i>	Frozen	Fillets	Wild	Atlantic	Longline	2	MSC	USA	Green	MSC	
Scampi tails	London Seafood	Crangon	<i>Scudopagurus noronhai</i>	Frozen	Breaded	Wild	North Sea	Commercial	3	No	UK	John's	Verifiably told supplier has record of direct boat visit and direct sourcing relationship	
Salmon supreme	London Seafood	Salmon	<i>Salmo salar</i>	Fresh	Portions	Farmed	Scotland	Net-pens	4	No	UK	Heath Lush	Verifiably told supplier has record of direct boat visit and direct sourcing relationship	
Mussels	London Seafood	Blue mussel	<i>Mytilus edulis</i>	Fresh	Loose	Farmed	Scotland	Other trawl	3	No	UK	John's	Verifiably told supplier has record of direct boat visit and direct sourcing relationship	
Pre-fried tiger prawns	London Seafood	Tiger prawn	<i>Penaeus monodon</i>	Frozen	Shrimp	Wild	India	Commercial	3	No	India	Green	MSC	

자료: Good Catch 홈페이지(http://www.sustainweb.org/goodcatch/self_audit_template), 검색일: 2016.04.28.

191) 최고의 선택을 늘린다는 것은 수산자원관리가 잘 된 어종을 선택하는 비율을 늘려가는 것을 의미함.

192) Good 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2_source_sustainably), 검색일: 2016.04.28.

193) Good 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3_state_your_commitment), 검색일: 2016.04.28.

194) Good 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4_communicate_clearly; 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5_influence_wider_progress), 검색일: 2016.04.28.

또한 Good Catch는 중간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소비할 때 수산물 공급자의 수산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템플릿(self audit template)을 고안해서 제공하고 있다. 자율점검템플릿은 중간소비자가 공급자가 공급하는 수산물에 관한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템플릿의 형식은 개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Good Catch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¹⁹⁵⁾

(6) Green Peace의 수산물 소비 운동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에 따르면 주요 참치 7개 어종의 3분의 1이 과도하게 남획되고 있다. 이 중 흰감으로 활용되는 대서양 참치, 태평양 참치, 남방 참치 3종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¹⁹⁶⁾ 그린피스는 집어장치(FAD)를 통한 남획으로 참치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면서 200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인 채낚기 등의 방식으로 참치를 어획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¹⁹⁷⁾ 이후 영국의 참치통조림 소매업자와 참치통조림 유통·제조업체들이 동 캠페인에 동참하여 100%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잡힌 참치만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¹⁹⁸⁾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의 참치캔 브랜드와 소매업자들도 지속가능한 채낚기 참치 어획에 동참하였다.¹⁹⁹⁾

또한 그린피스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등의 나라에서 ‘착한 참치캔 순위’를 책정하여 발표하고 있다.²⁰⁰⁾ 착한 참치캔

195) Good Catch 홈페이지(http://www.sustainweb.org/goodcatch/self_audit_template/), 검색일: 2016.04.28.

196) CNBNEWS 홈페이지(<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18907>), “3월 7일 ‘참치데이’의 불편한 진실”, 검색일: 2016.09.01.

197) CNBNEWS 홈페이지(<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18907>), “3월 7일 ‘참치데이’의 불편한 진실”, 검색일: 2016.09.01.

198) CNBNEWS 홈페이지(<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18907>), “3월 7일 ‘참치데이’의 불편한 진실”, 검색일: 2016.09.01.

199)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63270.html>), “잠깐! 당신 젓가락 위 참치는 착한가요?”, 검색일: 2016.09.01.

200) 그린피스 홈페이지(<http://tuna.greenpeace.org/ko/info/greenpeace-tuna-guides>), 검색일: 2016.09.01.

순위는 참치가 채낚기 방식으로 어획되었는지 여부와 지역 연안어업을 지원하고 지역 어업인에게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였는지 여부, 정직하고 이해 가능한 라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윤리적 어업 프로젝트에 자금 등의 지원 여부, 이력 추적가능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책정하고 있다.²⁰¹⁾ 또한 ‘참치캔 가이드 (Canned Tuna Guide)’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소비자들이 참치캔을 구매할 때 브랜드 검색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참치를 원료로 사용한 참치캔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⁰²⁾

〈그림 3-6〉 착한 참치캔 순위 예시



자료: 그린피스 홈페이지(<http://tuna.greenpeace.org/ko/info/greenpeace-tuna-guides>), 검색일: 2016.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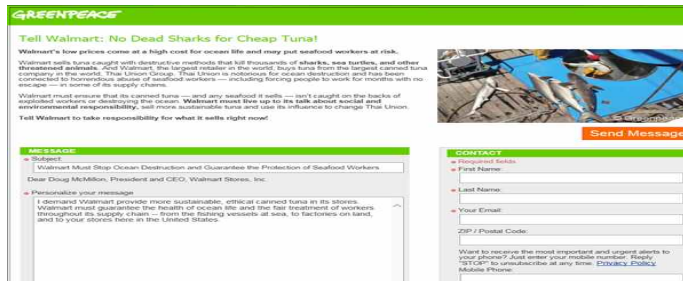
그린피스는 정보제공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직접 남획과 혼획을 일삼는 기업에게 의견 제시 및 압력행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의 ‘TAKE ACTION’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 ‘책임 있는 어획’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⁰³⁾

201) 그린피스 홈페이지(<http://tuna.greenpeace.org/ko/info/greenpeace-tuna-guides>), 검색일 2016.09.01.

202) 그린피스 홈페이지(<http://www.greenpeace.org/australia/en/news/oceans/Never-fear-the-tuna-iphone-app-is-here>), 검색일 2016.09.01.

203) 그린피스 홈페이지(https://secure3.convio.net/gpeace/site/Advocacy?cmd=display&page=UserAction&id=1979&s_src=actions&s_subsrc=160425_tunaguide), 검색일: 2016.09.01.

〈그림 3-7〉 소비자의 유통업체에 의견제시 및 압력 행사



자료: 그린피스(https://secure3.convio.net/gpeace/site/Advocacy?cmd=display&page=UserAction&id=1979&s_src=actions&s_subsrc=160425_tunaguide), 검색일: 2016.09.01.

2) 수산물 인증제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는 인증 분야, 인증 어업 범위, 인증 대상 등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인증분야는 환경 및 어업, 사회복지, 동물복지, 식품안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 가지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인증제도도 있다.²⁰⁴⁾ 인증 어업 범위를 기준으로 인증제도를 구분하면, 어획된 수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와 양식수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인증제도로 나뉜다.

환경 및 어업 관련 인증제도 중 인증어업의 범위가 어획만을 인증하는 제도로는 RFS 인증제도가 있으며, 어획 및 양식 모두를 인증 하는 제도는 MSC, FOS, IFFO RS 인증제도가 있다.²⁰⁵⁾ 양식어업만을 인증하는 제도로는 ASC, BAP, Global G.A.P.제도가 있다.²⁰⁶⁾²⁰⁷⁾ 인증제도가 운영되는 대상에 따라서 인

204)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standards>), 검색일 2016.09.05.

205) RFS(Seafish Responsible Fishing Scheme),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FOS (Friend of the Sea), IFFO RS(International Fish meal and Fish oil Organization)

206)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interactive-guide#11> ; <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standards>), 검색일: 2016.09.05. ; SeaFish의 Interactive Guide와 Guide to seafood standards에 제시된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함

207)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BAP(Best Aquaculture Practice), Global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증제도를 구분하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와 생산자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 양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나뉜다.

〈표 3-8〉 환경 및 어업 관련 인증제도

인증제도명	인증 어업범 위	인증 분야	이력 추적	가공업자 참여	소비자 대상 (로고)	생산자 산업 대상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어획, 양식	환경/어업	O	O	O	O
FOS (Friend of the Sea)	어획, 양식	환경/어업, 사회복지, 동물복지	O	O	O	O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양식	환경/어업, 사회복지, 동물복지	O	O	O	O
BAP(Best Aquaculture Practice)	양식	환경/어업, 사회복지, 동물복지, 식품안전	O	O	O	O
Global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양식	환경/어업, 사회복지, 동물복지, 식품안전	O	O	△ ²⁰⁸⁾	O
RFS(Seafish Responsible Fishing Scheme)	어획	환경/어업, 사회복지, 식품안전	O	X	X	O
IFFO RS (International Fish meal and Fish oil Organization)	어획, 양식	환경/어업, 식품안전	O	X	X	O

자료: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interactive-guide#11>; <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standards>),
검색일: 2016.09.05.

소비자 및 생산자·산업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에는 MSC 수산물 인증제도, FOS, ASC, BAP 인증제도가 있으며, 생산자 및 산업만을 대상으로

²⁰⁸⁾ Global G.A.P. 인증은 생산, 유통업자를 위한 인증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한 로고가 없었으나, 최근 Global G.A.P.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된 양식수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GGN 인증로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인증제도에는 Global G.A.P, RFS, IFFO RS 인증제도가 있다. 인증제도에 가공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는 MSC, FOS, ASC, BAP, Global G.A.P. 이 있으며, 위에 제시된 모든 인증제도가 이력추적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1) MSC 수산물 인증제도

종래의 어업관리가 정제되고, IUU어업이 성행하여 보다 값싼 수산물 소비에 수요가 편중됨으로 인해 세계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위주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MSC(해양관리협의회)는 구매 측인 소비자의 움직임으로 적절한 자원관리를 도모하고, 자원관리가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다.²⁰⁹⁾ MSC는 1997년에 WWF(World Wildlife Fund)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1999년에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방식의 추진을 위한 시장기반의 관리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독자적인 국제 비영리기관으로 발족하였다.²¹⁰⁾

MSC는 “세계의 바다가 생명으로 흘러넘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걸쳐서 수산물의 공급이 확보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²¹¹⁾ 인증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인식하고 권장하며, 에코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조업된 수산물을 구매하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에코라벨을 붙인 수산물 시장을 확대하여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시장을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한다.²¹²⁾

MSC의 역할은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 지속가능한 자연 상태의 수산물과 수산물 추적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과 보상을 통하여 좋은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수산물 소매상 및 레스토랑, 브랜드와 협업을 한다. 또한 세계

209)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210) 김진영·장창익,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Fisheries Technology, 2010, p.418.

211)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212)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수산물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에 MSC 평가를 위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모든 소비자가 MSC 블루라벨 인증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Fish & Kids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²¹³⁾

MSC의 인증제도는 어업에 대한 MSC 어업인증과 수산물 어획 이후의 공급 체인에 대한 MSC CoC(Chain of Custody) 인증 두 가지로 나뉜다. MSC CoC인증은 최종패키지에 ‘바다의 에코라벨’이 표시될 때까지의 공급 체인 전역을 아우르는 인증이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281개의 어업이 MSC 인증을 취득했으며 97개의 어업이 MSC 인증 심사 중에 있다. MSC 인증을 취득한 어업의 어획량은 전 세계 식용 자연산 어획량의 약 9%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 세계 흰살생선 어획량 중 약 46%가 MSC 인증을 받았으며 자연산 연어 중 50%가 MSC 인증을 취득하거나 심사 중인 어업을 통해 어획되고 있다.²¹⁴⁾

MSC의 수산물 인증 프로그램은 세계 해양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어업행위의 승인과 보상을 통해 수산물 시장에 변화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할 때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²¹⁵⁾ MSC는 지속가능한 어업과 공급과정의 추적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의 원칙 및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하여 어업 등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한다.²¹⁶⁾

MSC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평가기준은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어업 대상종이 지속적으로 어업이 가능한 정도의 자원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는 어업이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지 여부, 셋째는 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각 원칙의 평가기준 및 수행지표는 그림과 같다.²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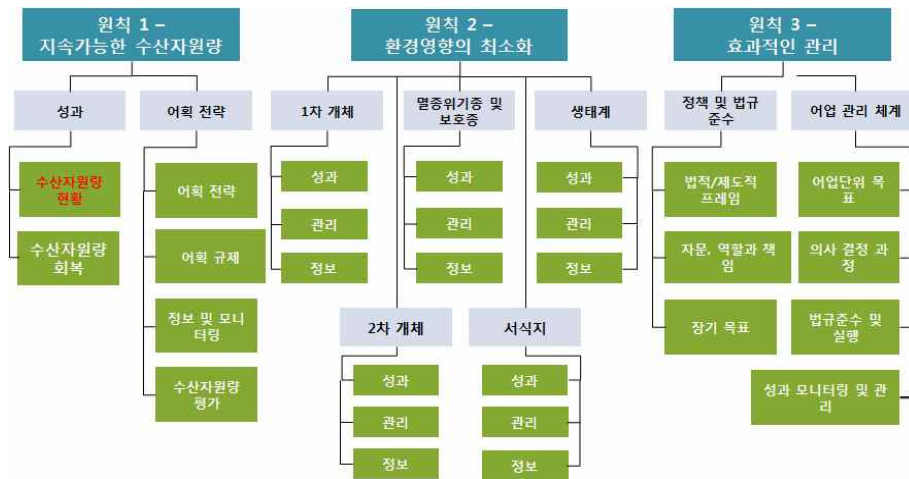
213) MSC 홈페이지(<https://www.msc.org/about-us/what-we-do>), 검색일: 2016.03.04.

214)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215) MSC 홈페이지(<https://www.msc.org/about-us/what-is-the-msc>), 검색일: 2016.03.04.

216) 김진영·장창익,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Fisheries Technology, 2010, p.418.

〈그림 3-8〉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 원칙과 평가기준



자료: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roductory Training", MSC Training Program 발표자료, 2016.05.18.~20.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 평가기준의 수행지표는 3가지 항목의 평가기준점에 따라 점수화되는데, 첫 번째 원칙은 성과와 어획전략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 원칙은 1차 어종(어획 대상종)과 2차 어종(비대상종), 멸종위기종과 보호종, 생태계, 서식지 등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원칙은 정책 및 법규준수와 어업 관리체계로 구성된다.²¹⁸⁾ MSC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세 가지 원칙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어장으로부터 어획한 수산물만이 파란색의 MSC 인증을 부착할 수 있다. MSC의 라벨은 수산물이 인증 받은 지속가능한 어장에서 책임감 있는 어업으로 어획되었음을 인증하며, MSC 인증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수행하는 어장에서 잡힌 수산물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다.²¹⁹⁾

²¹⁷⁾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roductory Training", MSC Training Program 발표자료, 2016.05.18.~20.

²¹⁸⁾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roductory Training", MSC Training Program 발표자료, 2016.05.18.~20.; MSC, 「Fishery assessment methodology and guidance to certification bodies including default assessment tree and risk-based framework」, Version 2.1, 2010, p.11.; 김진영·장창익,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Fisheries Technology, 2010, pp.418- 419.

²¹⁹⁾ MSC 홈페이지(<https://msc.org/about-us/what-is-the-msc>), 검색일: 2016.03.04.

가. MSC 인증제품 해외 사례²²⁰⁾

미국의 Walmart는 MSC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취득한 어업에 한정하여 수산물을 공급하기로 공약하였으며 실제 Walmart US, Sam's club, ASDA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90% 이상이 MSC 또는 BAP 인증 제품이다.²²¹⁾ Whole Foods 또한 MSC가 인증한 수산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을 공약했으며 MSC 인증을 부착한 제품을 PB 제품으로 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MSC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²²²⁾ 맥도날드의 경우 2011년에 유럽 39개국의 7천개 점포에서 MSC 인증을 부착한 피쉬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2013년 2월), 캐나다(2014년 6월), 브라질(2014년 11월) 등으로 MSC 인증을 표시한 피쉬버거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²²³⁾

또한 하얏트호텔은 책임감 있는 어업으로 공급된 수산물 조달을 증가시키기 위한 국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첫 번째 목표로 2018년까지 제공하는 수산물의 50% 이상을 책임 있는 어업으로부터 어획된 수산물로 공급하겠다는 것을 2014년 8월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얏트호텔은 공급하는 수산물의 15% 이상을 MSC 또는 ASC에서 인증 받은 어장이나 농장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다.²²⁴⁾ 이 계획은 하얏트호텔과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WWF와의 지속가능한 수산물 전략 파트너십의 첫 단계이며 이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어종의 소비를 지양함으로써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²²⁵⁾

올림픽에서도 MSC 인증 수산물이 도입되어 소비되었는데 2012년 런던 올림

220) Kozo Ishii, "MSC/Coc/ASC 認証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221) Kozo Ishii, "MSC/Coc/ASC 認証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222) Kozo Ishii, "MSC/Coc/ASC 認証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223) Kozo Ishii, "MSC/Coc/ASC 認証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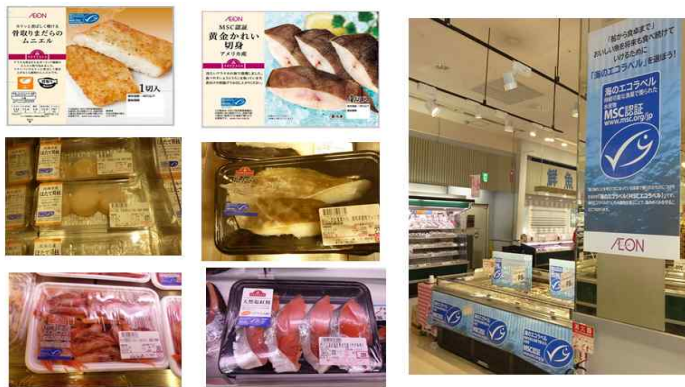
224) MSC, 「Annual Report」, 2014-15, p.36.

225) Kozo Ishii, "MSC/Coc/ASC 認証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픽에서는 2만 4천 명의 선수와 직원 및 9백만 명의 입장객에게 MSC 인증 수산물을 공급하였다.²²⁶⁾ 또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도 리우의 주요 어업기관과 MSC 및 ASC 간의 MOU 체결을 통해 인증 받은 수산물을 운동선수들과 기자들에게 제공하였다.²²⁷⁾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MSC 라벨을 부착한 제품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10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MSC 인증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 대형 소매상과 백화점, 지방의 슈퍼마켓과 생협 등에서도 MSC 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²²⁸⁾

〈그림 3-9〉 일본의 MSC 에코라벨 부착 제품 사례



자료: Kozo Ishii, “MSC/Coc/ASC 認証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나. MSC CoC 인증

MSC CoC(Chain of Custody) 인증(생산·유통·가공 경로관리²²⁹⁾)은 MSC 인증

²²⁶⁾ Kozo Ishii, “MSC/Coc/ASC 認証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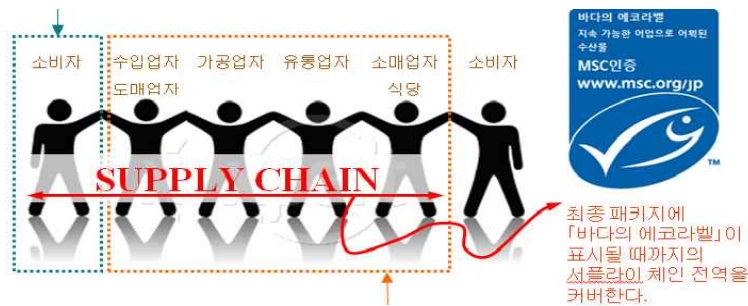
²²⁷⁾ SEAFOOD news(http://www.seafoodnews.com/SearchStory/ha8__CggWI41Ri0guw__tsCknk6L6MGLxnvLqDiWvMaxlzJRCoti9sSSxWQP-E0wYm/1027834), “Olympic Games in Rio to Feature MSC and ASC Certified Seafood”, 검색일: 2016.09.01.

²²⁸⁾ Kozo Ishii, “MSC/Coc/ASC 認証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²²⁹⁾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roductory Training”, MSC Training Program 발표자료,

을 받은 수산물이 비(非)인증 수산물과 섞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인증은 상품이력확보(traceability)가 목적이며, 최종 가공에 도달하기까지 수산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모든 기업(도매업자, 가공업자, 소매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MSC CoC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조사를 실시한다. 인증을 취득한 후에는 연차검사가 있으며 동 인증을 취득한 후 인증범위에 새로운 어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²³⁰⁾

〈그림 3-10〉 수산물 어획 이후의 공급체인에 대한 CoC인증



자료: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MSC CoC 인증의 규범과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MSC 생산·가공·유통 경로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급망 내 모든 업체에게 적용된다.²³¹⁾

- 인증제품은 인증취득 공급자로부터 구입해야만 한다.
- 인증제품이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없으면 안 된다.
- 인증제품은 분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2016.05.18~20.

²³⁰⁾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²³¹⁾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 인증제품은 추적이 가능하고, 중량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 사업자는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2) Friend of the Sea

FOS(Friend of the Sea)는 해양서식지의 보존을 미션으로 하는 비정부기구로서 Earth Island Institute 돌고래 안전 프로젝트의 유럽지역 책임자인 Dr. Paolo Bray가 설립하였다.²³²⁾ FOS는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에 대한 FOS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의 검정기관(EU national accreditation)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획득한 인증제도이다.²³³⁾ 인증 대상제품은 전 대륙에서 교역되는 수산물, 사료, 오메가3 피쉬오일 등이다. 인증 제품 및 원산지는 FOS의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독립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다.²³⁴⁾ 자원의 지속가능성 이외에도 아동 노동 금지, 강제 노동 금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한다.²³⁵⁾

FOS의 인증기준은 FAO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²³⁶⁾ 따르고 있다. 특히 FAO 가이드라인 제30조에 따라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상태인 수산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²³⁷⁾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FOS의 어로어업 인증기준은 남획되지 않은 목표종, 부수어획물의 8% 미만 폐기, 멸종위기종의 부수어획 금지, 해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획, TAC, IUU 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준수한 어획, 사회적 책임, 탄소배출 절감 등이다.²³⁸⁾ 또한 FOS는 지속가능성이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추적될 수 있도록 생산·가공·유통 경로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증 제품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DNA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²³⁹⁾

²³²⁾ Friend of the Sea 홈페이지(<http://www.friendofthesea.org/about-us.asp?ID=9>), 검색일: 2016.10.07.

²³³⁾ Friend of the Sea, 「Annual Report 2015」, 2016, p.5.

²³⁴⁾ Friend of the Sea 홈페이지(<http://www.friendofthesea.org/about-us.asp?ID=9>), 검색일: 2016.10.07.

²³⁵⁾ Friend of the Sea, 「Annual Report 2015」, 2016, p.5.

²³⁶⁾ FAO,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evision1, 2009.

²³⁷⁾ Friend of the Sea 홈페이지(<http://www.friendofthesea.org/about-us.asp?ID=9>), 검색일: 2016.10.07.

²³⁸⁾ Friend of the Sea, 「Annual Report 2015」, 2016, p.5.

2016년 7월 기준 현재 FOS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는 59개국의 534개이다.²⁴⁰⁾ 2015년 12월 기준 37개국의 83개의 어로어업이 FOS 인증을 받았고, 2015년에만 25개의 어로어업이 신규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FOS 인증을 받은 어업은 참치, 정어리, 멸치, 고등어 등의 어류와 갑각류 및 패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²⁴¹⁾ 양식업 분야에서는 총 25개국의 130개 업체가 지속가능한 생산 인증을 받았으며 2015년에 10개의 업체가 신규로 인증을 받았다.²⁴²⁾ FOS는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서 대해서 국제적 기준인 Global G.A.P.와 파트너십을 맺어, Global 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의 어장이 대해서 일정한 추가 기준²⁴³⁾을 충족하는 경우 FOS 라벨과 GGN 라벨²⁴⁴⁾을 함께 표시한 통합인증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⁴⁵⁾

〈그림 3-11〉 FOS-GGN 통합인증 라벨 및 상품

<FOS - GGN 통합인증 라벨>



<통합인증 라벨 상품 >



자료: Friend of the Sea, 「Annual Report 2015」, 2016, p.8.

또한 FOS는 인증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where to bu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239) Friend of the Sea, 「Annual Report 2015」, 2016, p.5.

240) Friend of the Sea 홈페이지(<http://www.friendofthesea.org/certified-products.asp>), 검색일: 2016.03.04.

241) Friend of the Sea, 「Annual Report 2015」, 2016, p.7.

242) Friend of the Sea, 「Annual Report 2015」, 2016, p.8.

243) FOS ADD-ON 기준

244) GGN은 Global G.A.P. 양식부문의 소비자 대상 라벨로 13자리의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245) Friend of the Sea, 「Annual Report 2015」, 2016, p.8.

홍콩,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에서 FOS 인증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고 있다.²⁴⁶⁾ 그리고 FOS 홈페이지에서 FOS 인증제품의 공급자와 재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제품은 어종의 학술명, 국가, 어획방법, 자연산과 양식산, 상품형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²⁴⁷⁾

(3) ASC 인증제도²⁴⁸⁾

2010년도에 설립된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 양식관리위원회)는 양식수산물과 관련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 대상어종은 연어, 담수 송어, 틸라피아, 새우, 굴, 가리비, 전복 등의 양식어종이다. ASC 인증은 법령 준수 여부, 환경적, 사회,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²⁴⁹⁾ 환경적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 자연환경보전, 천연개체군에 끼치는 영향 방지, 적절한 자원이용, 병충해 관리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근거한 경영관리, 지역사회와의 연대 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하며, 식품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수질, 병충해, 의약품 관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양식 밀도, 사망률 관리 등을 기준으로 한다. ASC 인증 양식장은 2015년 11월 기준으로 167개이며, 인증 제품 수는 4,279개이다.²⁵⁰⁾

(4) BAP 인증제도

BAP(Best Aquaculture Practices) 인증제도는 GAA(Global Aquaculture Alliance)가 운영하는 제도로 양식수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 적은 화학물질을

²⁴⁶⁾ Friend of the Sea 홈페이지(<http://www.friendofthesea.org/where-to-buy.asp?ID=1>), 검색일: 2016.03.04.

²⁴⁷⁾ Friend of the Sea 홈페이지(<http://www.friendofthesea.org/certified-products.asp>), 검색일: 2016.03.04.

²⁴⁸⁾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²⁴⁹⁾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²⁵⁰⁾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사용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경우에 인증하고 있다.²⁵¹⁾ BAP 인증 제도는 책임 있는 양식과 관련하여 가공공장, 양식장, 부화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 지속가능성, 책임성, 품질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²⁵²⁾ 여기서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을 판단하는 4가지 핵심 기준은 식품안전, 사회복지, 동물의 건강 및 복지, 환경이다.²⁵³⁾ 또한 BAP 인증제도는 양식수산물 생산과정에서 BAP 인증 통합 정도를 별의 개수(1개-4개)로 나타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BAP 인증의 통합 정도는 양식수산물 생산과정에서 가공공장, 양식장, 부화장, 사료공장 각각에 대해서 BA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었는지의 여부로 판단되며, 각 단계마다 하나씩 별점이 부여된다.²⁵⁴⁾ BAP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 양식장, 부화장, 사료공장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1,376개소이며, BAP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184만 톤이다.²⁵⁵⁾

〈표 3-9〉 BAP 인증 통합 정도 별점 시스템

단 계	내 용	로고 ²⁵⁶⁾
★	BAP 인증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수산물	
★★	BAP 인증 가공공장 생산 및 양식장 생산 수산물	
★★★	BAP 인증 가공공장, 양식장, 부화장 또는 사료공장 생산 수산물	
★★★★	BAP 인증 가공공장, 양식장, 부화장,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수산물	

자료: BAP, 「BAP Logo Use Guide」, 2016, p.8, p.16.

251) GAA 홈페이지(<http://gaalliance.org>), 검색일: 2016.09.01.

252) GAA 홈페이지(<http://gaalliance.org/what-we-do/bap-certification>), 검색일: 2016.09.01.

253) BAP 홈페이지(<http://bap.gaalliance.org/bap-certification>), 검색일: 2016.09.01.

254) BAP 홈페이지(<http://bap.gaalliance.org/program-integrity/multi-star-integrity>), 검색일: 2016.09.02.

255) BAP 홈페이지(<http://bap.gaalliance.org/bap-certification/what-products-and-facilities-are-bap-certified>), 검색일: 2016.09.02.

256) BAP, 「BAP Logo Use Guide」, 2016, p.8, p.16.

3) 중간소비자 참여 사례

(1) 중간소비자 및 산업 관련 인증제도

가. Global G.A.P. 인증제도

Global G.A.P.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인증 제도이다. 전 세계의 업계 전문가,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증제도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통해 전 세계의 농민,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⁵⁷⁾ Global G.A.P. 인증은 식품안전 및 이력추적, 환경(생물다양성 포함), 근로자 건강·안전·복지, 동물 복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²⁵⁸⁾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양식 분야에 대해서만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lobal G.A.P. 양식수산물 인증 기준은 양식수산물의 사료부터 유통까지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으며, Global G.A.P. 인증제도 또한 생산 및 공급망 전체에서 생산·유통·가공 경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lobal G.A.P.는 생산 및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증제도이나 최근 동 인증을 받은 양식장으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GGN(Global G.A.P. Number) 라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⁵⁹⁾ GGN 인증라벨의 13자리 숫자를 GGN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양식 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참여한 모든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²⁶⁰⁾

²⁵⁷⁾ Global G.A.P. 홈페이지(http://www.globalgap.org/uk_en/what-we-do/globalg.a.p.-certification/globalg.a.p.), 검색일: 2016.09.02.

²⁵⁸⁾ Global G.A.P. 홈페이지(http://www.globalgap.org/uk_en/what-we-do/globalg.a.p.-certification/globalg.a.p.), 검색일: 2016.09.02.

²⁵⁹⁾ Global G.A.P. 홈페이지(http://www.globalgap.org/uk_en/for-producers/aquaculture/Aquaculture-Consumer-Label), 검색일: 2016.09.02.

²⁶⁰⁾ GGN 홈페이지(<http://www.ggn.org/de>), 검색일: 2016.09.02.

나. RFS 인증제도²⁶¹⁾

Seafish의 책임어업계획(Responsible Fishing Scheme ; RFS)는 자발적인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원들의 복지 기준과 책임 있는 어업 활동을 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종류의 어선과 어업에 대해서 인증을 한다. 독립적인 인증기관이 5가지 핵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핵심 분야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²⁶²⁾

- 안전, 건강 및 복지 : 선원들의 안전 및 작업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기준, 윤리적 사회 복지 기준 준수 여부
- 훈련 및 전문성 개발 : 안전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 훈련의 접근성, 기술 및 지식 증진 등
- 어선 및 어선의 규정 준수 여부 : 어선에 대해서 해당되는 규정(조업구역, 어획대상, 어구종류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는지 여부, 어선 및 어구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어업 관련 자발적 협정에 협조 및 동참 여부
- 어획 관리 : 품질, 위생적 취급 및 보관, 어획부터 양륙까지의 이력추적가능성, 책임 있는 어획 및 양륙, 수산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
- 환경에 대한 관심 : 환경에 대해 책임 있는 활동(해양쓰레기 관리, 폐어구 수거 등), 수산과학분야에 지원 등²⁶³⁾

다. IFFO RS 인증제도

IFFO(The International Fish Meal and Fish Oil Organization)은 사료와 피쉬오일 생산자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이다. 비전은 “최고의 영양을 통해 인류와 생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이다.²⁶⁴⁾ IFFO는 2010년도부터 IFFO

²⁶¹⁾ SeaFish RFS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rfs/index.php/about/about-rfs>), 검색일: 2016.09.02. ; SeaFish, The seafish guide to the responsible fishing scheme, 2015.

²⁶²⁾ SeaFish RFS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rfs/index.php/about/about-rfs>), 검색일: 2016.09.02.

²⁶³⁾ SeaFish RFS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rfs/index.php/about/about-rfs>), 검색일: 2016.09.02. ; SeaFish, 「The seafish guide to the responsible fishing scheme」, 2015, pp.2-3.

²⁶⁴⁾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standards/iffor-rs-certification>), 검색일: 2016.09.09.

RS(Responsible Supply of Fish Meal and Fish Oil ; 책임 있는 공급)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FFO RS 인증은 사료와 피쉬오일과 같은 기능식품의 주요 원료가 책임 있게 공급되고 생산되었는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IFFO RS 인증제도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 로고가 없으며 기업 간의 거래(Business to Business)를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이다.²⁶⁵⁾

IFFO RS의 인증 기준은 3가지의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임 있는 원료 공급, 책임 있는 생산 및 이력추적가능성, 국제기준 준수이다.²⁶⁶⁾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전체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IFFO RS는 이력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획에서부터 사료공장까지 전체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통관리와 관련하여 생산·유통·가공 경로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통·가공 시에 IFFO RS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고, 비(非)인증 제품과 분리되어야 하며, 유통 및 배포과정 전체에서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한다.²⁶⁷⁾

(2) 중간소비자의 생산·유통·가공 경로관리 참여

유통업체 등의 중간소비자는 유통과정에서 이력확보 및 생산·유통·가공 경로관리(Chain of Custody ; CoC)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생산·유통·가공 경로관리란 에코라벨을 부착한 제품이 실제로 인증된 어업에서 수산물을 조달하였는지를 보증하는 여러 수단을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공,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및 기록에 대한 추적을 포함한다.²⁶⁸⁾ 다수의 인증제도가 생산·유통·가공 경로관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SC는 MSC CoC 인증 제도의 운영을 통해 중간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이용하고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²⁶⁵⁾ IFFO, 「The IFFO global standard for responsible supply」, p.4.

²⁶⁶⁾ IFFO, 「The IFFO global standard for responsible supply」, p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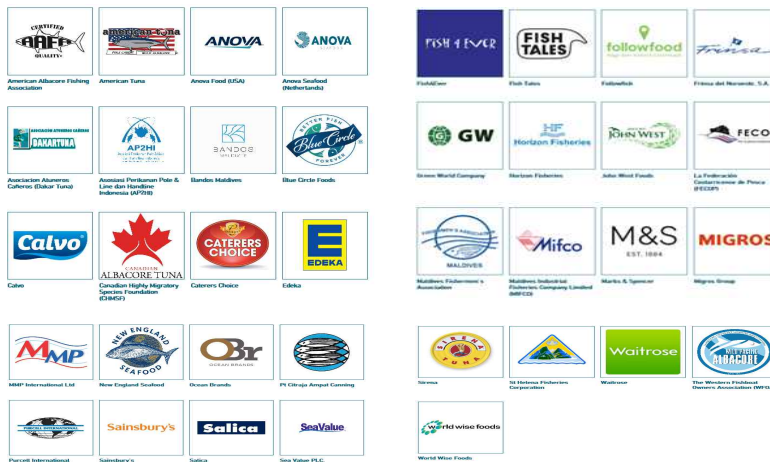
²⁶⁷⁾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standards/iffo-rs-certification>), 검색일: 2016.09.09.

²⁶⁸⁾ FAO,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evision1, 2009, p.4.

(3) 유통업체 및 IPNLF의 Pole and Line Caught 운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멸종위기에 놓인 참치를 채낚기(Pole and line)로 어획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각국의 유통업체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참치를 사회적·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채낚기²⁶⁹⁾어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2년에 국제적인 자선단체인 IPNLF (International Pole and line foundation)가 설립되었다.²⁷⁰⁾

〈그림 3-12〉 IPNLF 참여 멤버



자료: IPNLF 홈페이지(<http://ipnlf.org/who-we-are/members>), 검색일: 2016.09.01.

IPNLF는 연안어업과 관련된 어업인, 공동체, 사업체 등의 번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NLF는 채낚기어업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혜택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제적으로 채낚기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어업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²⁷¹⁾ IPNLF의 회원은 가공업자, 소매점, 유통업

269) 채낚기: Pole and line Caught, one by one caught

270) IPNLF 홈페이지(<http://ipnlf.org/who-we-are>), 검색일: 2016.09.01.

271) IPNLF 홈페이지(<http://ipnlf.org/what-we-do>), 검색일: 2016.09.01.

자 등의 중간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IPNLF의 회원이 된 중간소비자들은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채낚기어업을 지지하는 등 IPNLF의 핵심적인 업무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IPNLF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등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36개이며 위의 그림과 같다.²⁷²⁾

4) 기타사례

(1) 지속가능한 어업 관련 정보 제공

가. NOAA의 지속가능한 어업 관련 정보

NOAA(미 해양대기청)는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해서 수산자원상태 및 수산자원관리, 관련법 및 정책, 수산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NOAA는 수산자원상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지수(FSSI: Fish Stock Sustainability Index)’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⁷³⁾ 지속가능성지수는 상업적 어업 및 유어낚시에서 중요한 수산자원에 대해 매 분기 발표되며, 현재 199종에 대해서 발표되고 있다.²⁷⁴⁾ FSSI는 각 어종에 대해서 남획에 대한 정보 유무, 자원의 남획 상태, 자원량이 B_{MSY} 의 80% 이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000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FSSI 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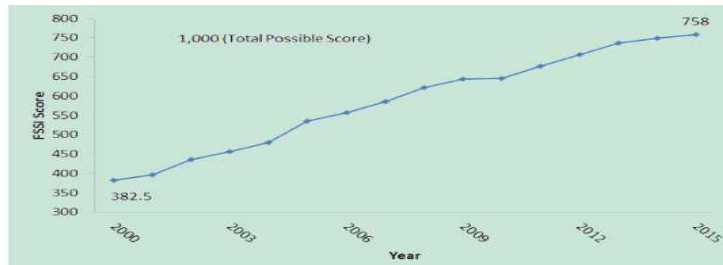
²⁷²⁾ IPNLF 홈페이지(<http://ipnlf.org/who-we-are/members>), 검색일: 2016.09.01.

²⁷³⁾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index.html), 검색일: 2016.09.02.

²⁷⁴⁾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fssi.html), 검색일: 2016.09.02.

²⁷⁵⁾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fssi.html), 검색일: 2016.09.02.

〈그림 3-13〉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지수(FSSI) 추이



자료: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fssi.html), 검색일: 2016.09.02.

또한 미국 전역의 수산자원 상태에 대해서도 매 분기 종합적인 자원상태(FSSI 및 비FSSI 어종), 자원상태 변화, 자원남획 지도 등을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⁷⁶⁾ 이를 통해 자원의 남획 정도 및 회복 정도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남획지도는 미국의 연안의 지역별로 과거에 남획되었던 어종과 현재 남획되고 있는 어종을 동시에 표시해 주고 있으며, 고도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도 남획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4〉 미국의 수산자원상태: 자원남획 지도



자료: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archive/2016/second/q2-2016-overfished-overfishing.pdf), 검색일: 2016.09.02.

²⁷⁶⁾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status_updates.html), 검색일: 2016.09.02.

NOAA는 자원상태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지수, 자원남획 지도와 같이 현재의 자원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현재의 자원상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관리 정보제공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NOAA의 자원남획지도와 지속가능성 지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나. NOAA의 Fish Watch 프로그램

NOAA는 Fish Watch U.S. Seafood Facts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의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⁷⁷⁾ Fish Watch는 해양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미국 수산물이 지속가능하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돕고 있다. Fish Watch에서는 미국에서 어획 및 양식되는 주요 어종(100여 종)에 대해서 개체 수, 어획 정도,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혼획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⁷⁸⁾

〈그림 3-15〉 Fish Watch 홈페이지



자료: Fish Watch 홈페이지(<http://www.fishwatch.gov>), 검색일: 2016.09.02.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물과 미국의 자원관리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수산

²⁷⁷⁾ FishWatch 홈페이지(<http://www.fishwatch.gov>), 검색일: 2016.09.02.

²⁷⁸⁾ FishWatch 홈페이지(<http://www.fishwatch.gov>), 검색일: 2016.09.02.

물 관련 주요 통계를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섭취와 관련해서도 수산물의 구매 및 보관방법, 수산물 검사, 수산물의 영양소, 레시피 등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 영국의 Seafish

Seafish는 1981년에 수산물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이익향상을 목적으로 영국 국회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Seafish는 수산업 관련 공급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의 산업(어획, 양식부터 가공·유통, 레스토랑, 소매점, 수입·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²⁷⁹⁾ Seafish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Interactive guide를 운영하고 있다.

Interactive guide는 수산물 인증제도의 라벨이 의미하는 안전성, 지속가능성, 복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²⁸⁰⁾ 필터를 통해서 인증제도의 분야에 따라 환경·어업, 사회복지, 식품안전, 동물복지 관련 인증제도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증제도의 대상이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산업 및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분류해서 볼 수 있다. 또한 각 인증제도에 대해서 인증대상(어로어업, 양식업), 관련 분야(환경 및 수산업, 사회복지, 식품안전, 동물복지), 특징(로고 존재 여부, 이력추적가능성, 가공업체 참여 여부), 준수 기준의 종류(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FAO 규정, FAO 양식인증기준, FAO 환경마크기준, 국제식품안전기준, 기타), 승인 및 평가기준²⁸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⁸²⁾

279) SeaFish, 「The seafish guide to the responsible fishing scheme」, 2015.

280)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interactive-guide#11>), 검색일: 2016.09.01.

281) 승인 및 평가기준은 IAF, ISEAL Alliance, CAB(ISO 65 Conformity Assessment), Accreditation Services International 중에 어떤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282)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interactive-guide#11>), 검색일: 2016.09.01.

(2) 환경분야 인증제도

EU Ecolabel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되는 환경마크제도로 모든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의 나라에서 통용되며 환경분야 인증 중에서 신뢰성 있는 인증 중의 하나이다. 소비자는 이 라벨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생애주기²⁸³⁾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⁴⁾ EU Ecolabel은 환경적 지속성에 대한 약속이며, 과학자들과 비정부기구, 이해당사자 등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들의 협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²⁸⁵⁾ EU Ecolabel 제도는 1992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에 2016년 3월 기준으로 제품 및 서비스 그룹 당 1,875개의 환경인증과, 36,403개 제품과 서비스 인증을 받았다.²⁸⁶⁾ 인증 신발제부터 페인트까지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제품을 포함한다.²⁸⁷⁾

그 밖에도 환경인증제도는 유럽연합, 일본, 중국, 대만, 북유럽, 독일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환경 관련 인증 지원제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에코마크(Eco-mark)는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라벨링제도로 일본의 「녹색구매법」을 근거로 하여 1989년에 도입되었다.²⁸⁸⁾ 일본은 녹색제품의 정부구매 및 정부조달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녹색구매네트워크(Green Purchasing Network ; GPN)를 통해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²⁸⁹⁾ 뉴질랜드는 환

283) 생애주기란 원자재료부터 상품의 제조와 사용에서 폐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함.

284) EU Ecolabel leaflet(<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documents/EU%20Ecolabel%20leaflet.pdf>), 검색일: 2016.04.28.

285) EC Environment 홈페이지(<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information-and-contacts.html>), 검색일: 2016.04.28.

286) EC Environment 홈페이지(<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facts-and-figures.html>), 검색일: 2016.04.28.

287) EU Ecolabel leaflet(<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documents/EU%20Ecolabel%20leaflet.pdf>), 검색일: 2016.04.28.

28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5&sMenu=1>), 검색일: 2016.04.28.

289) GPN 홈페이지(<http://www.gpn.jp/english/index.html>), 검색일: 2016.10.07.

경라벨(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 ECNZ)은 199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인 뉴질랜드 환경재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2005년에 정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증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²⁹⁰⁾

〈표 3-10〉 해외 환경 관련 인증제도 현황

국가	환경마크	운영기관	현황	로고
EU	에코라벨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2016년 3월 기준으로 제품 및 서비스 그룹 당 1,875개의 환경인증과, 36,403개 제품과 서비스 인증	
일본	에코마크	일본환경협회(JEA)	사무용품, 가구, 건축자재 등에 대한 57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5,300여개 제품 인증 유지	
뉴질랜드	환경라벨	뉴질랜드환경재단 (NZET)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9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여개 제품 인증 유지	
북유럽	노르딕 스완	노르딕 환경라벨링위원회(NMN)	사무기기, 가전제품, 자동차용품 등에 대한 60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6,000여개 제품 인증 유지	
미국	그린실	그린실(Green Seal)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31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3,900여개 제품 인증 유지	
독일	블루엔젤	연방환경청(UBA), RAL gGmbH	어린이용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120개 제품군, 12,000개 인증제품 유지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5&sMenu=1>)의 내용 정리 및 로고 이미지 차용, 검색일: 2016.04.28.

북유럽 5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은 노르딕 스완(Nordic Swan)이라는 환경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르딕 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의 결정에 따라 1989년에 노르딕 스완이 도입되었다. 노르딕 환경라벨링위원회(NMN)에서 대상품목 선정, 인증기준 설정 등 제

²⁹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5&sMenu=1>), 검색일: 2016.04.28.

도운영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NMN이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별로 지정된 인증기구에서 제품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²⁹¹⁾ 미국은 1989년 민간 비영리 기관인 그린실(Green Seal)에 의해 환경라벨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부, 학교 등과 협력하여 공공부문 및 산업계가 그린실 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²⁹²⁾

독일은 1978년에 세계 최초로 블루엔젤(Blue Angel)이라는 환경라벨링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에서 대상품목 선정 및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운영 관련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RAL gGmbH이다.²⁹³⁾ 블루엔젤은 1,500여 개의 기업을 통해 12,000여 개의 친환경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⁹⁴⁾

3.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일반현황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강화 및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6일에서 10일까지 5일간 전국의 만 20세~59세의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집단에 대한 직업 등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 표본 추출방법은 성·연령·시도별 인구비에 따른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친환경 수산물 인지 및 구매행태 관련 문항,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도입 관련 문항, 수산자원관리 법·제도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29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5&sMenu=1>), 검색일: 2016.04.28.

29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5&sMenu=1>), 검색일: 2016.04.28.

29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5&sMenu=1>), 검색일: 2016.04.28.

294) 블루엔젤 홈페이지(<https://www.blauer-engel.de/en/our-label-environment>), 검색일: 2016.04.28.

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258명(51.6%), 여자 242명(48.4%)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108명(21.6%), 30대 123명(24.6%), 40대 136명(27.2%), 50대 133명(26.6%)으로 골고루 분포하였다. 가구원수별 분포는 4인 이상(54.6%), 3인(25.6%), 2인(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수(명)	비율(%)
		500	100.0
권역별	서울	100	20.0
	인천/경기	155	31.0
	대전/세종/충청	49	9.8
	광주/전라	48	9.6
	대구/경북	49	9.8
	부산/울산/경남	77	15.4
	강원/제주	22	4.4
성별	남자	258	51.6
	여자	242	48.4
연령별	20대	108	21.6
	30대	123	24.6
	40대	136	27.2
	50대	133	26.6
가구원수별	1인	35	7.0
	2인	64	12.8
	3인	128	25.6
	4인 이상	273	54.6
학력별	고졸 이하	81	16.2
	대졸대학재학	366	73.2
	대학원졸대학원재학	53	10.6
소득별	100만원 미만	55	11.0
	100~199만원	71	14.2
	200~299만원	110	22.0
	300~399만원	95	19.0
	400~499만원	87	17.4
	500만 원 이상	82	16.4

2) 설문조사 결과

(1) 친환경 수산물 인지 및 구매 행태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및 구매 행태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가. 친환경 수산물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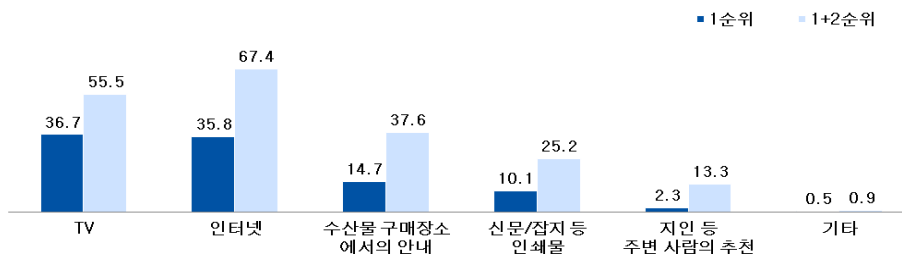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56.4%로 ‘들어본 적이 있다’(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6〉 친환경 수산물 인지 여부



친환경 수산물 인지 응답자(218명)를 대상으로 친환경 수산물 정보의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로 ‘TV’(36.7%)와 ‘인터넷’(35.8%)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는 TV에서, 남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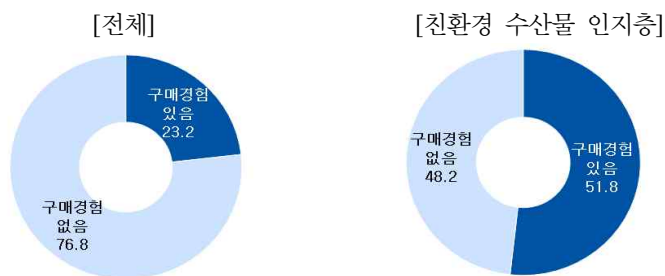
〈그림 3-17〉 친환경 수산물 정보의 인지 경로



나. 친환경 수산물 구매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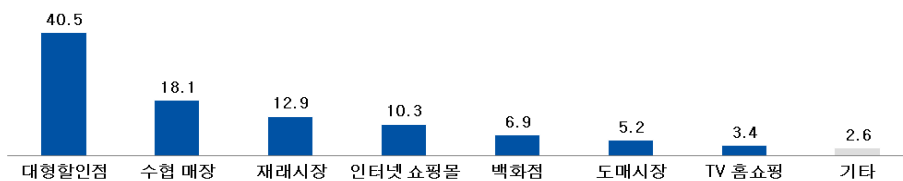
실제 친환경 수산물 구매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친환경 수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6.8%로 높게 나타났고, '구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2%로 나타났다.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218명)의 경우, 구매경험 비율이 51.8%(116명)로 나타나 친환경 수산물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과반수가 구매경험이 있었다.

〈그림 3-18〉 친환경 수산물 구매 경험



친환경 수산물 구매 경험자(n=116)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주로 구매하는 장소로는 '대형 할인점'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협 매장'(18.1%), '재래시장'(12.9%), '인터넷 쇼핑몰'(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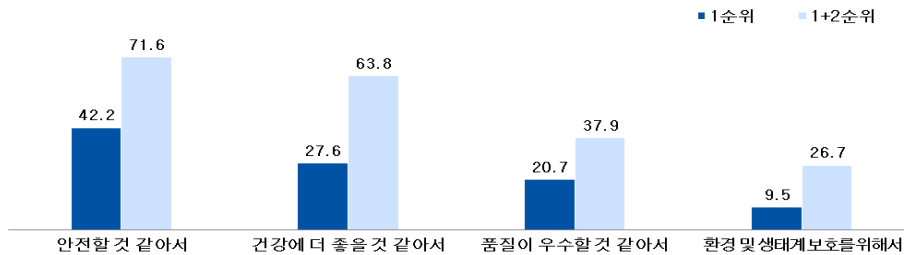
〈그림 3-19〉 친환경 수산물 구매 장소



친환경 수산물 구매 경험자(n=116)의 친환경 수산물 구매 이유로 '안전할 것 같아서'(42.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27.6%),

‘품질이 우수할 것 같아서’(20.7%) 등의 순이었다. 친환경 수산물 구매자는 주로 안전과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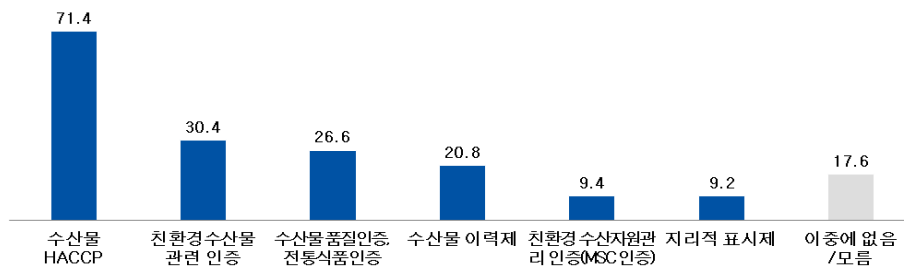
〈그림 3-20〉 친환경 수산물 구매 이유



다. 수산물관련 기존 인증제도 인지도

기존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 중에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인증제도로는 ‘수산물 HACCP’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환경수산물 관련 인증’(30.4%), ‘수산물 품질인증·전통식품 인증’(26.6%), ‘수산물 이력제’(20.8%)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소비자도 9.4%가 있었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인증제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1〉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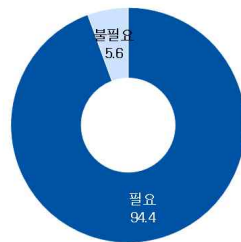


(2)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도입

가. 도입 필요성 및 활성화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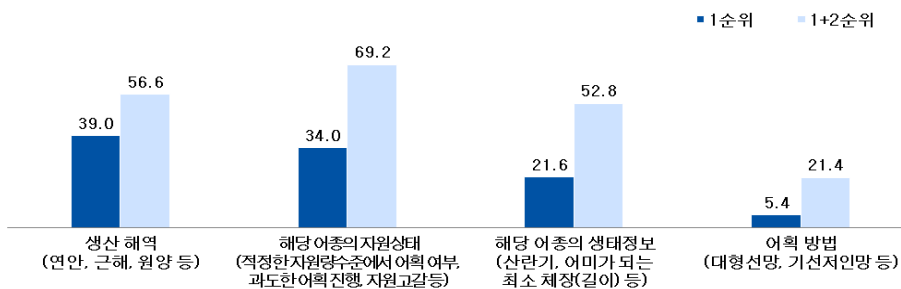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4%로 나타나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도입에 대해 일반 국민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산자원관리 인증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한 결과, ‘생산해역’(39.0%)과 ‘해당 어종의 자원상태’(34.0%), ‘해당 어종의 생태정보’(21.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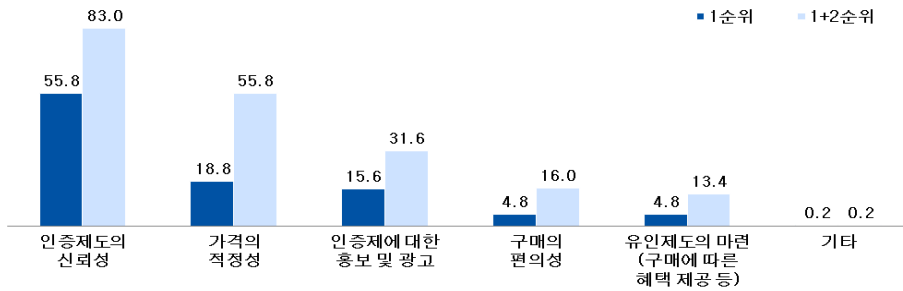
〈그림 3-23〉 친환경 인증제도 구매 관련 필요 정보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55.8%로 다른 요인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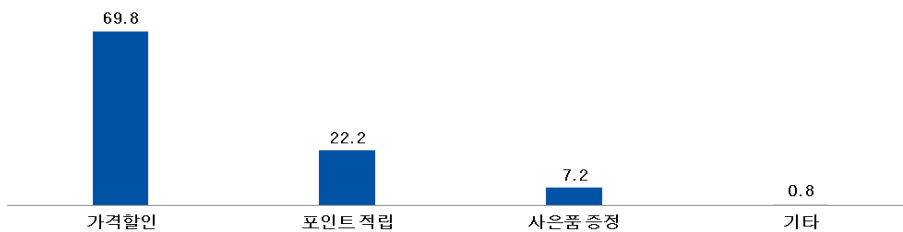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가격의 적정성(18.8%), 인증제에 대한 홍보 및 광고(15.6%)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 인증제도 제도 정착을 위한 중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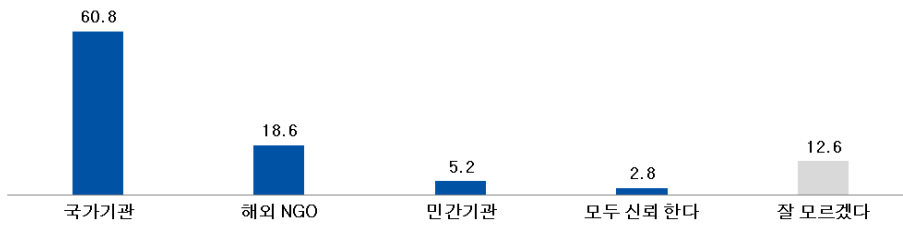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인책으로는 ‘가격 할인’(6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포인트 적립’이 22.2%로 나타나 인증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가격 관련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5〉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인책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인증할 기관으로 ‘국가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60.8%)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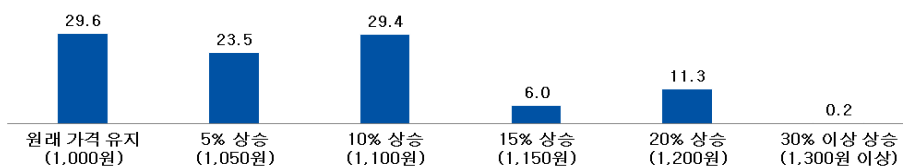
〈그림 3-26〉 인증제도 도입 시 신뢰하는 인증기관



나. 인증제도 도입 관련 구매의향 및 지불의사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다수의 응답자(93.8%)가 수산자원 관리 인증 수산물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2%만이 인증 수산물에 대한 구매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구매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증 수산물의 적정 가격을 조사한 결과, ‘원래 가격 유지’(29.6%), ‘10% 상승(1,100원)’(29.4%), ‘5% 상승(1,050원)’(23.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증 수산물의 구매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70.4%가 인증제 도입 후 5%의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해당 수산물에 대한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응답자 중 46.9%는 10%의 가격이 인상이 있는 경우에도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 수산물 지불의사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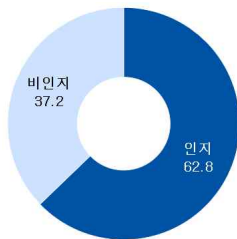
(3) 수산자원관리법 내 금지체장 규정

가. 금지체장 규정 인지

금지체장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지체장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체장 규정을 인지한 후에도 어린물고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8%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지 후에는 어린물고기에 대한 구매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8〉 금지체장 규정 인지 여부 및 구매의향

[금지체장 규정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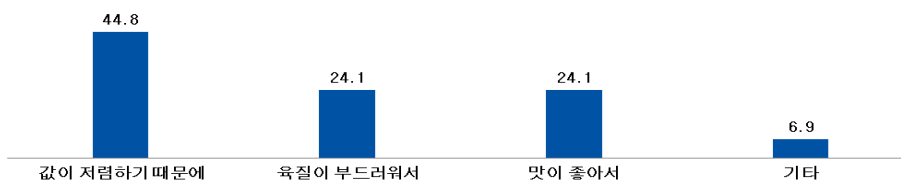


[금지체장 규정 인지 후 구매의향]



금지체장 규정을 인지한 후에도 어린물고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n=29)의 구매이유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44.8%), ‘육질이 부드러워서’(24.1%), ‘맛이 좋아서’(24.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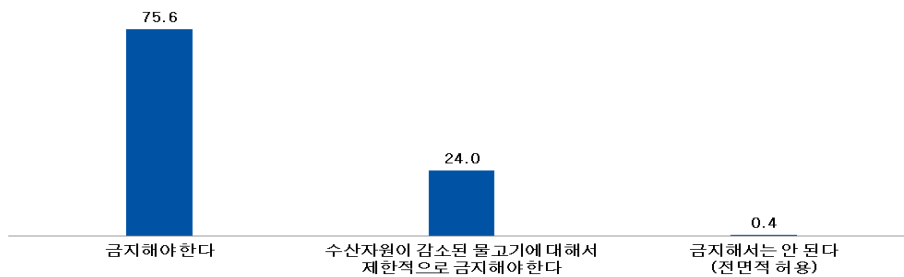
〈그림 3-29〉 어린물고기 구매 이유



나. 금지체장 규정 확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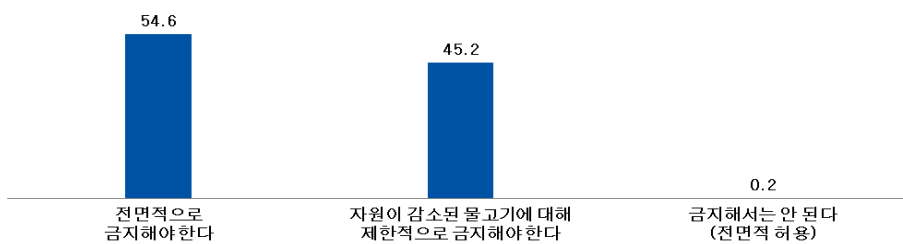
현재 ‘금지체장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에 대해서도 향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6%, 수산자원이 제한된 어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0%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지체장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총 9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0〉 금지체장 규정 확대에 대한 의견



향후 알배기 물고기(수산물)의 유통·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4.6%, ‘자원이 감소된 물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5.2%로 나타났다. 어린물고기의 금지체장 확대에 비해서 알배기 물고기에 대한 전면적 금지 의견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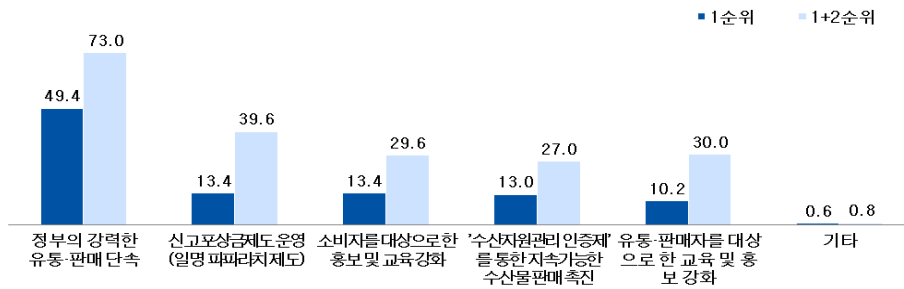
〈그림 3-31〉 알배기 물고기 유통·판매 금지 관련 의견



어린물고기 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4%가 ‘정부의 강력한 유통·판매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외의 ‘신

고포상금제도 운영'(13.4%),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13.4%), '수산자원 관리 인증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판매 촉진'(13.0%) 등은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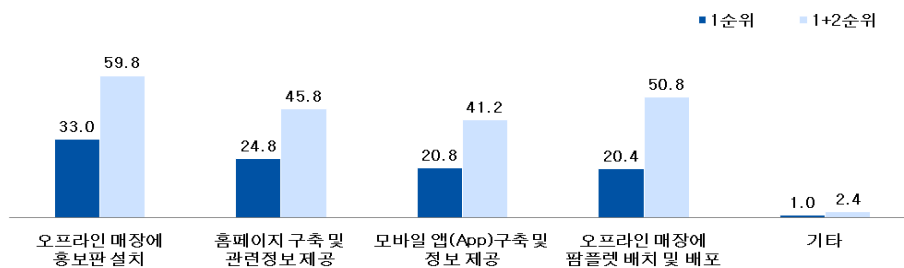
〈그림 3-32〉 어린물고기 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다. 수산자원관리 정보 제공 방식

수산자원 관리 상태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 홍보판 설치'(33.3%)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24.8%), '모바일 앱(App)구축 및 정보 제공'(20.8%), '오프라인 매장에 팸플릿 배치 및 배포'(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보 제공 방식



3) 조사결과와 함의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관련한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지만²⁹⁵⁾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수산자원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4.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반 소비자들이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제도 도입 시에 인증 수산물 구입의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93.8%가 구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참여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관리의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어린물고기에 대한 포획 및 유통을 금지하는 금지체장 규정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6%로 높았으며, 수산자원이 감소된 어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0%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금지체장 규정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알배기 물고기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대해서도 99.8%가 찬성(전면금지 및 제한적 금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의 도입여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공정무역제품 소비와 같이 제품의 품질, 가격 등의 요소 이외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소비를 하는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가능한 수산물’, ‘수산자원관리’, ‘해양생태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반영한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및 인증 수산물의 국내 도입 및 소비자 참여형 수산관리 정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²⁹⁵⁾ 수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는 9.4%로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4. 시사점

1) 국내 사례 시사점

국내 수산물 인증제도와 관련한 시사점은 첫째, 기존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는 수산물의 품질,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매우 협의적 의미의 ‘친환경’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지속가능한 수산물까지 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는 인증제도의 목적 및 취지와 운영방안 측면에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도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인증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환경마크제도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가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증제도의 목적이 매우 유사하며, 환경마크제도의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마크제도는 법률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관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구매제도는 인증제품의 시장기반 확보 및 지속적인 수요 창출 측면에서 인증제도의 정착 및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인증 수산물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한다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제품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인증제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소비자 인식 및 인지도 확대 등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에코머니 포인트제도, 녹색매장,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소비자의 제품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수산물의 구매 시 포인트와 같은 유인을 제공하며, 인증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지정·확대

하는 동시에 대형유통사와 제휴하여 보급한다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수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연계하기 위해 전시회 및 페스티벌 개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최근 공정무역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소비의 직접적인 효용이 아닌 사회, 환경 등의 가치를 고려한 소비라는 점에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수산물과 맥락을 같이하므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제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소이·박재홍(2012)의 결과를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에 적용해 본다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 및 교육·홍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소비자가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유통업체의 친환경배합사료 양식수산물 취급사례, 국내 가공·유통업체의 MSC CoC 인증 사례, 제주시의 Global G.A.P. 인증 사례를 보았을 때 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의 역할을 하는 중간소비자의 친환경 수산물 및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증제도의 취득 목적이 해외 진출 및 수출이 주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간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으며, 최종소비자에게도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착한 참치캔이 국내의 협동조합에 의해 최초로 생산되고, 소비자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재생산된 사례를 보았을 때, 지속가능한 수산물 및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간소비자 및 최종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질수록 수요와 공급에 따른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2) 해외 사례 시사점

해외에는 수산물 소비관련 소비자 운동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고려한 인증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방안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의 여러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운동을 통해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인식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다양한 참여 통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물의 최종소비자와 중간소비자(가공·유통업체) 및 산업(업체, 어업인) 등에 수산자원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통해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Seafood Choices Alliance와 Sea Web은 출판 및 시장조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업 및 수산물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산물 정상회담(Seafood Summit)을 개최하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소비를 위해 해외의 여러 단체들이 자원상태별로 수산물을 분류·등급화 하여 소비자의 수산물 선택을 추천해 주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현재의 자원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eafood Watch는 수산물을 최선의 선택, 좋은 대안, 소비자의 3가지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이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MCS는 1-5등급까지 5단계로 등급을 나누어 색깔과 함께 표기함으로써 자원상태가 양호한 수산물의 소비는 권장하고 그렇지 못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지속적 수산자원관리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운동이 산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속가능한 참치 어업을 위

해 채낚기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캠페인에 참치 가공·유통업체들이 참여하여 채낚기 참치어업이 확산되었다. 그린피스는 채낚기로 어획된 참치로 만들어진 ‘착한 참치캔’에 대한 순위를 책정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과도한 남획을 하는 기업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MSC 인증제도를 통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도입 시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MSC 인증제도는 소비자 및 생산자·산업, 가공·유통 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수산물 생산업체는 MSC 어업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공·유통업체는 MSC CoC인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MSC 인증을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다. 어업생산단계부터 가공·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인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 호텔, 패스트푸드점과 제휴·협약을 맺어 인증 수산물의 공급 및 소비를 늘리고,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인증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및 수산물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행위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수산물 및 현재 자원상태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미국의 NOAA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지수를 매 분기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자원남획지도를 통해서 해역별·어종별 자원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지수 및 자원남획지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의 자원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수산자원관리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서 소비자가 수산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방안

1. 목표 및 기본방향

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여건 변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여건 변화로서 대표적인 것들에는 첫째, 친환경 관련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둘째, 소비자 정보 공유 기반 강화, 셋째, 소비자 참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넷째, 환경규범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림 4-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여건변화



(1) 친환경 관련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 및 참여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과거에는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점차 소비자에게 무해 혹은 건강에 유익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유익을 넘어서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수준까지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상과 같은 인식의 변화는 바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확대
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인 MSC 인증을 부착
한 제품의 수는 2008년에는 불과 1천여 개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 7월에는 약
2만 개에 육박할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²⁹⁶⁾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인
식 변화를 감지한 Walmart, McDonald 등 세계적 유통기업 및 식품 관련 기업들
은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부착을 앞 다퉈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 밖
에도 소비자들은 Seafood Watch, Good Catch 등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관련
NGO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 및 건
강한 바다의 관리에 그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림 4-2〉 MSC 인증 후원 기업



자료: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roductory Training", MSC Training Program 발표자료, 2016.05.18.~20.

이상과 같은 변화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더 이상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수산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고, 일부 인증 획득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하는 에코머니 포인

²⁹⁶⁾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트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확산을 넘어 정착되는 것도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2) 소비자 정보 공유 기반 강화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 전제 조건으로 생산 관련 정보의 공유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수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가 접하기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산물의 생산에 관해 소비자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한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도 수산물의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적 변화가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몇 글자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해당 수산물의 생산 이력 및 자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림 4-3〉 수산자원관리 관련 스마트폰 앱 및 인터넷 제공 자료

[illegible]

자료: Seafood Watch 홈페이지(<http://www.seafoodwatch.org/>), 검색일: 2016.05.09.

더욱이 각종 친환경 인증 마크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관련 수산물의 자원관리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미비하지만 수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관련 전문 정보의 공유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한 시대에 이미 진입한 것이다.

(3) 소비자 참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산자원의 어획에 대한 관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산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크기는 수산자원의 상태, 좁게는 어미 물고기가 되기 위한 크기 또는 산란 시기 등의 기초적인 자원관리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년도 5월 이전만 하더라도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體長)도 정해지지 않았었다. 즉, 소비자가 ‘어린물고기를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라는 윤리적 소비 혹은 바른소비 운동에 동참하려고 해도 의사결정의 핵심적 기준인 어린물고기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의사결정 기준이 부재한 운동은 자원관리와 관련한 막연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4-4〉 어린물고기 어획 및 불매 관련 캠페인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 보도자료, “어린물고기 보호는 우리바다의 미래입니다”, 2016.05.25.

하지만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일부이지만 대중어종에 대한 포획금지체장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체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대중어종에 대한 체장제한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환경규범의 강화 및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의 규범화 경향

1995년에 FAO에서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CCRF)」이 만들어지고 2001년에 레이카비크선언이 이뤄진 이후 세계 수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어업’과 ‘생태계 기반 어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는 점차 강제성이 수반된 규범화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제26차 FAO 에코라벨링 소위원회에서 수산물의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것을 들 수 있다. 사실 가이드라인 채택 당시부터 수산자원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에코라벨링 자체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고, 가이드라인 자체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기술장벽화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²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수산자원관리 관련 NGO,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에코라벨링을 지속가능한 생산의 모델로 삼았고, 여기에 세계적인 유통기업, 식품 관련 기업, 호텔 체인 등이 동참하면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은 점차 기술장벽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MSC 인증 수산물의 대부분이 수산자원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한 선진국의 어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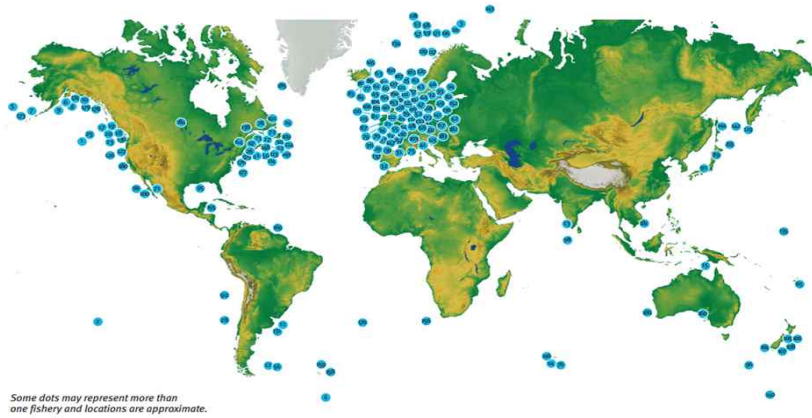
한편 최근 공개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중 환경규범에서는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금지를 규정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규범이 국가 간에 있어서도 강제적 구속력을 강화시킬 전망이다.²⁹⁸⁾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보다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진 생산단계에서의 자원관리만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 가면서 대

297) 동 회의에 필자가 참석하였으며, 당시의 청취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98) TPP협정문 환경규범 중 Article 20.16: Marine Capture Fisheries.

응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림 4-5〉 MSC 인증 획득 어업 관련 어장



자료: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roductory Training", MSC Training Program 발표자료, 2016.05.18.~20.

2) 목표 및 기본방향

이상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고 관련 여건 또한 필요성에 맞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필요성 및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수산자원관리의 향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산자원관리 자체가 어류 등 수산생물의 생애주기는 물론 해양 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고, 소비자 참여는 인식의 변화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 둘째,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셋째,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6〉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추진 목표



2.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참여 기반의 조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 기반 조성,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7〉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의 추진 전략



1) 법·제도적 기반 조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가 수산물에 대한 소비 선택권을 바탕으로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여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수산물의 관리 및 생

산과 관련된 법·제도에 있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동법은 현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역으로 생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근거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동법 제2조의 정의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정의를 규정하고, 타 조항 및 하위 법령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물의 관리 및 생산과 관련된 법·제도에 있어서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에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 및 기간이 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잡아서 안 되는 물고기의 크기나 시기 등의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소비자는 사서는 안 되는 불법어획물 혹은 윤리적으로 보호해야 할 어종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정보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소비 선택권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의 대상어종은 어류 26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2종으로 총 39종이다. 하지만 2015년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량 상위 10대 어종²⁹⁹⁾ 중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의 대상이 되는 어종은 고등어, 살오징어, 갈치, 참조기 4개 어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4개 어종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5월 1일에 새로이 포획금지 체장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어종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할 어린물고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형성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소비 선택권을 보다 용이하게 발휘하여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어종에 대한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 및 기간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 및 기간은 해당 수산자원의 고갈 등에 관한

299)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량 중 상위 10대 어종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1%임.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 및 기간은 수산자원량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종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상태가 심각한 고갈상태에 있는 어종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자원량 수준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하위 법령 관련 규정에 매년 보호되어야 할 어종을 지정토록 하여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가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수산물 혹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소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해서도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녹색제품’에 ‘지속가능 수산물(어획물)’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법 제2조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유기농수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의미한다.³⁰⁰⁾ 그리고 친환경 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다.³⁰¹⁾ 자연산 수산물은 당연히 유기 농수산물로서 상기 규정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로 보이지만 해석상 불명확하다. 따라서 ‘지속가능 어획물’에 대한 규정의 삽입 등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0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4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 5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와 「외식산업 진흥법」 제16조에서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속가능 수산물’ 혹은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을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상기 규정을 보완하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해서 대량급식 및 군납 등 공공부문에서 친환경 수산자원관리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기반 조성 관련 정책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법·제도적 기반 조성 관련 정책방안

구분	개선방안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 규정 ○ 개선내용: - 제2조의 정의에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정의 규정 - 타 규정에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소비자 의사결정 기준 마련	○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 개선내용: -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체중 확대 - 자원상태 심각하여 소비자 참여 절실한 품종 지정
‘지속가능 수산물(어획물)’의 소비 촉진	○ 관련 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비 관련 법령 ○ 개선내용: - ‘지속가능 수산물(어획물)’이 녹색제품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과 같이 ‘지속가능 수산물(어획물)’ 소비 촉진 - 녹색매장, 녹색장터 및 그린카드 쇼핑몰의 이용 연계
대량급식 및 군납 등 공공부문 활용	○ 관련 법령: 「식품산업법」, 「외식산업 진흥법」 등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개선내용: - 공공부문에서 대량으로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 수산물 소비 촉진
기타 소비 촉진	○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산물 페스티벌 개최

2) 사회적 기반 조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육성과

같은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³⁰²⁾ 동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서,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³⁰³⁾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단체적 소비 선택권을 바탕으로 개별적 선택권에 비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제6조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을 규정하고 있다.³⁰⁴⁾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수산 선진국에서는 Seafood Choices Alliance, Friends of the Sea 등과 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단체가 결성되어 국제적 NGO로 성장한 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타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바다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비자 영향력을 조직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등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여러 소비자단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산물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속가능 수산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집단적 영

302) 「소비자기본법」 제2조.

303) 「소비자기본법」 제4조.

304) 「소비자기본법」 제6조.

향력의 행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우호적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산자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 단체가 국가에 의해 구축한 수산자원 정보시스템상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자체 홈페이지의 개선 및 캠페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교육 및 홍보 강화

교육 및 홍보는 일반적으로 간접적이긴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정책적 대안이다. 또한 개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 그리고 개인행동이 아닌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같이 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후세대에 대한 배려 등 ‘강제’보다는 ‘윤리’와 ‘자발적 참여’가 핵심적 내용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산물의 소비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개인의 소비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소비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 및 홍보의 역할이 지대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 언급한 삭스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에서는 삭스핀에 대한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중국 19개 방송국에서 2013년에만 “(삭스핀을)거래하지 않으면, (상어)살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공익 광고를 약 3,000여 회 내보냈고, 이후 광둥성에서의 삭스핀 거래가 무려 82%가 감소하였다.³⁰⁵⁾³⁰⁶⁾ 물론 정부의 반부패 운동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

³⁰⁵⁾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9/2014080900159.html), “중의 '反부패' 덕에... 지느러미 걱정 줄어든 상어들”, 검색일: 2016.05.03.

³⁰⁶⁾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9/2014080900159.html), “중의 '反부패' 덕에... 지느러미 걱정 줄어든 상어들”, 검색일: 2016.05.03.

한편 삭스핀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배치되는 소비문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배기’와 일명 ‘세꼬시(뼈째 찢어 먹는 회)’이다. 이러한 부정적 소비문화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알을 낳아야 할 포란어와 자라지도 않은 어린물고기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는 수산자원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이며, 미래세대로부터의 자원 착취라는 사고가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가 국내외적으로 점차 소비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의 확대는 더욱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이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은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소비자의 책무에서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소비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³⁰⁷⁾ 또한 동법 제1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⁰⁸⁾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및 홍보 관련 정책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7) 「소비자기본법」 제5조.

308) 「소비자기본법」 제14조.

〈표 4-2〉 교육 및 홍보 관련 정책방안

구 분	정책방안
교육·홍보	○ 수산물의 윤리적 소비 운동의 전개 - 어린물고기 불매운동의 전개 - 세꼬시, 알배기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지속가능 수산물의 거래 및 소비에 대한 홍보 -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TV, 인터넷, 모바일 앱, 소비자단체 등 연계) - 수산물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수산물의 대량거래 장소에 팸플릿 배포 및 입간판 설치 ○ 지속가능한 소비(윤리적 소비) 관련 교육 강화 - 어린이 대상으로 지속가능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교육 실시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유통기업 수산물 구매자 교육

3.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도입,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 소비자·생산자 참여 촉진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개발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8〉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관련 추진 전략



1)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도입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소비 선택권 행사는 구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시장형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구매하는 수산물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인지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혹은 수산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중 MSC 인증은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국제인증과 한국형 인증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국제인증은 국내의 수산자원관리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획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하지만 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하여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제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원양어업부터 연근해어업으로의 순차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TPP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수산자원관리 또한 강화되는 환경규범에 대응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과 관련된 인증제 도입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도입을 국제인증과 한국형 인증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 국제인증의 도입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에 있어서 국제인증의 도입은 MSC 인증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인증 수산물 거래 및 가입자 수가 많으며 수산자원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과 관련하여 국제인증의 도입은 크게 수산자원관리와 판매 확대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판매 확대는 인증 부착을 통해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만을 구매하는 유통기업 및 호텔 등에 판매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 수산물의 판매 확대는 점차 비관세 장벽화 경향을 보이는 세계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수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수출 수산물 특히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경우,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획득은 매우 중요하며, 국내 인증보다는 국제인증의 획득이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Global G.A.P.를 들 수 있다. 세계적인 인지도 측면에 있어서 Korea G.A.P.보다는 Global G.A.P.가 수출 확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은 Global G.A.P.의 획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산물은 원양산과 양식산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확대 측면에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은 연근해어업 생산자에게는 아직까지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연근해 수산물 중 대표적인 대종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MSC 인증이 가장 많이 발급된 어종 중 하나이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어종이다. 비단 수출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입지한 다국적 기업들이나 호텔 체인을 선두로 MSC 인증 수산물만 취급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³⁰⁹⁾ 그리고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마저 국내 인증보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제인증의 부착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출이 아니라 국내에서마저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부착 없이는 판로 위축 및 판매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서도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중에서 MSC 인증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인지도와 함께 인증 수산물 거래 및 가입자 수가 많은 상황이다. 사실 FAO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자체도 MSC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굳이 국제적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을 도

309) 2016년 6월 1일 MSC 본사의 평가 및 인증 담당자인 Emily McGregor와의 면담조사에 의해 취득된 내용임.

입한다고 하면 MSC 인증의 도입이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 및 판매 확대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MSC 인증은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이다. 따라서 동 인증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가 기본 목적이며, 수출과 연계성이 낮은 어종에 있어서는 동 목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산 관련 공무원 및 생산자들 중 많은 수가 동 인증을 단순히 프리미엄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나 생산자들은 해당 어종의 자원수준이 MSC 인증의 획득과는 거리가 먼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확대 목적에서 MSC에 인증 획득을 문의하고 있다.

MSC 인증의 획득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 및 요건은 제3장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는 크게 선별, 준비, 채점, 평가, 사후관리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9〉 MSC 인증의 어업 평가 절차



자료: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roductory Training", MSC Training Program 발표자료, 2016.05.18.~20.

우선 인증의 고객인 어업인 단체 등은 평가의 진행과 관련하여 사전평가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본 평가로 바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후

준비단계에서는 평가를 위한 평가내용, 평가팀, 평가체계, 현장 방문, 전문가 리스트 등에 대해 공지한다. 다음의 채점단계는 현장 방문 및 채점이 이뤄지는 단계이다. 이후 평가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 의뢰, 고객 검토, 전문가 검토, 리포트 작성, 이의제기, 인증 여부 결정이 이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이 이뤄진 이후에는 매년 재평가를 통해서 해당 어업이 인증 기준에서 이탈하였는가를 재검토하여 인증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³¹⁰⁾

이상과 같이 MSC 인증 방법은 비교적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상 여러 가지 비용의 발생을 수반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가 현장 방문 및 평가 의뢰, 보고서 작성 등에 최소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인증 이후에도 매년 판매금액의 0.2%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³¹¹⁾ 더욱이 고갈 및 남획 등 수산자원의 상태와 관련 어업의 구조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자원회복 및 관련 구조의 개선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인증의 획득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어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결국은 어업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업인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으로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자원 관련 정보 제공 및 인증 과정상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 특히 상기 인증은 수산자원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해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일정 정도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자원상태가 인증 기준에 미흡할 경우, 어업인에게 향후 자원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거나 이전보다는 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정부와의 협력적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동 과정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지도 및 자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³¹⁰⁾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roductory Training", MSC Training Program 발표자료, 2016.05.18.~20.

³¹¹⁾ 2016년 5월 20일 Control Union의 평가 및 인증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조사에 의해 취득된 내용임.

(2)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국가마다 상이한 환경과 관리목표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제인증은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힘든 단점을 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국제인증의 획득에 대한 시각은 주로 판로확대 및 수출에 초점이 모여 있다. 하지만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대부분이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수출 상위 수산물은 김, 참치, 굴 등 대부분 원양산 혹은 양식산이다.³¹²⁾ 따라서 ‘소비자’가 수입국의 ‘소비자’인 점과 생산자가 수출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참여도 저하 및 국제인증을 통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인증의 복잡성 및 인증 획득 절차상의 높은 비용 발생, 한국적 현실에 대한 고려 미흡 등으로 국제인증에 의한 연근해 수산자원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수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협력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합 및 마찰을 넘어 불법적 조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수산자원 관련 정보의 공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업관리 시스템과 어업인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연근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MSC와 같은 인증제 운영기관 및 인증 관리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는 인증 기준 마련,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련 어업의 평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인증제의 운영 및 인증 발급, 어업인 자문 및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³¹²⁾ 수산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fips.go.kr/jsp/dp/pr/pr_kind_list.jsp?menuDepth=0 40302) 검색일: 2016.10.03.

〈표 4-3〉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관련 역할 분담

구분	인증 명칭(안) 및 역할
인증명(가안)	녹색수산물(Green-K-fish), 황금바다(Golden Sea), 착한어업인증(Green Catch 또는 Greenfishing) 등의 인증
중앙정부	어업별 인증과 연계한 수산자원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사업 예산 수립 및 확보, 어업인 지원방안 수립
국립수산물과학원	인증기준 마련, 수산자원 및 관련 어업의 심사·평가, 수산자원 및 어업의 개선방안 권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증 신청 접수 및 심사·평가 관련 제반 사항 운영, 인증 발급, 수산자원 조성 관련 권고, 어업 모니터링, 어업인 자문 및 지원

2)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리포팅은 주로 불법어획물에 대한 신고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 즉 불법어획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혹은 수산자원관리 소비자 옴부즈맨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특히 단속이 힘든 재래시장 및 소규모 판매점을 중심으로 시민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행정규칙(고시)으로 2009년 8월에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수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법어업 행위 또는 불법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³¹³⁾ 이후 동 규정은 2010년에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과 하위 명령 위반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그 명칭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자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13)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하지만 상기 규정은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토록 되어 있어서, 불법어획물 신고포상금제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 규정 제3조의 2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내지 제67조의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불법어획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그 효과성이 입증된 제도이다. 하지만 공익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돈벌이’나 사인에 의한 감시의 불쾌감 및 거부감, 혹은 정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확대가 어려운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자리 잡는 초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고포상금 이외에도 소비자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소비자 옴브즈만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자원과 관련된 소비자단체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는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소비자단체 또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상기 제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소비자·생산자 참여 촉진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에 소비자나 생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촉진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의 개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의 인증에 있어서 소비자나 생산자의 참여 유인이 타 인증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기농 인증과 같은 품질인증의 경우는 소비와 함께 그 혜택이 즉각적으로 소비자에 돌아가지만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직접적인 혜택은 소비자가 아니라 수산자원이라는 점이다. 즉 수산자원의 증가가 직접적인 혜택인 것이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증가는 하와이 주민의 북극곰 살리기 운동 등 환경 및 생태계 보호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어종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수산자원이 증가하면 결국 생산자인 어업인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공급 증가로 인해 해당 어종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종 혜택은 결국 소비자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더욱이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가 국제사회에서는 점차 규범화 경향마저 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초기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소비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행동의 주체인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인센티브로는 ‘에코머니’와 같은 환경포인트 적립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환경마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에코머니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에코머니 제휴 매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는 제품 구매 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³¹⁴⁾

더욱이 이러한 제도는 이미 수산물을 취급하는 국내의 여러 대형마트에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포인트의 적립 또한 지속가능 수산물과의 연계가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또는 해당 수산물 등과 연계하여 환경포인트 적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14)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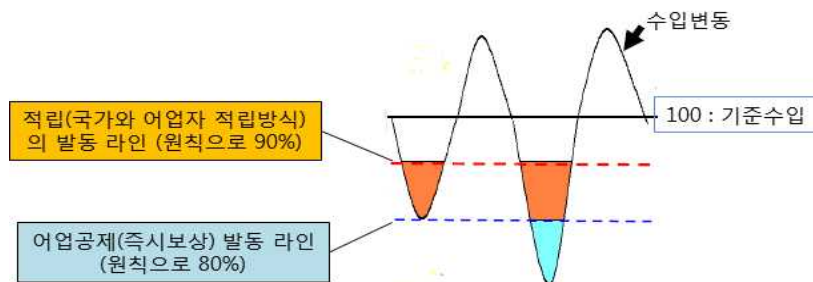
〈그림 4-10〉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사례



자료: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p.8, p.20.

한편, 생산자와 관련한 참여 유인책으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직불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휴어제에 대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농업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친환경 직불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WTO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속가능 직불제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획노력량을 삭감하는 경우,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함으로써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그림 4-11〉 자원관리 관련 어업소득 보상대책



자료: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http://www.jfa.maff.go.jp/j/kikaku/syotoku_hosyo/pdf/souron3.pdf), 검색일: 2016.12.27.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어업인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여 어획노력량을 삭감하고 이로 인해 단기적인 어업소득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직불제를 통해서 이를 보전하는 것이 어업인의 참여를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4)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개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의 자원상태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참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하는 세계의 여러 소비자단체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수산자원 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수산자원 경보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는 신호등 시스템이다. 즉 신호등의 적색, 황색, 녹색은 안전단계, 경계단계, 위험단계에 대해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각적 정보 전달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러한 수산자원 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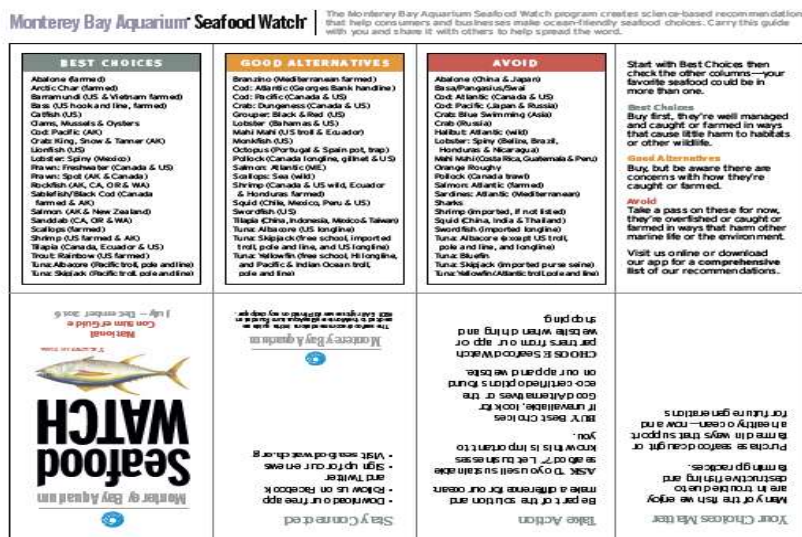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MCS(Marine Conservation Society)와 미국의 Seafood Watch는 이상의 신호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종별 자원관리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Seafood Watch는 적색에는 "AVOID", 황색에는 "GOOD ALTERNATIVES", 청색에는 "BEST CHOICES"라는 문구를 붙여서 소비자가 선택을 회피하거나, 올바른 선택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적색은 문자보다 시각적으로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³¹⁵⁾

한편, 이러한 경보 시스템은 소비자단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색상 이면에는 수산자원의 상황과 관리방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산자원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어종별 경보

³¹⁵⁾ Seafood Watch 홈페이지(<https://www.seafoodwatch.org/-/m/sfw/pdf/guides/mba-seafoodwatch-national-guide.pdf>) 검색일: 2016.09.23.

시스템에 필요한 색상 분류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공적인 기관에서 제공한다.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어종별로 자원상태와 연계하여 색상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단체에 전달한 후, 각 소비자단체는 독자적으로 구축된 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4-12〉 Seafood Watch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자료: Seafood Watch 홈페이지(<https://www.seafoodwatch.org/-/m/sfw/pdf/guides/mba-seafoodwatch-national-guide.pdf>) 검색일: 2016.09.23.

4.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

소비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이외에도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운영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13〉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 관련 추진 전략



1)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촉진을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및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공유를 위해서 ‘(가칭)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시스템은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어종에 대한 자원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 관련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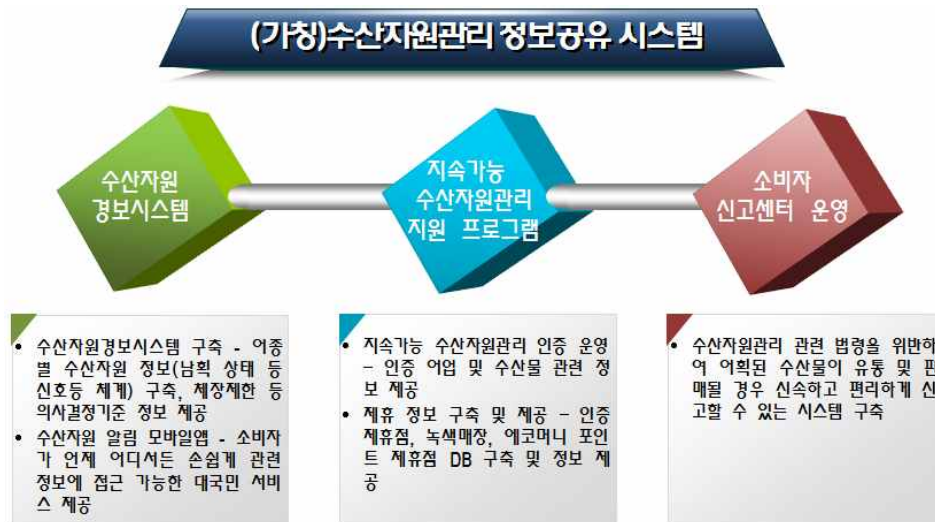
따라서 앞서 제시한 수산자원의 상황을 알려주는 수산자원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정보공유 시스템의 하부에 탑재된 세부 기능이 된다. 또한 동 시스템은 어린물고기 관련 정보, 산란기 관련 정보, 지속가능 인증 관련 정보, 녹색매장, 에코머니 포인트 제휴점, 지속가능 수산물 페스티벌 등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바일 앱의 운영, 소비자 신고센터의 운영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동 시스템 내에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동 시스템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수산자원 알림 모바일 앱³¹⁶⁾ 등의 개발과 병행하여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관련 정보에 접

³¹⁶⁾ 어린물고기 지킴이 등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 구성.

근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 신고센터는 수산자원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어획된 수산물이 유통 및 판매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4-14〉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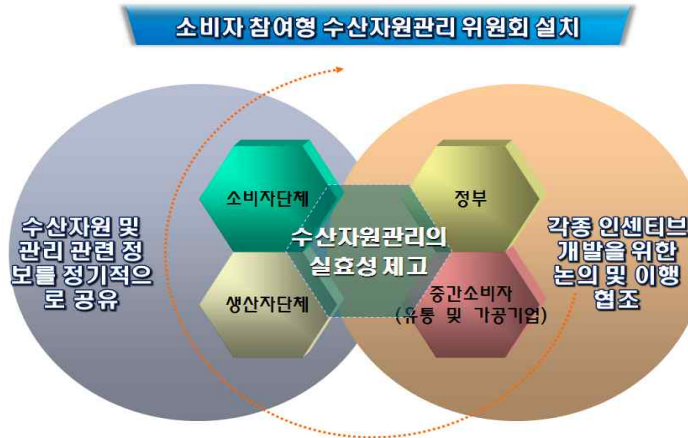


2)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의 설치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는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정부, 중간소비자(유통 및 가공기업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및 관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각종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및 적용 관련 협력,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도입 및 환경포인트 적립제의 활성화 등 각종 인센티브의 개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에게 실효적 이행협조를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4-15〉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의 설치



3)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전담 기관의 운영

일반적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생겨난 조직에 근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활동적인 소비자단체가 부재한 경우,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일정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전담기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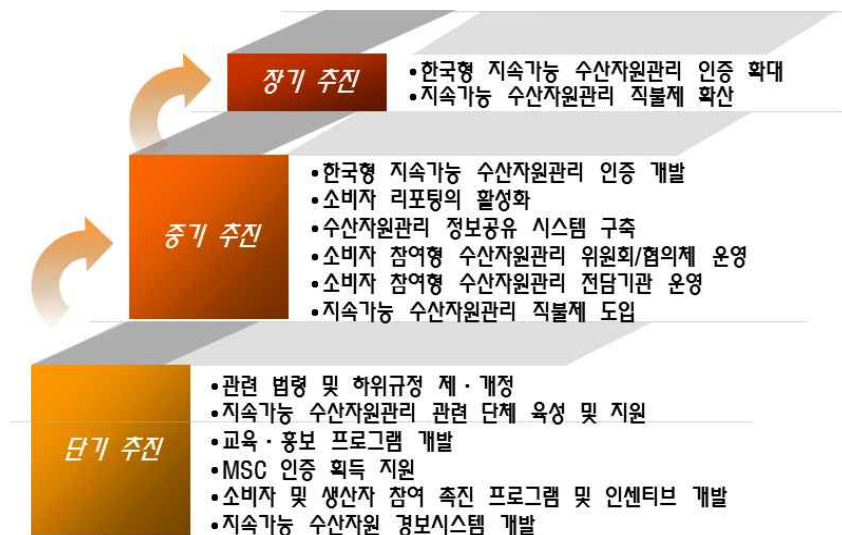
일례로 ‘(가칭)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협약 체결 촉진’을 들 수 있다. 즉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을 획득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통 및 가공기업,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업인 단체와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어업인 단체가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해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 및 가공기업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전담 기관은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소비자 신고 대응센터 운영,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1) 정책 추진 로드맵

소비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진전략 중 주요 정책별로 단계를 설정한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6〉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여기서 추진 단계는 시급성 및 추진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였다. 따라서 단기 추진에 속한 전략 및 정책이 반드시 단기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그리고 추진 시기는 단기의 경우 2017~2018년, 중기는 2019~2021년, 장기는 2022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급하거나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여건 개선 관련 정책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제·개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MSC 인증 획득 지원, 소비자

및 생산자 참여 촉진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 지속가능 수산자원 정보시스템 개발이 포함된다.

중기 추진정책은 시급성은 있으나 추진여건이 단기에서 개선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개발,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협의체 운영,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전담기관 운영,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직불제 도입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장기 추진정책은 시급성이 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추진여건의 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확대,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직불제 확산이 포함된다.

2) 기대효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방향 내에서 추진전략별 정책이 원활하게 달성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는 실효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선진적 수산자원관리에 상당히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2장에서 밝힌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필요성이 충족됨은 물론 산업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강화라는 수산분야에서의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및 산업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업계 및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는 생산단계 중심에서 비롯된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율관리어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이 개선되면 수산자원관리에 소모되는 방대한 감시·감독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인원, 물적 인프라 등의 감축 및 절

약이 기대된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강화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 증대 및 어업소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어업 생산의 활성화는 수산물 유통 및 가공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수출 또한 확대되면서 국민의 수산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자유어업, 정부규제, 협동적 관리를 거쳐 제4세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생산자 관리의 유인 취약성과 정부 관리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즉, 기존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더 이상 수산자원의 감소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의 위기의식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규제 및 자원조성사업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제도와 자율관리어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국내의 타 분야 사례 및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진한 주요 내용 및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내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기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MSC 인증에 편중한 것에 비해 다양한 방안의 검토를 통해서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크게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 적응, 생산단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제도에 대한 보완, 자율관리어업의 한계 극복, 소비자 인식의 변화 필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도입여건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사례로서 수산물 인증 관련 사례, 타 분야의 인증 사례, 윤리적 소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가 생산 및 수산자원관리 등에 참여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로서는 Seafood Choices Alliance, MSC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수산물 소비운동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구매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수산자원의 상태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별로 구분하고,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 가이드를 제작·홍보하며,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사례 등은 우리나라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도입여건 중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한 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정책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수산자원관리 인증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94.4%가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그리고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기관에 의한 운영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수산물

에 대해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적정가격을 조사한 결과, 5-10%의 가격상승이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가격의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을 기대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우선 관련 여건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에는 첫째,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관련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둘째, 소비자 정보 공유 기반 강화, 셋째, 소비자 참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넷째, 환경규범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 및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수산자원관리의 향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 둘째,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셋째,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편 기본방향별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의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 기반 조성,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도입,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 소비자·생산자 참여 촉진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개발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 설치,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전담 기관 운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내용과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방안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및 참여 촉진 수단의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2. 정책 제언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우리나라에 보다 체계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제4장에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및 참여 촉진수단의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지원에 대해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5-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1)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1) 관련 법령 개선

수산자원관리 관련 소비자단체 및 NGO의 활동이 왕성한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수산자원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할 정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체계적

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를 관장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2조는 정의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정의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활성화화를 위해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실시 및 활성화화를 위한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수산자원의 상태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가 수산자원의 상태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원활히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 중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산자원관리 관련 하위규정에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의 대부분은 어린물고기의 보호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어느 정도 크기까지를 어린물고기로 봐야할지 모르고 있다. 심지어 어업인조차 얼마까지 크면 성어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금지 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등과 같은 대중적인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이 금년도 5월에 들어서나 시행되었고, 아직까지도 수산자원의 회복이 필요한 여러 어종에서 포획금지 체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가 어획 및 구매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포획금지 체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부적절한 체장에 대해서는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지속 불가능 수산물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해서 구매를 촉진하고 지속 불가능 수산물의 소비가 억제될 수 있도록 ‘녹색제품’에 ‘지속가능 수산물(어획물)’이 포함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농수산물’에 지속가능 수산물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관리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이 대량급식 및 군납 등 공공부문에서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식품산업법」 및 「외식산업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2)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소비자에게 수산자원의 상태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과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 중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경우, 국제인증과 관련해서는 MSC와 같이 정부보다는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관련 NGO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증의 경우, 정부는 업종별 어업인 협회 및 수협 등 어업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국제인증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에는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자원 관련 정보 제공, 인증 과정상의 협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자원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자원상태가 인증 기준에 미흡할 경우, 어업인은 물론 정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자원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인증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연근해 수산자원을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후 개발된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업별 인증과 연계한 수산자원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사업 예산 수립 및 확보,

어업인 지원방안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는 인증 기준 마련, 수산자원 및 관련 어업의 심사·평가, 수산자원 및 어업의 개선방안 권고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인증 신청 접수 및 심사·평가 관련 제반 사항 운영, 인증 발급, 수산자원 조성 관련 권고, 어업 모니터링, 어업인 자문 및 지원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의 생산 및 자원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DB화하여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와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내에는 수산자원 정보시스템, 어린물고기 관련 정보, 산란기 관련 정보, 지속가능 인증 관련 정보, 녹색매장, 에코머니 포인트 제휴점, 소비자 신고센터의 운영, 모바일 앱의 운영 등의 하부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의 운영은 물론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2) 교육·홍보 및 참여 촉진 수단의 개발

(1)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교육 및 홍보는 간접적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정책으로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특히 소비자의 윤리 및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교육 및 홍보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더욱이 개인의 단기적 소비가 아니라 소비문화와 연계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삭스핀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방송국에서는 2013년에만 약 3천여 회의 공익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³¹⁷⁾

우리나라의 경우, ‘알배기’와 ‘세꼬시(뼈째 찢어 먹는 회)’는 수산자원의 지

³¹⁷⁾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9/2014080900159.html), “중의 '反부패' 덕에... 지느러미 걱정 줄어든 상어들”, 검색일: 2016.05.03.

속가능성에 위배되는 부정적인 소비문화이다. 이러한 소비문화는 제도 및 정책을 통해 강제로 변화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어린물고기 불매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엄청난 규모로 물고기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알배기’와 ‘세꼬시’ 문화 그리고 어린물고기를 어획하는 관행이 사라진다면 이러한 고비용의 방류는 그 역할이 상당 부문 축소되거나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한편,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시장 인근에 배치된 홍보용 책자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수산시장에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소책자 배포,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유통기업 수산물 구매자 교육, 초등학교 등에서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이 필요하다.

(2) 참여 촉진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자발적 참여에 근간한다. 따라서 참여 촉진 정책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데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하여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산자와 관련한 참여 유인책으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직불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수산자원관리법」에 휴어제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MSC 인증과 같이 국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이 MSY(최대지속가능생산량)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량 수준까지 증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획노력량의 삭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생산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기 직불제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에코머니’ 등의 환경포인트 적립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환경부는 환경마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에코머니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

수산물과의 연계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 운동 등은 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또는 환경운동단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단체에 인터넷 교육 및 홍보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추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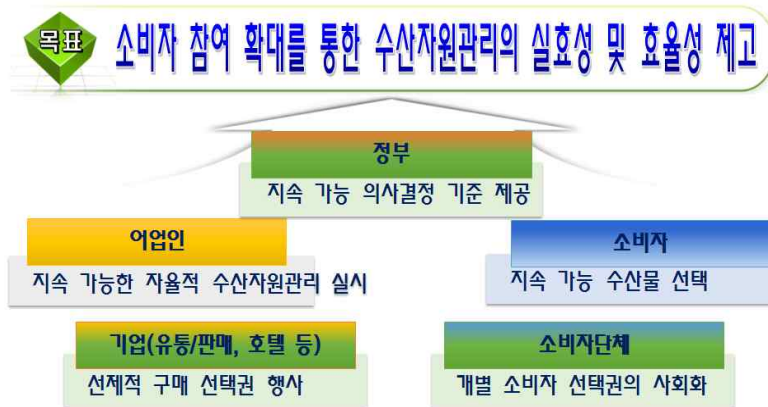
3) 역할 분담 및 재정 지원

(1)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제1세대부터 제3세대 수산자원관리에서 나타나는 관리 부재, 일방적 상명하달(top-down) 혹은 모니터링 없는 상향식(bottom-up) 형태의 관리를 수정·보완하는 형태의 관리방식이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자의 자율적 관리에 기반한다는 의미에서는 제3세대 수산자원관리에 가깝지만, 자율적 관리가 개인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목적에 접근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제4세대 수산자원관리인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인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정부, 생산자, 소비자의 어느 일방에 의해 추진되기보다는 각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추진될 때보다 실효성을 가진 자원관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정부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관련 정보의 생성 및 의사결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선택권을 발휘하고, 어업인은 지속가능한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사회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사회적 압력을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기업(유통·판매기업 및 호텔 등)은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윤리적 선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 구매 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림 5-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개인보다는 단체적 관리에 의해 시행될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개인에 의한 소비자 구매는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적인 집단적·사회적 압력을 행사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소비자단체 등은 분산된 개인의 힘을 결집하여 집단화된 구매력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유통기업이나 호텔 등에서는 초기에는 친환경 수산자원관리나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자사의 판매에 가시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면 소비자를 대신하거나 소비자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가능 수산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단체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Seafood Choices Alliance나 Seafood Watch 등과 같은 수산 분야에 국한된 소비자 운동을 이끄는 단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혹은 유사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상기 단체가 갖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에 소비행동 및 소비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생산자 단체와 관련해서는 MSC 인증이나 기타 수산자원관리 관련 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자문하거나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생산자 단체의 활동은 현행 자율관리어업에서 추진하는 자율적 수산자원관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율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3) 기초연구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초연구가 매우 부진하다. 최근 들어 MSC 인증 제품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증제도 이외에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건전한 사회적 모니터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곽윤영,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5.
- 김시월, 「착한소비란 무엇인가?」, 소비자시대, 2008.09.
- 김신,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4.
- 김진영·장창익,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Fisheries Technology, 2010.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4차 본회의 자료」, 2002.
- 류미현·이승신, 「공정무역제품 구매태도 및 의도에 따른 정보요구」, 소비자문제연구 44(1), 2013, pp.1-26.
- 류정곤 외, 「자율관리어업 증장기 발전방안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2012.
- 박경효·정윤수,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 10(2), 2001.
- 박미혜·강이주, “윤리적 소비의 개념 및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2009, pp.1047-1062.
- 백병성 외, 「소비자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1.
- 서정희·전향란, 「소비자보이콧」, 시그마프레스, 2016.
- 심영희, “사이버 성폭력의 자율규제, 누가 주체가 되어야하나?:ISP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9(2), 2002.
- 유소이·박재홍, “소비자지식효과를 고려한 윤리적 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 및 지불비용 분석-공정무역커피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3), 2012.9.
- 윤홍근·안도경 번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 이동호,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기술 지침의 의의, 구성 및 변화에 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7(6), 2015.12.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3.
- 이상고 외, 「친환경어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2014.
- 이상고 외,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농림수산식품부, 2012.
- 이상고 외,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계 구축 및 읍서버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2.
- 이정삼 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이정삼 외,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및 국가통계 추진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5.
- 장창익·이상고, 「어업관리학」, 세종출판사, 2002.
- 조정희·이정삼,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업자원관리 도입방안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5.
- 주문배 외,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6.
- 최성애 외, 「수산통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 최유성 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 최유성·이민호,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II)」, 한국행정연구원, 2009.
- 홍연금·송인숙, 「우리나라 윤리적 소비자에 대한 사례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10.
- 홍연금·송인숙,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개념 논의와 실천영역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6권 제4호, 2010.
-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 해양수산부, 「2015년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의 자원상태 및 권고안」, 2016.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친환경 배합사료로 키운 광어 드세요」, 2015. 12. 15.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유통업계,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위해 손잡다」, 2016.07.07.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제8조, 제9조, 제16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제14조, 제32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기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표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림수산부령 제296호) [별표11] 친환경수산물인증

의 표2015, 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6조,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3조, 제41조.

「수산업법」 제63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22조, 제33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전통식품품질인증 표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 제34조.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7-176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8조, [별표5] 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 [별표12]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표
시 기준, 해양수산부령 제32호 제2,3조.

〈국외 문헌〉

BAP, 「BAP Logo Use Guide」, 2016, p.8, p.16.

Black·Julia, “Constitutionalising self-regulation”, The Modern Law Review, 59(1), 1996,
pp.24-55.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 pp.4-5, pp.8-9. p.35, p.36,
pp.1-49.

FAO,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evision1, 2009, p. iii, p.1, p.4, pp.1-97.

FAO,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inland capture
fisheries」, 2011, p. iii.

FAO, 「Review of ecolabelling schemes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capture
fisheries」, 2010, p.5.

Friend of the Sea, 「Annual Report 2015」, 2016, p.5, p.7, p.8.

Garcia-Martinez, et al, “Co-regulation as a possible model for food safety governance:

- Opportuniti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od Policy 32(3), 2007, p.301.
-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162, Issue 3859, 1968, p.1243.
- IFFO, 「The IFFO global standard for responsible supply」, pp.2-3, p.4. (<http://www.iffonet/system/files/IFFORSWeb%20leaflet.pdf>)
- Kozo Ishii, “MSC/Coc/ASC 認證について”, 글로벌 수산식품 컨퍼런스&전시회 발표자료, 2015.11.30.
- MCS, 「Pocket Good Fish Guide」, 2016, p.1.
- Michael Sutton, 「Harnessing Market Forces and Consumer Power in Favour of Sustainable Fisheries」, Fish & Fisheries Series, 1998, pp.125-135.
- MSC, 「Annual Report」, 2014-15, p.36.
- MSC, 「Fishery assessment methodology and guidance to certification bodies including default assessment tree and risk-based framework」, Version 2.1, 2010, p.11, p.120.
-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roductory Training", MSC Training Program 발표자료, 2016.05.18.~20.
- OECD, 「Alternatives to traditional regulation」, pp.10-34. (<http://www.oecd.org/gov/regulatory-policy/42245468.pdf>)
- OECD,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From Interventionism to Regulatory Governance」, 2002, pp.135-142.
- SeaFish, 「The seafish guide to the responsible fishing scheme」, 2015, pp.2-3.
- Seafood Choices Alliance, 「Alliance Brochure」, 2015, p.2.
- TPP협정문 환경규범 중 Article 2016: Marine Capture Fisheries.
- U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pp.46-48.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unclos_e.pdf)
- Williams M.J., and Carral, V.P., "Fisheries Monitoring: Management Models, Compliance and Technical Solution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Fisheries

Monitoring, Sydney, Australia, FAO, 1 ~ 5 February 1999.

〈온라인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2013/contents.asp?m=4&s=1&s2=1>), 검색일: 2015.03.28.

그린카드 쇼핑몰 홈페이지(www.ecomoney.co.kr), 검색일: 2016.04.28.

그린포스트 코리아 홈페이지(<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6760>), 검색일: 2016.10.07.

그린피스 홈페이지(<http://tuna.greenpeace.org/ko/info/greenpeace-tuna-guides>), 검색일: 2016.09.01.

그린피스 홈페이지(https://secure3.convio.net/gpeace/site/Advocacy?cmd=display&page=UserAction&id=1979&s_src=actions&s_subsrc=160425_tunaguide), 검색일: 2016.09.01.

그린피스 홈페이지(<http://www.greenpeace.org/australia/en/news/oceans/Never-fear-the-tuna-iphone-app-is-here/>), 검색일: 2016.09.01.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1865&cid=42131&categoryId=42131>), 검색일: 2016.02.03.

네이버 시사상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80445&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6.04.28.

네이버 시사상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300&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6.09.09.

녹색제품 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 검색일: 2016.04.28.

녹색장터 홈페이지(<http://shop.greenproduct.go.kr>), 검색일: 2016.04.28.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Info/B55251800033>), “녹색매장 지정제도”, 검색일: 2016.04.28.

동원수산 홈페이지(<http://www.dongwonfish.co.kr/business/business0202.php>), 검색일: 2016.09.09.

두산백과 홈페이지(<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totalSearch.j>

- sp?WT.ac=search), 검색일: 2016.02.03.
- 블루엔젤 홈페이지(<https://www.blauer-engel.de/en/our-label-environment>), 검색일: 2016.04.28.
-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fishtrace.go.kr/home/mpTrace/actionMpTraceInfo.do>), 검색일: 2016.03.28.
-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fishtrace.go.kr/home/mpTrace/actionTraceFlow.do>), 검색일: 2016.03.28.
- 수산물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fips.go.kr/jsp/dp/pr/pr_kind_list.jsp?menuDepth=040302) 검색일: 2016.10.03.
- 연합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962933>), “제주 광어양식업체 2곳 우수수산물 국제인증 획득”, 검색일: 2016.09.09.
-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http://www.jfa.maff.go.jp/j/kikaku/syotoku_hosyo/pdf/souron3.pdf), 검색일: 2016.12.27.
-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http://www.jayul.go.kr/Self.run>), 검색일: 2016.10.04.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9/2014080900159.html), “중의 '反부패' 덕에... 지느러미 걱정 줄어든 상어들”, 검색일: 2016.05.03.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408851>), “야오밍 “샹스핀 이젠 안 먹을래””; iMBC(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4/3399226_17957.html), “NBA 만리장성 야오밍 “중국음식 샹스핀 이젠 안 먹겠다”...왜?”, 검색일: 2016.05.03.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1&ccfNo=1&cciNo=1&cnpClsNo=1>), 검색일: 2016.04.28.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9013.html), “‘국민 생선’ 명태는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검색일: 2016.05.03.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63270.html>), “잠깐! 당신 젓가락 위 참치는 착한가요?”, 검색일: 2016.09.01.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64129.html>), “한마리씩 낚았어’ 이것이 진짜 ‘착한 참치캔’”, 검색일: 2016.09.09.
- 한겨레21(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8316.html), “‘착한 참치캔’ 여기있습니다.”, 검색일: 2016.09.0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5&sMenu=1>), 검색일: 2016.04.2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9>), 검색일: 2016.06.2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page.do#>), “환경마크 대상제품별 인증제품 현황”, 2016.03.31, 엑셀자료, 검색일: 2016.04.28.
- 행복중심생협 티스토리(<http://happycoop.tistory.com/826>), 검색일: 2016.09.09.
- 헤드라인 제주(<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06>), “‘지속가능한 수산양식문화’ 아이해브사업단 국제심포지엄”, 검색일: 2016.09.09.
- BAP 홈페이지(<http://bap.gaalliance.org/bap-certification>), 검색일: 2016.09.01.
- BAP 홈페이지(<http://bap.gaalliance.org/program-integrity/multi-star-integrity>), 검색일: 2016.09.02.
- BAP 홈페이지(<http://bap.gaalliance.org/program-integrity/bap-logo-usage-product-claims-brand-identity>), 검색일: 2016.09.02.
- BAP 홈페이지(<http://bap.gaalliance.org/bap-certification/what-products-and-facilities-are-bap-certified>), 검색일: 2016.09.02.
- CNBNEWS(<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18907>), “3월 7일 ‘참치데이’의 불편한 진실”, 검색일: 2016.09.01
- EC Environment 홈페이지(<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facts-and-figures.html>), 검색일: 2016.04.28.
- EC Environment 홈페이지(<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information-and-contacts.html>), 검색일: 2016.04.28.
- EU Ecolabel leaflet(<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documents/EU%20Ecolabel%20leaflet.pdf>), 검색일: 2016.04.28.

- FAO 홈페이지(<http://www.fao.org/docrep/meeting/004/Y2211e.htm>), 검색일: 2016.10.05.
- FAO 홈페이지(<http://www.fao.org/3/l-v9878o.pdf>), 검색일: 2016.10.05.
- FishWatch 홈페이지(<http://www.fishwatch.gov>), 검색일: 2016.09.02.
- Friend of the Sea 홈페이지(<http://www.friendofthesea.org/where-to-buy.asp?ID=1>), 검색일: 2016.03.04.
- Friend of the Sea 홈페이지(<http://www.friendofthesea.org/certified-products.asp>), 검색일: 2016.03.04.
- Friend of the Sea 홈페이지(<http://www.friendofthesea.org/about-us.asp?ID=9>), 검색일: 2016.10.07.
- GAA 홈페이지(<http://gaalliance.org>), 검색일: 2016.09.01.
- GAA 홈페이지(<http://gaalliance.org/what-we-do/bap-certification>), 검색일: 2016.09.01.
- GGN 홈페이지(<http://www.ggn.org/de>), 검색일: 2016.09.02.
- Global G.A.P 홈페이지(http://www.globalgap.org/uk_en/what-we-do/global-g.a.p.-certification/global-g.a.p.), 검색일: 2016.09.02.
- Global G.A.P 홈페이지(http://www.globalgap.org/uk_en/for-producers/aquaculture/Aquaculture-Consumer-Label), 검색일: 2016.09.02.
- Good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the_essentials), 검색일: 2016.04.28.
- GoodCatch 홈페이지(http://www.sustainweb.org/goodcatch/start_improving), 검색일: 2016.04.28.
- Good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1_gather_information), 검색일: 2016.04.28.
- Good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2_source_sustainably), 검색일: 2016.04.28.
- Good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3_state_our_commitment), 검색일: 2016.04.28.
- GoodCatch 홈페이지(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4_communi

- nicate_clearly; https://www.sustainweb.org/goodcatch/step_5_influence_wider_progress), 검색일: 2016.04.28.
- GoodCatch 홈페이지(http://www.sustainweb.org/goodcatch/self_audit_template), 검색일: 2016.04.28.
-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information/Fish+ratings>), 검색일: 2016.04.28.
-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fishfinder.php?fish=&min=1&max=2&method=&type=&capture=&results=&page=0>), 검색일: 2016.04.28.
- Good Fish Guide 홈페이지(<http://www.goodfishguide.org/fishfinder>), 검색일: 2016.04.28.
- GPN 홈페이지(<http://www.gpn.jp/english/index.html>), 검색일: 2016.10.07.
- IPNLF 홈페이지(<http://ipnlf.org/who-we-are/members>), 검색일: 2016.09.01.
- IPNLF 홈페이지(<http://ipnlf.org/who-we-are>), 검색일: 2016.09.01.
- IPNLF 홈페이지(<http://ipnlf.org/what-we-do>), 검색일: 2016.09.01.
- Monetary Bay Aquarium(<http://www.montereybayaquarium.org/conservation-and-science/our-programs/seafood-watch>), 검색일: 2016.04.28.
- MSC 홈페이지(https://msc.org/where-to-buy/product-finder/product_search?country=KR&b_start:int=0), 검색일: 2016.09.09.
- MSC 홈페이지(<https://msc.org/about-us/what-is-the-msc>), 검색일: 2016.03.04.
- MSC 홈페이지(<https://www.msc.org/about-us/what-we-do>), 검색일: 2016.03.04.
-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fssi.html), 검색일: 2016.09.02.
-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index.html), 검색일: 2016.09.02.
-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status_updates.html), 검색일: 2016.09.02.
-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sfa/fisheries_eco/status_of_fisheries/status_updates.html), 검색일: 2016.09.02.

- eries/archive/2016/second/q2-2016-overfished-overfishing.pdf), 검색일: 2016.09.02.
-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interactive-guide#11>), 검색일: 2016.09.05.
-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standards>), 검색일: 2016.09.05.
- SeaFish RFS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rfs/index.php/about/about-rfs>), 검색일: 2016.09.02.
- SeaFish 홈페이지(<http://www.seafish.org/industry-support/guide-to-seafood-standards/standards/iffors-certification>), 검색일: 2016.09.09.
- Seafoodchoices 홈페이지(<http://www.seafoodchoices.org/whoweare.php>), 검색일: 2016.03.04.
- Seafoodchoices 홈페이지(<http://www.seafoodchoices.org/whatwedo/initiatives.php>), 검색일: 2016.03.04.
- SEAFOODnews.com(http://www.seafoodnews.com/SearchStory/ha8__CggWI41Ri0guw__tsCkmk6L6MGLxnvLqDiWvMaxlzJRCoti9sSSxWQP—E0wYm/1027834), “Olympic Games in Rio to Feature MSC and ASC Certified Seafood”, 검색일: 2016.09.01.
- Seafood Watch 홈페이지(<http://www.seafoodwatch.org/>), 검색일: 2016.05.09.
- Seafood Watch 홈페이지(<http://www.seafoodwatch.org/seafood-recommendations/our-app>), 검색일: 2016.04.28.
- Seafood Watch 홈페이지(<https://www.seafoodwatch.org/-/m/sfw/pdf/guides/mba-seafoodwatch-national-guide.pdf>) 검색일: 2016.09.23.
- SeaWeb 홈페이지(<http://seaweb.org/about.php>), 검색일: 2016.03.04.
- SeaWeb 홈페이지(<http://seaweb.org/initiatives.php>), 검색일: 2016.03.04.
- WADIZ 홈페이지(<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436>), 검색일: 2016.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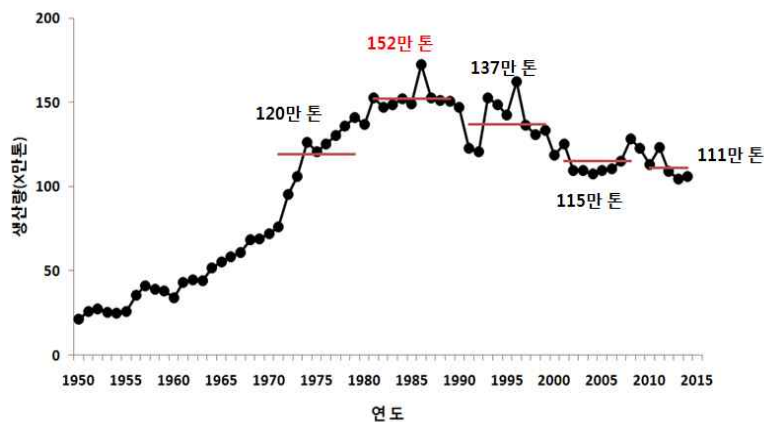
부록 1.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¹⁾

1. 어업생산 동향

우리나라 연근해 총 어획량은 1970년대 평균 120만 톤에서 1980년대에 152만 톤으로 증가하여 가장 어업생산량이 높은 시기를 보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137만 톤, 2000년대에는 115만 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111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어업생산량은 1986년에 173만 톤으로 최고를 나타냈으며, 지속적인 자원감소로 인해 2013년에는 104만 톤으로 198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최근 2015년에는 106만 톤으로 어업생산량의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²⁾

〈부록1-그림 1〉 우리나라 연근해 연도별 어업생산량의 변화

[70년대] 120만 톤 → [80년대] 152만 톤 → [90년대] 137만 톤 → [00년대] 115만 톤 → [10년대] 111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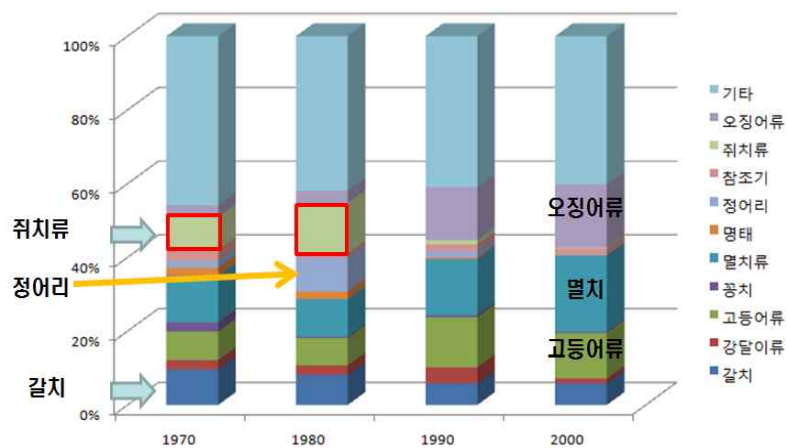
자료: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검색일: 2016.08.01.

1)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은 본 연구의 외부 집필자인 국립수산물연구원 서영일 박사가 집필한 부분을 정리한 것임.

2)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검색일: 2016.08.01.

연대별 주요 어획 어종은 저어류에서 부어류로 변화하였다. 1970~1980년대에는 쥐치, 멸치, 정어리, 갈치, 고등어, 명태 등이 주로 어획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멸치, 오징어, 고등어 등이 주로 어획되면서 주요 상업어종의 어획패턴이 변화하였다.³⁾

〈부록1-그림 2〉 시대별 주요 어획대상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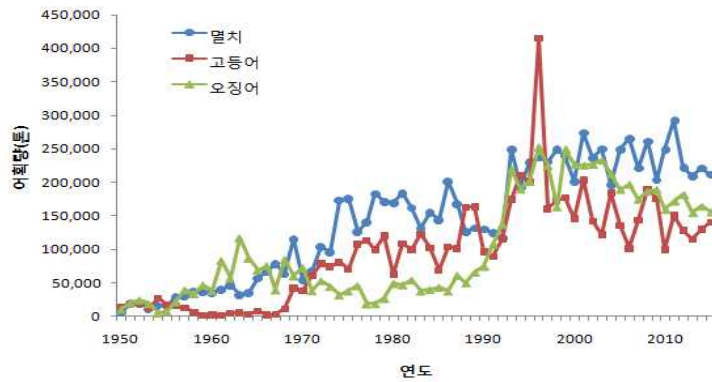
자료: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검색일: 2016.8.1.

최근 2010년 이후 주요 어종인 멸치, 오징어, 고등어의 어획량은 약 53만 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48%를 차지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멸치는 멸치 211,574톤, 오징어는 155,624톤, 고등어는 140,624톤을 어획하였으며, 3종의 시대별 어획비율은 1980년대 21%, 1990년대 40%, 2000년대 52%로 최근의 어획비율이 높아지고 있다.⁴⁾

³⁾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검색일: 2016.08.01.

⁴⁾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검색일: 2016.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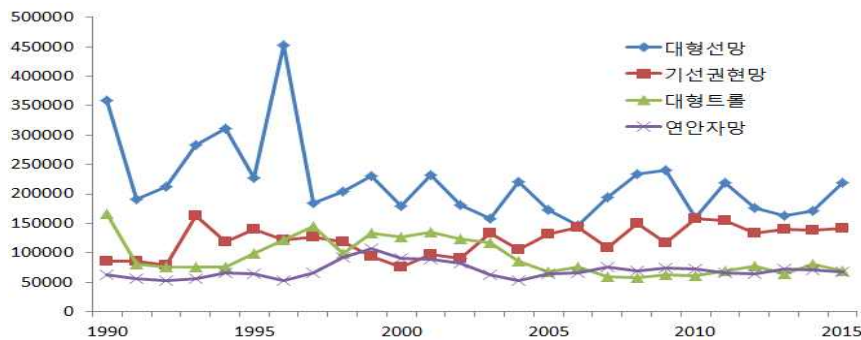
〈부록1-그림 3〉 주요 부어류(3종)의 연도별 어획량 변화



자료: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검색일: 2016.08.01.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주요 어업별(주요 어종) 어획량은 대형선망(고등어), 기선권현망(멸치), 대형트롤(오징어), 연안자망, 대형쌍끌이기저, 근해채낚기, 근해안강망, 근해자망, 정치망 순이다. 어획비율이 증가하는 업종은 기선권현망, 근해자망, 연안자망, 근해채낚기, 정치망 등이며, 어획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업종은 대형트롤, 대형쌍끌이기저, 근해안강망 등으로 나타났다.

〈부록1-그림 4〉 우리나라 연근해 연도별·어업별 어획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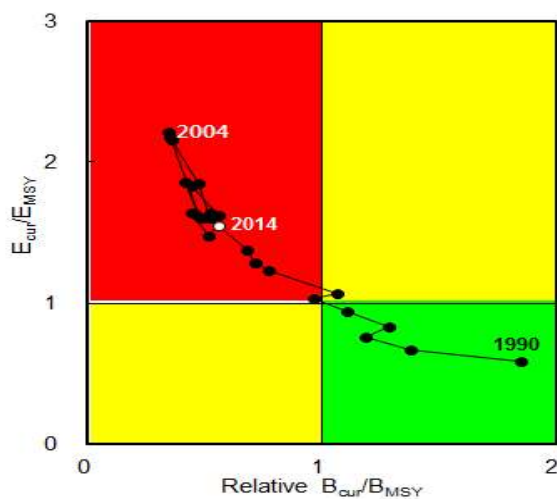
자료: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검색일: 2016.08.01

2. 연근해 자원상태

우리나라 연근해의 어선세력과 어업생산량을 토대로 전체 자원상태를 분석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연근해 자원수준은 적정수준(1)의 0.5, 어획노력량 수준은 1.6으로 나타나 1990년대 초에 비해 과잉노력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선감척사업 등으로 2004년 이후 어획강도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⁵⁾

연근해 주요 어종(45종)에 대해 한·중·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시점인 1999년 이후의 자원변동에 따른 자원수준과 최근 5년간의 자원상태에 따른 자원동향을 분석하였다. 장기적인 자원변동경향을 나타내는 자원수준은 높은 수준이 5종, 중간수준은 28종, 높은 수준은 5종으로 나타났으며, 단기간의 자원상태를 나타내는 자원동향은 증가 경향 8종, 평형상태 28종, 감소경향 9종으로 나타났다.

〈부록1-그림 5〉 우리나라 연근해 자원상태(2014년 기준)



자료: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을 토대로 필자가 분석하여 작성. 검색일: 2016.08.01.

⁵⁾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을 토대로 필자가 분석하여 작성. 검색일: 2016.8.1.

〈부록1-표 1〉 연근해 주요어종(45종)의 자원수준 및 동향(2014년 기준)⁶⁾

구분	기준	어 종
자원 수준	낮음(12)	붕장어, 병어류, 쥐치류, 정어리, 꽁치, 명태, 꽃게, 강달이, 키조개, 참 홍어, 개조개, 오분자기
	중간(28)	고등어, 갈치, 참조기, 삼치류, 전갱이, 복어류, 눈볼대, 갯장어, 망치 고등어, 가오리류, 보구치, 참다랑어, 살오징어, 대문어, 대게, 아귀류, 전어, 낙지, 대구, 문치가자미, 기름가자미, 제주소라, 옥돔, 서대류, 보리새우, 가자미류, 대하, 꼼치류
	높음(5)	도루묵, 멸치류, 민어, 붉은대게, 청어
자원 동향	감소(9)	쥐치류, 정어리, 명태, 꽃게, 강달이, 키조개, 참홍어, 낙지, 오분자기
	평형(28)	갈치, 참조기, 삼치류, 전갱이, 붕장어, 병어류, 복어류, 눈볼대, 갯장 어, 망치고등어, 가오리류, 참다랑어, 살오징어, 대문어, 대게, 아귀류, 전어, 개조개, 민어, 문치가자미, 기름가자미, 제주소라, 옥돔, 서대류, 보리새우, 가자미류, 꼼치류
	증가(8)	고등어, 보구치, 도루묵, 멸치류, 대구, 붉은대게, 청어, 대하

자료: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을 토대로 필자가 분석하여 작성. 검색일: 2016.08.01.

1970년대 이후 최고어획량을 기준으로 70% 이상 감소한 어종은 쥐치류 등 4
종이었으며, 1970년 이후 최고어획량을 기준으로 7만 톤 이상 감소한 어종은
살오징어, 고등어류로 나타나 주요 상업어종의 어획량 급감이 전체 어업생산량
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록1-표 2〉 최고어획량 대비 최근 어획량 감소현황(2015년 기준)

어종	최고어획량		2015년 어획량	감소량(톤)	감소율 (%)
	연도	어획량(톤)			
쥐치류	1986	327,516	2,040	325,476	-99.4
정어리	1987	194,352	2,911	191,441	-98.5
명 태	1981	165,837	3	165,834	-99.99
갈 치	1974	166,391	41,049	125,342	-75.3
살오징어	1996	252,618	155,743	71,210	-38.4
고등어류	1994	210,442	122,321	88,121	-41.9
	1996	415,003		292,682	-70.5

자료: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을 토대로 필자가 분석하여 작성. 검색일: 2016.08.01.

6) 자원량,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어획량을 기준으로 1999년 이후 또는 최근 5년간의 자원수
준 및 동향평가, 높음 또는 증가(평균+1SD값 이상), 중간 또는 평형(평균±1SD 범위 내), 낮음
또는 감소(평균-1SD 값 이하)로 표시함.

부록 2. 설문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설문조사

2016011801-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의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 모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 7.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란 소비자가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및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수산물을 소비할 때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환경 및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어획되는 수산물의 소비를 피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획된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운동**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PART A. 기본 사항

Q01.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Q01-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Q01-2	귀하의 연령은?	1) 19세 이하(→조사 종료)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조사 종료)
Q01-3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Q07. 수산물 인증제도 중에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제시된 로고는 참조용이며, 관련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1) 친환경수산물 관련 인증	   
2)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 (MSC 인증)	  
3) 수산물 이력제	 상품 부착용  아래 칸에  포리표
4) 지리적 표시제	
5) 수산물 HACCP	 
6) 수산물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7) 이중에 없음/모름	

Q12.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느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 1) 국가기관
- 2) 민간기관
- 3) 해외 NGO
- 4) 모두 신뢰한다
- 5) 잘 모르겠다

Q13.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인증된 수산물을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예 (→Q14로)
- 2) 아니오 (→Q15으로)

Q14. 구매할 의사가 있다면, 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일반 수산물 가격을 1kg 당 1,000원이라고 가정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원래 가격 유지(1,000원)
- 2) 5% 상승(1,050원)
- 3) 10% 상승(1,100원)
- 4) 15% 상승(1,150원)
- 5) 20% 상승(1,200원)
- 6) 25% 상승(1,250원)
- 7) 30% 이상 상승(1,300원 이상)

PART D. 수산자원관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 어린물고기에 대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포획·채취 금지 체장(체중)'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2016년 현재 총 37종(어류 26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2종)에 대해서 금지체장(체중)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금지체장 규정은 자연산 수산물에만 해당되며 양식수산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금지체장 이하의 수산물에 대해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예시>

분류	품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어류	참가자미	12센티미터 이하
	갑성돔	20센티미터 이하
	넙치	21센티미터 이하
	도루묵	11센티미터 이하
	참조기	15센티미터 이하
갑각류	꽃게	6.4센티미터 이하
	대게	9센티미터 이하
	달새우	5센티미터 이하

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2]

Q15.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에 대해서 유통 및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Q16.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의 유통 및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어린 물고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비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 1) 예
- 2) 아니오 (☐ Q18 으로 이동)

Q17. 어린 물고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 2) 육질이 부드러워서
- 3) 맛이 좋아서
- 4) 기타 ()

Q18. 현재는 37종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금지체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물고기의 포획 및 유통·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향후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금지해야 한다.
- 2) 수산자원이 감소된 물고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3) 금지해서는 안 된다(전면적 허용)

Q19.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 알배기 물고기(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알배기 물고기(수산물)란 몸속에 알을 배고 있는 물고기(수산물)를 의미합니다.

- 1)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2) 자원이 감소된 물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3) 금지해서는 안 된다(전면적 허용)

Q20. 법으로 금지된 어린물고기가 시중에 유통 및 판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판매 촉진
- 2)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일명 파파라치 제도 운영)
- 3) 정부의 강력한 유통·판매 단속
- 4) 유통·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5)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6) 기타()

Q21. 수산자원의 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홈페이지 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
- 2) 모바일 앱(App)구축 및 정보 제공
- 3) 오프라인 매장에 홍보판 설치
- 4) 오프라인 매장에 팸플렛 배치 및 배포
- 5) 기타()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DQ1. 본인을 포함한 귀 가구의 가구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DQ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 3) 대학교 졸업(재학 포함) 4) 대학원 졸업(재학 포함)

DQ3.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 1) 100만원 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 5) 400~499만원 6) 500만원 이상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2016年 12月 29日 印刷
2016年 12月 31日 發行

편집겸 발행인	양 창 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전 화	051-797-4800 FAX :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주)디자인월드 Tel : 051-916-1533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02-394-0337

정가 15,000원